

전략연구 2014-38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연구

김용현



발간사

2003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발족된 배경에는 지역성을 강조하는 사회복지환경의 변화가 있다. 1980년대 서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위기맥락에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국가에서 지역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수직적인 공공의 주도에서 민간역량의 극대화가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적 맥락에서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복지서비스제공을 지방정부단위로 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사회복지단위로서 지역사회가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즉, 사회복지에서 지역성의 강조는 주민참여와 지역자원의 발굴이라는 측면이 담겨져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맞물리면서 지역사회단위의 협의구조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실제로 2001년부터 전국의 15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03년 7월30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탄생되었다. 충청남도는 2005년 천안시를 필두로 하여 현재는 15개 시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연구는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중앙정부에서 설정한 기능과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연구 대상으로 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로, 본 연구를 통해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고 지역사회복지가 꽂 피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인 김용현 박사를 비롯해, 이 연구가 완성되는데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도청 복지보건국 하광학 사회복지과장님, 김소연 주무관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연구수행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충남도 15개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및 연구심의위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2월 27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연 구 요 약

1. 필요성과 목적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3년 7월 전국적인 민관협력기구로 출범하였으며, 2015년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도 15개 시군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행복키움지원단과 함께 지역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조직이다. 공공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행복키움지원단은 사례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반면에 민관협력 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복지에 대한 기획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며, 지역의 자원을 관리, 발굴하여 ‘풀뿌리복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더불어 복지정책의 ‘지방화’, ‘풀뿌리화’는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의 과제로 자리 잡고, 사회복지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높아지지 않고 반대로 복지욕구는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민·관 자원 활용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 및 여러 조직들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복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복지활동을 조직화하고 구체적인 복지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단지 회의를 여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고, 관의 도구화가 되거나 정부의 지원 등이 뒷받침 되지 못해 유명무실하여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요컨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은 ‘이론적’으로 볼 때 지역단위의 사회복지문제와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자원들을 극대화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해결 중심의 실천적 복지를 수행하는 것이다. 2005년부터 상근간사의 배치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복지 환경이나 관의 협력정도, 민의 주체적 의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활성화 정도가 다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도 내 15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

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인력, 협의체 자체사업의 실행여부와 내용,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주도적 수립 여부,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 현황,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 일선현장에서 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한 점, 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분과 활성화 정도 등 15개 시·군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2. 주요 연구내용

15개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2014년 12월에서 2015년 2월까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 문항은 지역복지 현황, 지역사회 네트워킹 실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에 병행하여 9개 시·군(논산, 청양, 부여, 서산, 아산, 당진, 태안, 천안, 홍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먼저, 설문조사의 결론을 지역복지, 네트워킹현황, 협의체현황으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① 지역복지

지역복지가 잘 되고 있는지의 질문에 ‘보통이다’의 응답이 49.2%로 가장 빈도가 높았지만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이 41.5%로 잘못되고 있다고 응답한 9.3%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일선현장에서 지역사회복지는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복지인프라 구축’이 일순위로 응답되어 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및 복지시설 확충 등이 긴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교류협력에 대하여 긍정적 응답이 33.0%로 부정적인 응답(11.4%)보다 높았지만 일상적 업무의 과중함이 교류협력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파악된 만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업무량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발족이 사회복지업무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는 부정적인 의견이 9.8%

에 불과하여 2005년 천안시를 필두로 15개 시군에서 설립된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유관기관의 복지업무 수립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네트워킹 현황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부분이다. 설문자들이 업무이외에 개인적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관리자들에 대한 인지도(긍정적인 응답 37.4%對부정적인 응답 21.5%)가 비교적 높았고 친밀도 (긍정적인 응답 61.3%)역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뿐만아니라 다른 단체들과 업무에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긍정적인 응답 87.0%)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업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단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응답한 협의체 위원(43.1%)도 많았다. 협의체 출범이후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소통 및 복지서비스 연계·조정도 활성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수요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는 부정적인 응답(32.5%)이 긍정적인 응답(28.5%)보다 높아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종사자들간의 비공식적 인지도, 친밀감, 적극적인 업무공조의사가 공식적인 업무연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반 조건들(비공식적 인지도, 친밀감, 적극적인 업무공조의사)과 비교하여 정작 다른 단체들과의 업무 연계활동의 관련성은 낮아서(부정적인 응답 39.6%對긍정적인 응답 16.7%) 현재 유관기관간 네트워킹이 그다지 활발하지 못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협의체 구성원들은 높은 비공식적 인지도, 친밀도, 적극적 협력의사를 일상의 복지 업무에 반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의 열매는 유관기관간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가시화 될 것이다.

③ 협의체 현황

협의체 현황은 8가지 세부적인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전반적인 협의체 운영실정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협의체 발전의 저해요인으로는 ‘참여하는 민간기관의 인식 및 의지의 ’ 부족(32.9%)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 향후 협의체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참여를 얼마나 유도해 낼 수 있는지가 관건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기관에 평가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긍정적 응답이 많아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포괄적으로 민간참여 활성화는 지역사회의 인적자원 개발여부와 연관된 문제이고 성북구의 사례가 모범이 될 수 있다.

둘째, 협의체 민간위원 위촉과정의 신뢰여부, 위원들의 대표성 여부, 협의체내에서 민간의 활발한 참여여부 등, 협의체 위원들에 관한 사항이다. 협의체의 민간위원 위촉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 위원들의 복지분야의 대표성에 대한 평가 역시 좋은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협의체 민간위원들의 활동도 긍정적 응답이 46.3%로 활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군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활동역시 활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의결 처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에 대해서도 45.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협의체 내부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담당공무원의 협의체 회의 참석여부 및 관의 협의체 회의 주도, 두 질문 모두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협의체가 민·관 협치기구이지만 관의 지원과 담당공무원의 적극적 참여가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필수조건임을 고려할 때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응답자들은 상근간사의 선발기준에 대한 신뢰하였지만 간사들의 역량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압도적이어서 간사들의 역량이 곧 협의체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험있고 역량있는 간사의 선발과 그에 걸맞은 합당한 처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여섯째, 협의체 위원들은 시·군청과 분리된 협의체사무국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장기적으로 모든 15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독립된 사무국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곱째, 협의체의 3중 구조의 통일은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많아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아우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의체 개선방안으로는 예산지원의 확대, 복지기관이 협의체회의 참석에 대하여 평가시 가점을 주는 방안, 간사, 담당공무원, 위원장, 분과장의 당라한 교육 등에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질적 조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성이 판이하게 구별된다는 점이다.

도시지역은 비교적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정도가 높고 유관기관간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있다. 도시지역은 지역사회 복지자원역시 비교적 풍부한데다가 일찌감치 상근간사를 배치하여 협의체를 출범시킨 후 간사의 교체 없이 협의체의 지속성을 담보한 것이 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외부에서 평가하는 상근간사의 역량이 우수한 것도 도시 지역의 공통된 특징이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회의 개최빈도 역시 도시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역사회복지계획도 공통적으로, 도시지역은 외부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립하였다.

농촌지역은 관의 도구화로 전락된 지역이 많았고 무엇보다도 상근간사의 잣은 교체로 협의체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없었다는 점이 협의체가 발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농촌 지역은 복지자원이 부족하여 복지서비스의 연계·조정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회의 개최빈도 역시 도시지역에 비해 월등히 적다.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보다는 평가를 위하여 자체사업에 치중하고 협의체의 역량부족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농촌지역의 공통된 특징이다.

도농지역은 도시지역과 군단위지역의 중간성격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활성화 된 부문과 비 활성화된 부문이 혼재되어 있다. 가령, 복지자원부분은 농촌지역에 가깝지만 간사의 역량은 도시지역에 못하지 않다. 따라서 부족한 복지자원에 비하면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이 어느정도 되어있다. 직접사업도 농촌지역처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논산시의 경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회의 개최빈도 역시 도시지역에 비해 못하지 않다.

지역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는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공히 도시>도농>농촌 순이었다.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이 가장 필요한 지역도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공히 농촌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공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출범이후 유관기관 간 소통 및 연계 및 조정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정도 역시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공히 도시지역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군단위지역이 가장 비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와 질적 조사의 차이점도 분석결과 나타났다. 네트워킹 현황은 질적 분석에서는 도시지역이 활성화 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양적 분석에서는 3가지 지역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출범 이후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소통 및 연계·조정이 원활해졌는지에 대한 평가’ 만이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게 나타나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을뿐 다른 항목들은 모두 유의확률이 0.1보다도 커 지역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네트워킹 분야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출범 이후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소통 및 연계·조정이 원활해졌는지에 대한 평가’ 항목을 제외하곤 3개 지역이 차이가 없다는 것이 설문조사의 합의이다. 또, 설문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도시지역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관의 도구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시군의 공무원들의 협의체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는 긍정적으로 평가(47.3%긍정적응답 對 15.1%의 부정적 응답)하였으나 질적 조사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의 협의체 활동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군도 많이 존재 하였다.

3. 결론

2005년 본격적인 출범이후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립이 전반적인 지역사회복지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었고 유관기관 간 소통 및 연계·조정도 출범 전보다 한층 더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의결 처리가 지역의 복지정책에 반영되는 정도에 대해서도 많은 수의 응답자가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간참여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협의체 활동이 주민참여에 기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개선되어야 할 점들(문제점)도 분석에서 노정되었다.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문제점으로는 조직적 차원에서는 첫째, 민·관 협치구조로서의 협의체가 아니고 관 행정의 도구화로 전락하는 문제,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담당공무원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계가 아닌 행복키움지원단 소속으로 되어있는 이원화의 문제. 셋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시 지역사회 복지실무자가 실문분과로 가지 않고 실무협의체

나 대표협의체에 이름을 올리는 문제로 나타났다. 인력적 차원에서는, 지역사회복지의체협 간 사의 선발기준과 처우가 문제가 되었다. 사업적 차원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원들 간에 네트워킹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재정적 차원에서는 독립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의 확보하는 문제로 분석되었다.

상기에서 열거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인프라 구축,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량강화, 셋째, 도 차원의 협의체 지원이다.

첫째, 지역사회인프라 구축은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복지자원개선과 상근간사뿐만 아니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수준에서도 도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을 열거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상근간사의 전문역량 강화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위원들의 주인의식 함양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량강화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협의체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데 까지 나아가야 한다.

셋째, 도 차원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지원이다. 도 차원의 협의체지원은 먼저, 협의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다. 상근간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교육이나 보건복지부 차원의 교육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나 민간위원이나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는 도차원의 재정지원 확대이다. 충남도의 경우는 도 차원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일정 정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연간5300천원, 2013년도 기준). 그러나 대다수의 시군 협의체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에 소요되고 있어 독립된 사무실 확보나 자체사업을 하기에는 재정이 미약한 현실이다. 또한 충남복지재단설립을 통한 협의체 컨설팅 기능 강화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타 광역시도처럼 충남도 차원의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협의체의 컨설팅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광역전달체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015년 7월 1일자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내용적으로도 공공성이 강화되면서 사용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빌굴에 관한 법률 제 41조 1항의 <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 한다는 조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도 단

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 차원의 전달체계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기에서 열거한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이상적인 모델을 구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복지자원의 발굴 및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거점기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주민이 제도적으로 협의체 내에 참여하여 자원봉사자 발굴 및 기부자를 체계적으로 조직해야만 한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역량있는 상근간사를 배치하고 협의체 구성원들도 협의체 업무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주인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역량있는 상근간사와 주인의식이 투철한 민간위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해야만 한다. 나아가 향후 충남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피드백하여 체계적으로 협의체 활동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충남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유관기관 간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하여 도 차원의 전달체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3
3. 연구 방법	4
1) 문헌연구	4
2) 심층면접 조사	4
3) 설문조사	5
4) 워크숍	8
4. 연구의 범위	8
5. 연구의 분석틀과 연구주제	10
6. 연구의 체계	11
제2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배경, 구조 및 기능과 이론적 고찰	11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진배경, 구조 및 기능	12
1) 추진배경	12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조와 기능	13
3)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구성	15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및 운영	16
2.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이론적 고찰	17
3. 선행연구 검토	23
제3장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태분석	22
1.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반현황	22
2. 설문조사 분석	34
1) 분석	35
3) 설문조사 결론	68
제4장 타 시도 우수지역과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연구	72
1.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72
2. 세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78
3. 서울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81

4. 충남도 사례분석	84
1) 충남도 도시지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질적분석(천안, 아산, 당진)	84
2) 충남도 도·농 복합지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질적분석(논산)	87
3) 충남도 농촌지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질적분석(태안, 홍성, 부여)	89
4) 질적조사의 결론	93
5) 설문조사와 질적 조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93
제5장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평가와 문제점	95
1.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평가	95
1) 조직	96
2) 인력	96
3) 사업	97
4) 재정	98
5) 네트워킹 현황	98
2.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0
1) 민·관 협치구조로서의 협의체가 아니고 관 행정의 도구화로 전락	100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담당공무원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계가 아닌 행복키움지원단 소속으로 되어있는 이원화의 문제	101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시 지역사회 복지실무자가 실문분과로 가지 않고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에 이름을 올리는 문제	102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의 선발기준과 처우	103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원들간에 네트워킹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104
6) 독립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의 확보	10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7
1. 연구결과의 종합	107
2.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108
1) 지역사회인프라구축	109
2)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원의 역량강화	110
3) 도 차원의 협의체 지원 방안	111
참고문헌	115
부 록	117
부록1)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방안 설문조사지	118
부록2) 조사표	130

표 목 차

<표 1> 심층면접내용	5
<표 2> 설문지 구성 내용	6
<표 3> 시·군에 따른 설문지 횟수량	7
<표 4> 응답자 일반현황	34
<표 5> 지역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35
<표 6> 지역사회복지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36
<표 7>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교류협력의 정도에 대한 평가	37
<표 8>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간의 교류협력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	37
<표 9>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립이 복지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도	39
<표 10> 업무이외 개인적으로 다른 복지기관(단체)의 관리질들을 많이 아는 정도	39
<표 11> 복지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다른 복지기관(단체)들과 공유하는 정도	40
<표 12> 업무수행과 관련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외부 단체와의 공청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정도	41
<표 1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출범이후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소통 및 연계·조정이 원활해졌는지에 대한 평가	41
<표 14> 다른 단체들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응할 용의의 정도	42
<표 15> 업무수행과 관련해 접촉하게 되는 다른 유관기관의 관리자들에	43
<표 16> 업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단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도	43
<표 17> 운영하는 복지기관(시설)의 전체적인 업무성과에 관련해 다른 단체들과 업무 연계활동은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지에 대한 평가	45
<표 18>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실정에 대한 평가	46
<표 19>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간위원 위촉과정에 대해 신뢰의 정도	47
<표 2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보건, 복지, 시민단체 등 각 분야를	48
<표 21> 시군의 공무원들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정도(많을수록 그렇다에 응답함)	48
<표 22> 자신이 속한 시군의 대표협의체 활동은 활발한지에 대한 평가	49
<표 23> 자신이 속한 시군의 실무협의체 활동은 활발한지에 대한 평가	50
<표 24> 자신이 속한 시군의 실무분과의 활성화 정도	50
<표 2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의결 처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	51
<표 2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역할에 비해 선발기준이 적절한 정도	51

<표 27> 협의체회의 안건은 주로 관에서 준비하며, 관의 의도에 따른 52
<표 28> 시군은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해를 위한 교육, 52
<표 29>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의 참여는 활발한 정도 53
<표 30>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는 갈등과 중복의 소지가 있는지 평가 53
<표 31>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 운영목표와 역할 및 기능에 54
<표 3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3층 구조는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부 54
<표 33> 상근간사를 중심으로 시군청과 분리된 별도의 사무국 설치가 55
<표 34>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청에 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여부 55
<표 3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근간사의 전문역량이 56
<표 36> 도청 또는 시군청의 예산편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재정적지원을 57
<표 37> 실무분과의 회의참석율을 높이기 위해 회의참석에 대하여 소속기관 평가시 가점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고 생각하는 정도 57
<표 38> 상근간사, 담당공무원, 위원장, 분과장에 대한 도차원의 협의체 교육이 58
<표 39>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다면 가장 큰 이유 59
<표 40> 지역특성별 지역복지의 분산분석 60
<표 41> 지역특성별 지역복지의 교차분석 60
<표 42> 지역특성별 네트워킹 현황의 분산분석 62
<표 43> 지역특성별 협의체 현황의 분산분석 64
<표 44> 지역특성별 협의체 현황의 교차분석 67
<표 4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네트워크의 활동수준 99
<표 4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106
<표 47>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이상적인 모델 114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10
[그림 2] 연구 체계	11
[그림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조체계	16
[그림 4] 제3기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	76
[그림 5] 제3기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	77
[그림 6] J. Clenet 와 C. Gerard의 파트너쉽에 이르기 위한 5가지 단계, Dhume(2001)	99
[그림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108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3년 7월부터 전국적 민·관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발족되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전국 15개 시도의 시군구별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출범하게 된 배경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그 동안 겪지 못하였던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이다.

먼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양적으로 급증시켰다. 2015년 115조에 달하는 복지예산은 이를 대변하고 있다. 최근 복지정책의 내용 역시 저소득층에 대해 규정대로 돈만 지급하면 되는 현금급여에서 보육, 요양, 교육훈련, 취업알선 등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정책 내용의 변화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면서 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1995년에서 2000년까지 이어졌던 보건복지사무소를 대체할 수 있는 조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졌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의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즉,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자선과 시혜적 관점에서 국민의 권리와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기 시작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늘어나고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가 대두된 배경이다.

최근 복지정책 집행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달체계가 복지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전달체계 개편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차원에서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로는 사회복지업무 팽창과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대부분의 전달체계가 지역사회 중심의 특성화된 전달체계가 아닌 중앙 집중형 방식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공공위주로 개편되다 보니 민·관 협력은 부수적인 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더불어 복지정책의 ‘지방화’, ‘풀뿌리화’는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의 과제로 자리 잡았다. 현재 충남도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담당하는 양대축으로는 공공부문에서의 행복키움지원단과 민간부문에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는 행복키움지원단은 사례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의 복지현안을 논의하고 계획하는 민·관협력기구로 지역의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이며 이를 통해 중앙의 복지정책을 ‘풀뿌리복지’로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사회복지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높아지지 않고 복지 욕구는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민·관 자원 활용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중요한 지역 사회복지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 및 여러 조직들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복지활동을 조직화하고 구체적인 복지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회의론 또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회의만 개최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는 점, 관의 도구화가 되었거나 정부의 지원 등이 뒷받침 되지 못해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요컨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은 ‘이론적’으로 볼 때 지역단위의 사회복지문제와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자원들을 극대화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해결 중심의 실천적 복지의 수행을 위한 것이다.

한편, 2005년부터 상근간사의 배치로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충남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복지 환경이나 관의 협력정도, 민의 주체적 의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활성화 정도가 다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도 내 15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설정한 기능과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인력, 협의체 자체사업의 실행여부와 내용,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주도적 수립여부,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 현황, 일선현장에서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기여 여부, 그리고 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분과 활성화 정도 등을 중심으로 15개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인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의 범위, 분석틀 등 전체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진 배경과 선행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론적 배경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관협력을 조망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이론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태를 행정자료와 실태조사 분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충남도 15개 시·군의 설문결과를 기술통계로 분석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례분석을 타시도 우수사례와 충남도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양적인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9개 시·군(논산, 청양, 부여, 서산, 아산, 당진, 태안, 천안, 홍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각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진단하여 보았다. 제5장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함께 영역 평가 즉, 조직, 인력, 사업, 재정, 네트워킹 현황 등으로 세분화하여 고찰하였다. 세부적인 평가에 이어 충남도 15개 시군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제6장에서는 5장에서 도출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조직, 인력, 사업, 재정, 네트워킹 현황 등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제7장인 결론 부문은 본 연구결과의 종합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발전 방안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사회복지행정과 관련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 검토하였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핵심활동인 민관협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네트워킹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2) 심층면접 조사

9개 시·군(논산, 청양, 부여, 서산, 아산, 당진, 태안, 천안, 홍성)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9개 시·군 간사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정도와 지역사회 네트워킹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등을 파악하였다.

〈표 4〉 심층면접내용

구 분	내 용
협의체위원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의 비율 · 협의체에서 민·관의 역할
협의체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협의체 업무 · 실무협의체 업무 · 실무분과 업무 · 협의체 간사 업무
네트워킹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기관의 대상과 내용, 연계정도 · 네트워크 활성화 정도 질의 · 민·관 협력에 관한 질의
복지계획수립 절차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경위 · 복지계획수립시 협의체의 역할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
협의체 평가 및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의 성과 · 협의체의 개선방향

시·군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심층면접의 소요시간은 2시간 정도이다.

3) 설문조사

15개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2014년12월에서 2015년 2월까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 문항은 지역복지 현황, 지역사회 네트워킹 실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설문지 구성

설문지 구성은 3영역의 총 3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2〉 설문지 구성 내용

구분	주요 조사내용	문항 수
지역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지역복지 현황 • 지역복지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정도 •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저해하는 요인 • 협의체가 자신의 복지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5문항
네트워킹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와 유관기관의 인지여부 • 복지정보 유관기관과 공유여부 • 업무수행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여부 • 협의체발족이후 유관기관과의 연계망 구축여부 • 유관기관과의 업무요청의 적극성 여부 • 업무관련 유관기관과의 친밀함 여부 • 업무관련 정보나 지식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존재 여부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8문항
협의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운영실정 • 민간위원 위촉과정의 신뢰 여부 • 협의체 위원들의 대표성 여부 • 공무원의 협의체 참석 여부 • 대표협의체 활동이 활발한가 여부 • 실무협의체 활동이 활발한가 여부 • 실무분과의 활성화 정도 • 협의체의 활동이 정책에 반영되는지 여부 • 상근간사의 선발 기준 • 관의 회의 주도 여부 • 협의체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실시 여부 • 협의체내에서 민간의 활발한 참여여부 • 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갈등소지 • 협의체 위원들의 협의체 업무의 인지 여부 • 협의체 3층 구조의 단순화 문제 • 별도의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 • 협의체사무실은 시군청 부속이 좋은지 여부 • 상근간사의 역량강화에 대한 질의 • 협의체의 예산편성 강화여부 • 회의참석에 대하여 기관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 • 간사, 담당공무원, 위원장, 분과장의 교육필요여부 • 협의체 발전 저해요인 	23문항

구분	주요 조사내용	문항 수
응답자 및 기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 성별 • 연령 • 협의체 직위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근무경력 • 현 직종경력 • 학력 • 자격증 	8문항
계		44문항

(2)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은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간, 공공 위원 대상으로 하였다.

(3)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온라인 서베이 방식과 오프라인 설문지를 병행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이다.

(4) 분석방법

회수된 설문지는 총 247개이며, 공주시와 예산군을 제외한 충남 15개 시·군에서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표 3〉 시·군에 따른 설문지 횟수량

시·군	계룡	금산	논산	당진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아산	천안	청양	태안	홍성
부수	1	19	30	36	4	20	18	7	23	10	28	30	21

설문조사의 결과는 통계패키지(spss version21)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항목들의 의견을 빈도분석을 통하여 전체적인 현상을 살펴보았다. 지역별, 직위별 등의 집단별 차이를 비교할 경우 리커트 척도일 경우에는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범주형 항목들은 카이스퀘어(χ^2)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각 설문항목들과의 통계표는 부록으로 처리하여 각 항목들의 응답현황을 자세히 제시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를 활용할 경우에 대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4) 워크숍

2014년 12월 19일, 충남도 15개 시군 간사들의 모임인 ‘간사회의’에 참석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산파라 할 수 있는 이경온 고문(전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 연합회 고문)을 초빙하여 16개 시·군(세종시 포함)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들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2015년 1월 23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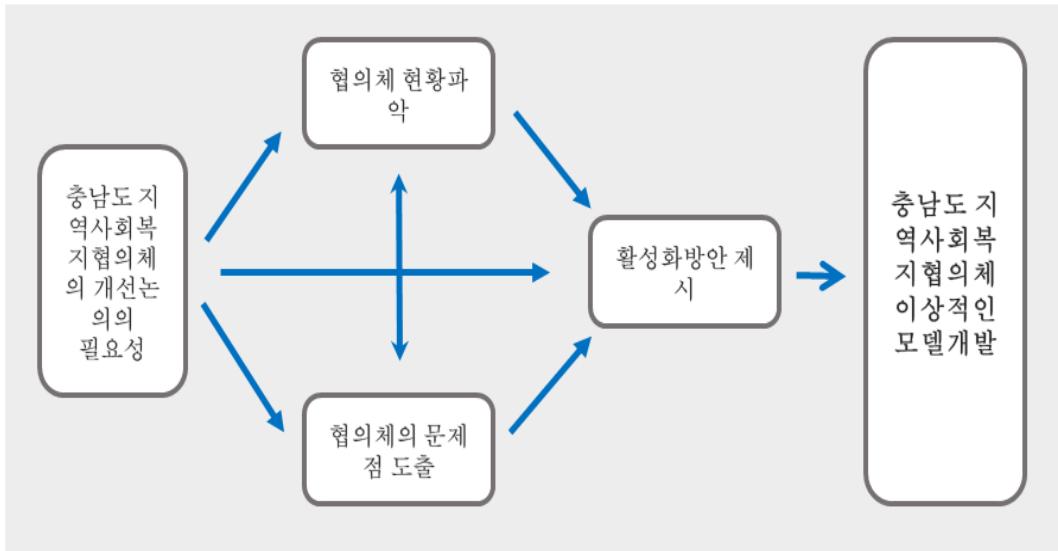
4.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충남도에 한정하여 도시와 농촌 및 도·농 지역으로 나누어 유형화하였다. 즉, 도시(천안, 아산, 당진), 도농복합(논산, 공주, 계룡, 보령, 서산, 금산), 농촌(태안, 청양, 홍성, 예산, 부여, 서천군) 15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본 연구의 대상이다.

충남도 내 15개 시군을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의 구분은 우선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15만 명과 5만 명을 기준점으로 사용하여 15만 명 이상은 도시지역, 5만 이하는 농촌지역으로, 그리고 5만 명~15만 명은 도농복합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인구규모와 더불어 행정구역의 분류를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를 3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인구 15만 명 이상은 도시지역으로 분류하고 천안, 아산, 당진을 포함시켰다, 둘째 도시지역이 아닌 나머지 시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분류하

였다. 따라서 도농지역은 공주, 서산, 계룡, 보령, 예산, 논산이 해당된다. 셋째 나머지 군 지역은 모두 농촌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농촌지역은 청양, 부여, 태안, 홍성, 서천, 금산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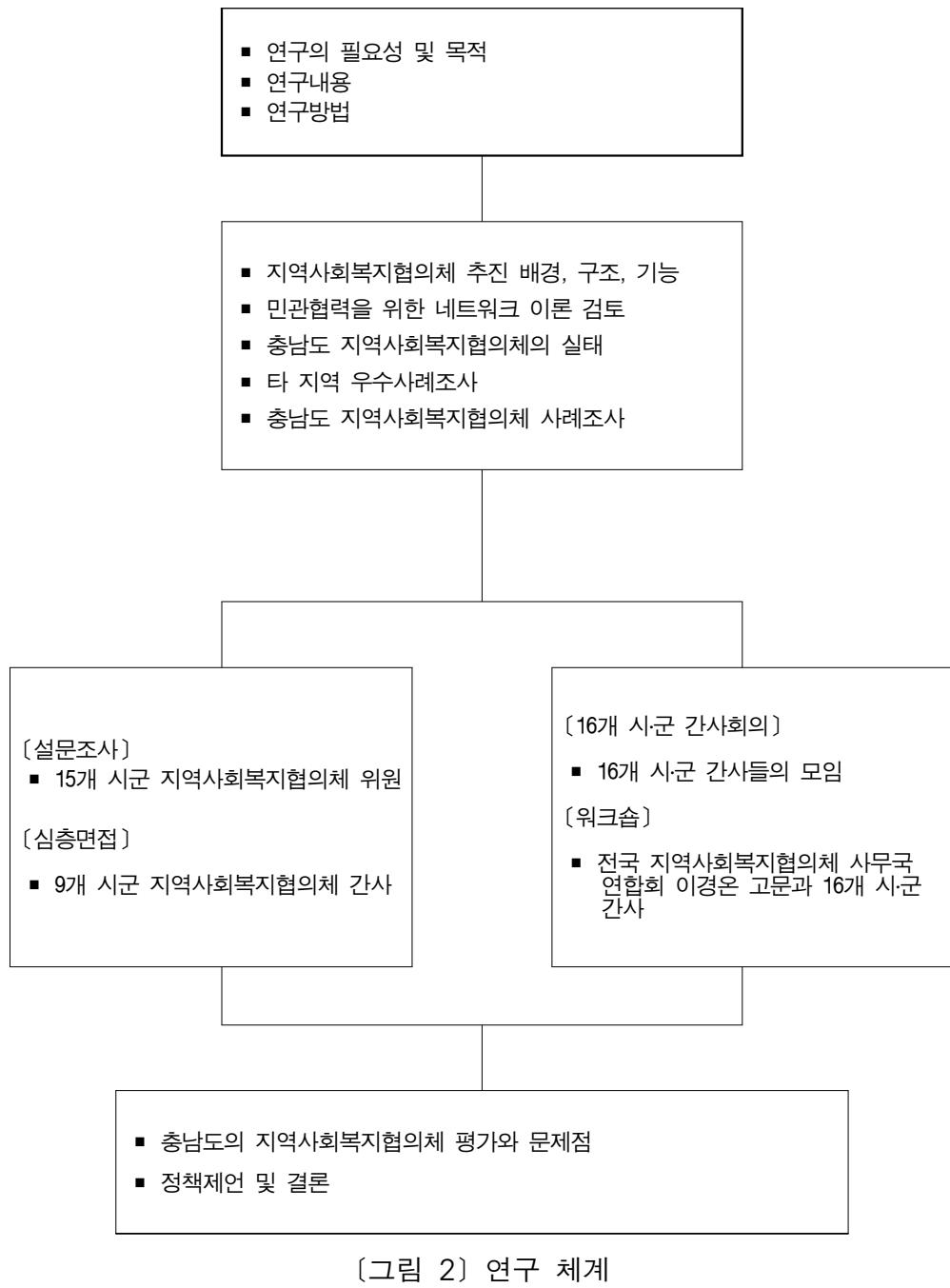
5. 연구의 분석틀과 연구주제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 충남도의 현실에 부합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환경에 따라 자원의 양, 지역주민이 지니는 문제의 특수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인력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협의체의 활동도 달라진다. 즉, 지역(도시, 농촌, 도·농)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정도(편차)가 다른가가 가장 중요한 연구가설이다. 그 밖에도 지역(도시, 농촌, 도·농)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환경 편차가 있는가(자원의 다소) 지역(도시, 농촌, 도·농)에 따라 협의체 구성이 다른가, 상근간사의 역량이 다른가 등이 연구주제이다.

6. 연구의 체계



제2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배경, 구조 및 기능과 이론적 고찰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진배경과 구조 및 기능

1) 추진배경

2003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발족된 배경에는 지역성을 강조하는 사회복지환경의 변화가 있다. 사회복지에서 지역성의 강조는 사회복지활동의 공간적 측면 외에도 주민참여와 지역자원의 발굴이라는 측면이 담겨져 있다(임호·이정석, 2012).

1980년대 서구에서 복지국가의 위기에 직면하여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국가에서 지역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수직적인 공공의 주도에서 민간역량의 극대화가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나라로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상황에서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복지서비스 제공을 지방정부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사회복지단위로서 지역사회가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게다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맞물리면서 지역사회단위의 협의구조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실제로, 2001년부터 전국의 15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03년 7월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탄생되었다(이현주, 2003).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변될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새로운 변화의 핵심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민·관의 협력적 방안의 모색이다.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배경을 살펴보면 다음의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3).

- (1)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전달 방법의 근원적 변화
- (2) 지역복지 환경의 특성에 의한 연계 및 조직화 필요성
- (3) 지역사회 공동체적 기능 회복과 사회자본 증대의 필요성
- (4)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 조직화의 가능성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복지수요의 변화를 바탕으로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향하는 목적은 1)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과 2)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 조정하는 것이고 3)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자원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서비스 제공기간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3).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나라에서 지역단위로 복지를 체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으로 볼 수 있다(이현주, 2009).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복지에 관계된 모든 정책결정자(정책기관)와 현장 실무자의 파트너십(partnership)과 같은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 이는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대두한 복지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의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즉,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국가의 중심성은 사라지고, 그 대신 국가와 지역 행위자간의 계약적인 관계가 핵심이 되었다. 과거의 고전적인 국가에 의한 상명하달식 사회복지 정책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박의 대상이 되었고 참여 민주주의 맥락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일종의 구성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지역복지정책의 핵심을 구성하게 되었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조와 기능¹⁾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령으로 규정된 필수기구인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실무자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분과의 3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1) 대표협의체 구성 원칙

가. 대표협의체 구성 원칙

대표협의체의 구성 원칙은 대표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첫째, 대표성의 원칙은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의 복지 구성 주체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을 말한다. 둘째, 포괄성의 원칙은 대표협의체 위원의 구성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의 복지분야 및 연계분야의 구성 주체들이 최대한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을 말한다. 셋째, 민주성의 원칙은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필요성의 원칙은 지역복지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위원으로 위촉해야 함을 말한다.

나. 대표협의체 위원의 구성 및 선출

해당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관련 공공부문대표·민간부문대표·이용자부문대표 등 세 영역별 주체들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이들 세 부문을 지역사회복지 구성 주체로 한다.

대표협의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시행규칙 제1조의 제①항)

1) 보건복지부(2013)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매뉴얼을 중심으로 필요한 내용을 압축 요약 정리함.

(2) 실무협의체 구성

가. 실무협의체 구성의 원칙

실무협의체 구성은 포괄성의 원칙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포괄성의 원칙이란 실무협의체 위원의 구성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 복지 구성 주체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을 말한다.

나. 실무협의체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실무협의체 위원의 구성 및 선출은 전문성의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구성하고 선출해야 한다. 전문석의 원칙은 실무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을 말한다. 그리고 필요성의 원칙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역량발휘 및 자원발굴·연계가 가능한 자를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함을 말한다.

다. 실무협의체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실무협의체 위원은 포괄성, 전문성, 필요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지역복지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각 영역에 종사하는 자 중 민주적 절차·방법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이때 공공부문 실무협의체 의원은 공공기관 실무위원이 전체의 1/3이 넘지 않아야 하고,民間부문 실무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이 전체의 2/3이 넘지 않아야 한다. 기타연계 영역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나, 지역복지에 필요한 자원, 서비스 발굴·연계를 위해 필요한 분야의 사람 등을 기타 연계 영역의 실무위원을 추천 할 수 있다.

(3)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구성

가. 실무분과 구성

실무분과는 공공기관 실무분과 위원, 민간 서비스 실무분과 위원, 기타 연계 영역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때 기타 연계 영역은 기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가 필요한 경우 고용, 주거, 문화관광, 체육, 경제 등에 관련된 기관의 실무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나. 실무분과 구성의 형태

실무분과의 구성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기초를 제공하므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구성방식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대상별, 지역별, 기능별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 각 분과의 위원 수는 지역 실정에 따라 협의체 내의 협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그림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조체계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및 운영

사회복지환경변화와 전달체계 개편의 맥락에서 탄생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의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은 크게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민·관의 협치(governance),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및 조직화, 통합서비스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이중 협치(governance)의 내용은 지역복지의 주요 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하여 의사결정·심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의하는 것이고, 통합서비스 기능은 협의체 내에서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의 역할과 효율적 서비스 전달을 위해 지원하는 것과 기존의 보건복지연계 이외 관련 타 영역과 연계를 확대하는 것으로 구별된다.

협치는 주로 대표협의체의 역할이지만, 실제 의제를 개발하고 사업을 수행해 나갈 때는 실무협의체와 연계하여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고 협력해 나간다.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관계망(network)을 구축하여 최대한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뜻이다.

(2) 주요 역할

대표협의체의 주요 역할은 지역 사회복지계획 및 시책에 대한 심의 및 건의이다. 실무협의체의 역할은 공동사업 개발 및 건의,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및 건의, 대표협의체 심의(건의) 안건 사전 검토,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이슈에 대하여 논의,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도모, 지역사회 자원개발 관련 협의 및 건의 등이다. 실무분과의 역할은 공동사업의 수행, 대상자별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서비스 제공 관련 건의이다.

2.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이론적 고찰

2013년 전국적 차원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출범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지역 사회자원의 발굴 및 효율적인 이용, 전달체계 개선, 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이다. 앞서 열거한 세 가지 기대효과는 모두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 실제로, 네트워크 구축은 자원에 대한 필요성, 조직 영역의 확장 필요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성, 규모의 경제를 위한 필요성 등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복지 실천 및 행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다(홍현미라, 2008).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각기 다른 욕구를 가진 대상층에 따라 범주화된 서비스체계로 인하여 서비스간의 역할분담과 조정, 상호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서비스간의 단절성과 중복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서비스 통합의 추구이며, 이는 결국 네트워크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문제이다(이봉주, 2005; 백종만, 201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도입배경과 목적을 볼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역연계망협치(local network governance)를 위한 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성로, 2009; 임태경, 2009).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킹의 활성화야 말로 협의체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론적 고찰에서는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개념, 네트워크이론의 협의체에의 적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네트워크(network)에 관한 일반적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²⁾ 복잡한 조직간 관계의 분석에서부터 기업경영, 국제관계 등에까지 현대사회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고 있는 네트워크 개념은 논자에 따라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으나, “일정수의 행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또는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 간에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 (김문조, 1987), 또는 “여러 조직이나 부서가 공식적으로 상하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구조” (O'Toole, 1997)라고 정의된다. 상기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 네트워크 개념의 공통분모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노드(node)들의 집합’ 이다(Castell, 2004). 네트워크에서 노드(node)

2) 김용현, 2010의 연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임

로 표시되는 행위자는 개인, 조직, 기관 같은 사회적 실체이며, 행위자들은 관계적 고리(relation ties)에 의해 서로 연결된다. 흔히, 연계(linkage)라고 불리는 관계적 고리(relation ties)는 노드인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네트워크 개념을 사회복지분야에 적용하면 “서비스 조직 운영 및 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에 필요한 자원을 교환하고 클라이언트의 의뢰 및 서비스 연결을 위해 조직간 형성된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망” (유태균, 김자옥, 2001)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서비스의 단편성, 중복성,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조직 간의 협력관계를 뜻하는 것” (Marsh and Rhodes, 1992) 등으로 다시 정의되고 있다.

간단한 정의(定義)의 차원을 넘어서, ‘네트워크’ 개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의 실무자 간 상호협력관계를 분석하는데 어떠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와써먼과 화우스트(Wasserman and Faust, 1999)는 ‘자원의존’ (ressource dependance)의 관점에서 네트워크 분석의 이론적 근거를 들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네트워크 내에서의 “행위자와 그들의 행동은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인 단위이기보다는 상호의존적이다. 상호의존의 이유는 조직이건 개별 행위자이건 간에 다른 행위자가 소유한 자원 없이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며, 네트워크는 특정 자원에 대한 접근성 때문에 서로 의존할 수 있는 곳에서, 가능한 상호의존성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한 조직이 다를 수 없고 상호이익이 있는 곳에서 존재한다” 는 것이다(Wasserman and Fraust, 1994; 한인숙·김희연, 2001). 이처럼, ‘네트워크 이론’은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주고받는 ‘자원’에 주목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네트워킹은 권력, 지위, 정당성, 지식, 정보 그리고 재원 같은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의 이전이나 자원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내에서 교환되는 자원에 주목하는 네트워크이론은 자연스럽게 자원동원이론(ressource mobilisation theory)과 연결된다. 자원동원이론은 자원의 확대를 통해서 전체 지역사회복지가 증진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즉, 네트워크 구축 자체가 지역사회복지 전체로 보아서 자원의 확대이기도 하다. 네트워크라는 어의(語義)자체가 그물망이며, 이는 자원, 주체들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다(홍현미라, 2008).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은 지역사회 내에 과거 쓸모없게 여겨졌던 자원을 발굴, 개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은 비교적 다양하게 지역사회 내에 분포되어 있지만 중요한 자원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네트워크 구축의 동기가 된다. 따라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동원되지 않은 다양한 아이디어나 자원,

해결책 등이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원동원이론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형태의 개인이나 조직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간의 조정과 협력이 전체 지역복지를 개선한다는 상호조직이론과 다시 연결된다. 많은 부분, 지역사회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다른 실무자나 조직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클라이언트의 통합적인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다. 상호조직이론에 의하면 모든 조직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 더 큰 단위의 조직이나 조직의 연결망 안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그 이유는 부족한 자원내지는 한정된 클라이언트를 위한 조직간의 상호경쟁은 전체 지역사회복지를 퇴보시키는 요인인기 때문이며 일정한 지역사회의 조직들은 각각의 영역 내에서 협력과 조정을 통해서 전체 지역사회복지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지은구, 200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조직(행위자)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복합적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김인숙·신은주·김혜선, 1999). 실제로, 특정 문제나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들이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 간의 협조체계와 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있다면 클라이언트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네트워크 구축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공급자 간 상호협력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의 한 전략이자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조정, 연계는 쉽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 그 까닭은 네트워크 구축에 이르는 과정은 길고도 많은 과정과 절차, 집단적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선행연구 검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한연숙(2005), 황철수(2006), 지은구(2006), 지은구(2006), 장현주(2008), 초의수(2008), 윤춘모(2009), 김형모(2009), 김창기·정재우(2010), 최은희(2012) 등이 그것이다. 이 중 광역시·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연구는 초의수(2008)의 부산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초의수(2008)는 부산지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표협의체 평균 4.17회, 실무협의체 3.36회, 실무분과위원회 2.47회의 회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대부분의 조직운영에 있어서 대표자들의 회의보다는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가 더 많은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정반대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도의 법률적 의무로 인해 상향식, 실무중심의 접근보다는 행정주의의 하향식, 형식중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주도나 민관협력을 통해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주요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동원·김근식(2010)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연구에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설치목적 달성 수준과 상근간사의 역할 수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상근강사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상근간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촉진자의 역할, 권한부여자의 역할, 응호자의 역할의 비중을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근간사의 역할 수준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요인으로는 상근간사의 근무지 형태였으며 이외에도 성별, 연령대, 사회복지경력, 상근간사의 채용 시기, 근무 기간, 행정구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언급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많은 선행연구 중 충남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전무하다. 다만, 충남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부분적인 연구로는 충남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행복키움지원단 역할에 대한 의식 조사(최은희, 충청남도여성개발원, 2012)가 있다. 이 연구는 충청남도 및 세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 258명을 대상으로 공공사례 관리에 대한 인식 및 협의체 역할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중심의 원활한 사례관리를 위한 역할수행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충남도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현황을 서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일선 지역사회복지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문제점에 따른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개선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제3장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태분석

1.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반현황

1)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13.1.1~'13.12.31)

시도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현황										상근간사 채용 및 운영 현황					2013년도 협의체 운영 관련 예산액[단위:천원]			
	대표 협의체		설무 협의체		설무 분과		대표 협 의체 인원정		상근간사 상회조 체(용시기 (년도))		상근간사 상회체 이용률 (%)		일반운영비 (전월)		인건비 (일반운영비 포함)		사업비 (전월)		
	구성원 구수(명)	연간 회의 개최수(회)	구성원 구수(명)	연간 회의 개최수(회)	총성원 구수(명)	설무분 과수(회)	연간 회의 개최수(회)	설무분 과수(회)	상근간사 상회체 이용률 (%)	인건비 (만간인 공무원)	급여수 준 (소득) (전월)	상근간사 상회체 이용률 (%)	인건비 (만간인 공무원)	급여수 준 (소득) (전월)	시도자원 시군구예산 시도자원 시군구예산	시도자원 시군구예산 시도자원 시군구예산	시도자원 시군구예산 시도자원 시군구예산		
충남 천안시	28	1	1	30	3	76	7	37	민간	1	2,005	2,005	민간인 (무기계약) 7급3호 봉미만	86,195	5,300	44,700	36,195	-	
충남 공주시	25	1	2	18	2	72	7	29	미관 공동	1	2,011	2,012	민간인 (일반계약) 7급3호 봉미만	51,982	5,300	25,000	21,682	-	
충남 보령시	23	4	1	27	6	69	8	23	미관 공동	2	2,009	2,012	민간인 (일반계약) 7급3호 봉미만	133,400	5,800	68,700	47,900	- 11,000	
충남 아산시	25	6	0	28	4	95	7	71	미관 공동	1	2,010	2,010	민간인 (무기계약) 7급3호 봉이상	100,767	5,300	60,000	35,467	-	
충남 서산시	20	3	0	18	4	56	7	4	미관 공동	1	2,011	2013년 (7월~1일 0일) 민간인 (일반계약) 7급3호 봉이상	62,844	5,300	22,400	23,144	- 12,000		
충남 논산시	26	2	0	27	2	73	6	48	미관 공동	1	2,005	2,005	민간인 (무기계약) 7급3호 봉이상	92,595	5,300	35,600	35,695	- 16,000	

충남	계룡시	18	3	1	18	3	63	7	3	민간	1	2,012	2,012	민간인 (일반계약)	7급3호 봉이상	65,764	5,300	23,780	24,944	-	11,740
충남	당진시	23	2	0	21	2	105	8	51	민관 공동	1	2,007	2,010	민간인 (일반계약)	7급3호 봉미만	58,635	5,300	29,700	23,635		
충남	금산군	13	2	0	14	4	55	6	6	민관 공동	1	2,012	2,012	민간인 (일반계약)	7급3호 봉미만	56,894	5,300	25,441	24,000	-	2,153
충남	부여군	17	5		12	1	34	5	7	민관 공동	1	2,007	2013년 (7월~1월 0후)	민간인 (일반계약)	7급3호 봉이상	46,067	5,300	20,700	20,067	-	
충남	서천군	18	1	1	25	3	93	7	12	민관 공동	1	2,009	2013년 (6월~ 30일 까지)	민간인 (일반계약)	7급3호 봉미만	63,200	5,300	17,500	14,400	-	26,000
충남	청양군	12	3	3	18	5	63	6	31	민관 공동	1	2,006	2,011	민간인 (일반계약)	7급3호 봉미만	65,000	5,300	35,700	24,000	-	
충남	홍성군	21	2	2	23	4	100	6	33	민관 공동	3	2,010	2,010	민간인 (무기계약)	7급3호 봉이상	259,376	5,300	147,000	82,076	-	25,000
충남	예산군	25	2	1	25	6	85	8	38	민관 공동	1	2,012	2,012	민간인 (일반계약)	7급3호 봉이상	96,500	5,300	25,700	27,500	-	38,000
충남	타안군	20	3	1	16	3	60	3	20	민관 공동	1	2,012	2,012	민간인 (일반계약)	7급3호 봉미만	46,966	5,300	22,700	18,966		

2014년도 협의체 운영 관련 예산액[단위:천원]		2013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실적												
소계	기본 운영비	사업비			연구,조사, 제도개선 실적 건수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및 조정 설직 건수			교육·훈련, 세미나 등 실적 건수			
		시군구예산	시도지 청	시군구예산	기타 지자체 기획 합계	기타 기획 사업 합계	연구 조사 (자원 육구조 등)	제도개 선제안 제작 기타	합계	민간 기부 연계 (건)	보전 의료 연계 (건)	민간 기부 연계 (건)		
50,000	5,300	44,700			2	2		2				7	6	1
35,300	5,300	30,000			4	2						2	1	1
85,000	5,300	67,950		11,750	2	1	2	1	1			2	2	1
65,300	5,300	60,000			13	2	11			7,909	578	59	6,070	1,202
30,700	5,300	25,400			1	2			2	1	1			6
56,900	5,300	38,100		13,500	2	2	0	2	2	38	28	5	5	1
59,820	5,300	54,520			3	2	1					7	2	4
35,000	5,300	29,700			36	18	3	2	1	45	30		15	21
17,700	5,300	10,120		2,280	4	1	3			3	3		2	1
17,000	5,300	11,700			5	2	3	6	1	5	83	2	5	35
38,700	5,300	12,400		21,000						5	2	1	2	2
47,000	5,300	41,700			7	7	1	1		1		1	9	1
152,300	5,300	147,000			11		11			11		2	9	3
69,000	5,300	25,700		38,000	2					8	6	2		1
28,000	5,300	22,700			10	1	9	10	10	29	12	2	15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현황에서 인적(人的)인 측면은 15개 시·군이 대동소이하나 연간 회의 개최 수는 시·군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령, 대표협의체의 연간회의개최횟수는 모든 시·군이 대동소이하나 실무분과 연간회의개최횟수는 아산시의 경우는 71이나 서산시는 4회뿐으로 시·군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고 이같은 편차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정도와 관계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대표협의체 구성원 수는 천안시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산군이 13명으로 가장 적었다. 대표협의체의 인적(人的) 구성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연간회의 개최수다. 아산시가 연간 6회로 가장 많았고 연간 1회만 개최한 시군도 3개나 되었다. 실무협의체 구성원 수 역시 천안시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여군이 12명으로 가장 적었다. 실무협의체의 연간회의 개최 수는 보령시와 예산군이 6회로 가장 많았고 부여군이 1회로 가장 적었다. 실무분과 구성원 수는 당진시가 105명으로 가장 많고 부여군이 53명으로 가장 적었다. 연간회의 개최수는 아산시가 71회로 가장 많았고 서산시는 4회, 금산군은 6회, 부여군은 7회로, 일반적으로 계룡시를 제외한(3회 개최)군단위 지역이 개최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민관공동이 가장 많았고 천안시와 계룡시만이 민간위원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근간사 채용 및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15개 시·군 모두 민간인 신분인 것은 동일하나 무기계약직은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 등 4개 시·군뿐으로 다른 시·군은 일반계약직으로 간사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채용인력수는 홍성군이 예외적으로 3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보령시 2명을 제외하곤 1명의 간사만이 협의체를 지키고 있다. 천안, 논산 등은 간사들이 교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반대로 태안, 서산, 부여 등은 간사들의 잦은 교체로 협의체 업무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급여수준은 보령, 서산, 논산, 계룡 등은 7급 3호봉 이상이고 그 외의 지역은 7급 3호봉 미만이었다.

협의체 운영 관련 예산액은 시·군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그 까닭은 인건비 비중이 큼으로 상근 간사의 근무연수에 따라 좌우되고 상근간사가 자주 교체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을 알 수 있다. 협의체 예산은 협의체 인력이 3명인 홍성군이 259,376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부여군으로 46,067천원이었다. 시도지원액은 5,300천 원으로 15개 시·군이 동일하였다.

2013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서비스 연계 및 조성 실적 건수는 아산시의 경우(7,909건수)가 두드러지고 다른 시군은 대동소이하다. 교육·훈련, 세미나 건수는 당진시가 21회, 아산시가 10회, 청양군 9회, 천안시 7회, 논산시 6회 등이고 그 외 시군은 개최 건수가 저조하였다.

지역사회복지 심의 건수는 당진시가 36회로 가장 많았고 서천군은 2014년도는 한 번도 심의 건수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복지 심의건수는 시·군마다 편차가 컸다.

2)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구성원 현황('13.12.31 현재)

시 도 명	시군구명	구성원 현황		분야별 참여자 현황						위원회 성명		비고	
		대표협의체 소개(A~G의 핵심 유형)	민자부수(명)	관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특별 보건의 기관(기관별 대표명)(A)	관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있는(고장, 거주자 등)	관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특별 보건의 기관(기관별 대표명)(B)	관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있는(고장, 거주자 등)	관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특별 보건의 기관(기관별 대표명)(C)	관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있는(고장, 거주자 등)	공모 단체장단 청탁 기관(기관별 대표명)(D)	봉과 출전 기관(기관별 대표명)(E)	기타	
충남	천안시	미관공동	28	8	20	28		11	5	1	8	3	
충남	공주시	미관공동	25	6	19	25	21	4	8	1	4	6	
충남	보령시	미관공동	23	4	19	23	22	1	10	3	5	4	
충남	아산시	미관공동	25	3	22	25	17	8	11	6	3	2	
충남	서산시	미관공동	20	5	15		20		10	2	5	1	
충남	노은사	미관공동	26	4	22	26	20	6	9	2	10	4	
충남	계룡시	민간	18	3	15	18	6	6	6	9	2	3	
충남	당진시	미관공동	23	4	19		20		6	3	4	1	
충남	금산군	미관공동	13	4	9	13	7	6	4	2	2	4	
충남	부여군	미관공동	17	3	14	17	14	2	1	3	2	7	
충남	서천군	미관공동	19	3	16	19	19		12	2	3	2	
충남	청양군	미관공동	12	3	9	12	12		4	1	2	3	
충남	홍성군	미관공동	21	3	18		21		4	2	6	2	
충남	예산군	미관공동	25	4	21	25			7	5	3	2	
충남	태안군	미관공동	20	3	17	20	18	2	9	1	2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구성현황 중 위원장 유형은 계룡시만 민간위원장이고 다른 시·군은 공히 민관공동위원장으로 파악되었다. 구성원 현황중 위원 수는 금산군(13), 부여군(17), 청양군(12), 서천군(19) 등 군단위가 천안시 28명, 논산시 26명 아산시 25명 등 도시지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의 현황중 공무원대 민간인 비율은 모든 시·군에서 민간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지역관련성은 관내 거주인 사람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고 관내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관내에 있는 기관에 근무중인 사람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타 지역에 거주하나 연고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예외적으로 계룡시는 지역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람도 6명이나 되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야별 참여자는 복지사업기관단체 대표가 가장 많았고 보건의료단체 대표와 관계공무원 등이 뒤를 이었다. 협의체 구성원으로 사회복지관련학과 교수는 거의 모든 시·군에 존재하였으나 보건의료관련학과 교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 현황에서는 사회복지관련학과나 보건의료관련학과 교수가 아니면서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분류되어 위촉된 위원도 많은 시군에서 존재하였다. 위원구성방식은 공모, 단체장지명, 기관단체추천, 분과추천, 기타 중 시·군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천안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에서 기관단체추천으로 협의체 위원을 구성하였다. 특기할 것은 기관단체추천과 기타방식을 병행해서 위원을 구성하는 시군도 4개나 되었다. 기관단체추천이외에 공모, 단체장지명, 분과 추천 등의 방식이 비슷한 빈도로 분석되었다. 시·군에서 위원구성시 주로 활용하는 방법은 기관단체추천이 주를 이루었고 그 밖에는 단체장지명과 공모가 뒤를 이었다.

3)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구성원 현황('13.12.31 현재)

시도명	구성원 현황	분야별 참여자 현황			위원회 구성 방식(복수 표시 가능)			비고
		복지사각대표(A)	보건의료단체대표(B)	관공체공무원(C)	사회복지로보건의료단체대표(D)	기관·단체장·지방주민(G)	분과주체	
충남 천안시	30	10	20	12	1	10	2	5
충남 공주시	18	5	13	9	1	3	5	0
충남 보령시	27	7	20	1	2	3	7	11
충남 아산시	29	9	20	14	1	9	1	4
충남 서산시	18	5	13	7	2	4	5	0
충남 논산시	27	8	19	10	2	7	8	0
충남 계룡시	15	3	12	10	2	6		0
충남 당진시	21	5	16	3	1	1	5	11
충남 금산군	14	4	10	4	2	4	4	0
충남 부여군	12	5	7	1	1	1	5	4
충남 서천군	25	11	14	13		11		1
충남 청양군	22	8	14	11	1	1	7	2
충남 흥성군	23	7	16	8	1	3	6	5
충남 예산군	25	4	21	12	2	8	3	0
충남 태안군	16	3	13	4	9	3	0	0

실무협의체 구성원의 수는 천안시 30명, 부여군 12명 등으로 시·군에 따라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무협의체 구성원 수는 협의체 활성화 정도와 비례했다.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등, 협의체가 활성화 된 지역은 30명, 29명, 27명으로 구성원 수가 많았고 부여군, 태안군, 서산시 등, 12명, 16명, 18명으로 구성원 수가 작은 것으로 드러냈다. 구성원 현황중 민·관의 비율은 모든 시군에서 압도적으로 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룡시의 경우 공무원과 민간인의 비율이 1:4정도나 되었다. 분야별 참여자 현황은 복지사업기관단체대표와 관계 공무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보건의료기관단체대표와 공익단체추천 위원이 많았다.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청양군에서는 사회복지관련학과 교수가 실무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였고 보령시는 15개 시군중 유일하게 보건의료관련학과교수가 실무협의체에 참여하였다.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등에서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학과 교수가 아닌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위원 구성 방식은 공모, 단체장지명, 기관단체추천, 분과추천, 기타 중 시·군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은 공모에 의해 위원이 구성되었고 아산시, 계룡시, 금산군, 태안군은 단체장 지명에 의해 실무협의체 위원이 구성되었다.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은 기관단체추천으로 위원이 구성되었다.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은 분과추천에 의하여 위원이 구성되었다. 공모나 단체장지명, 기관단체추천, 분과 추천이 아닌 기타방식으로 실무협의체 구성원이 구성된 시군도 각각 서산시, 부여군, 서천군 등으로 3개 시군이나 되었다. 그리고 15개 시군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을 구성하는 방식은 공모, 단체장지명, 기관단체추천, 분과 추천 등 단일한 방식에 의해 결정된 시군(천안시, 공주시, 청양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2개 이상의 방식으로 위원이 구성되었다. 시군에서 위원구성시 주로 활용하는 방법은 10개 시군이 분과추천에 의하여 위원을 구성하였다. 서산시와 당진시는 공모에 의하여 위원이 구성되었고 논산시, 예산군, 태안군은 기관단체 추천으로 위원이 구성되었다.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현황(13.12.31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의 내용과 분과수는 시·군이 처한 지역사회복지환경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분과와 노인분과는 15개 시·군 모두 구성되어있으나 그 밖의 분과는 시·군에 따라 달랐다. 가령, 천안시는 실무분과가 장애인, 여성, 가족, 다문화, 영육아, 아동, 청소년, 노인분야를 포함하지만 실제 분과는 5개로 구성되어있다. 공주시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3개 분과만으로 실무분과가 구성되어 있다. 15개 시군중 가장 분과수가 많은 시군은 예산군으로 8개 분과가 있다. 가장 분과수가 적은 시군은 부여군과 계룡시로 각각 2개 분과로 실무분과가 구성되어 있다. 실무분과가 구성되긴 했으나 연간 한 번도 분과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시군도 많았다. 보령시는 2013년도 기준, 회의를 1회도 개최하지 않은 분과수가 3개나 되어 유명무실한 실무분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별 분과를 제외한 사례관리 분과는 논산시, 금산군, 서천군, 홍성군 등, 4개 시군에 존재하였다.

2. 설문조사 분석

먼저, 설문에 응한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은 인구수와 시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천안, 아산, 당진), 농촌(태안, 청양, 홍성, 예산, 부여, 서천), 도농복합(논산, 공주, 계룡, 보령, 서산, 금산), 3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도시지역의 응답자 28.0%, 농촌지역의 응답자 43.1%, 도농지역의 응답자 28.9%로 구성되었다.

지역변수를 제외한 응답자 현황은 응답자들이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자들의 개인정보와 보다 편하고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응답을 허용하였는데, 그 비율은 높지 않았다.

응답자들의 일반현황은 <표4>에 제시하였으며, 무응답을 제외하고 비율을 산출하였다. 응답자 전체 현황은 246명이다. 응답자 일반현황 중 전체 합계 246명에 못 미치는 항목은 무응답이다.

<표 4> 응답자 일반현황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지역	도시	69	28.0	학력	대졸이하	12	4.9
	농촌	106	43.1		대졸 (전문대포함)	159	65.4
	도농	71	28.9		대학원 진학	14	5.8
	합계	246	100.0		대학원 졸	54	22.2
연령대	20대	31	13.5		기타	4	1.6
	30대	69	30.1		합계	243	100.0
	40대	79	34.5	자격증	없음	43	17.5
	50대이상	50	21.8		사회복지사 1급	68	27.6
	합계	229	100.0		사회복지사 2급	111	45.1
	대표협의체 회원	15	7.0		간호사	3	1.2
직위	실무협의체 위원	36	16.7		요양보호사	6	2.4
	실무분과 위원	136	63.3		기타	15	6.1
	사무국 인력	10	4.7		합계	246	100.0
	비협의체 위원	18	8.4				
	합계	215	100.0				

설문문항은 앞에서 제시한대로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성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양적인 분석이 필요한 문항들은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하였다. 리커트 척도의 경우 ‘보통이다’라고 답할 수 있는 경우와 ‘보통이다’를 답하기 어려운 경우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1점에서 5점으로 후자는 1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평균값이 높을수록 크거나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낮을수록 작거나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1) 분석

(1) 각 항목의 빈도분석

① 지역복지

사회복지가 잘되고 있다는 응답이 41.5%로 잘못되고 있다고 응답한 9.3%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점 척도로 환산할 때 평균 3.37점으로 보통(3점)보다는 다소 높게 나와 역시 사회복지가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지역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잘 못 되고 있다	3	1.2
잘 못 되고 있다	20	8.1
보통이다	121	49.2
잘 되고 있다	88	35.8
매우 잘 되고 있다	14	5.7
합계	246	100.0
평균(표준편차)	3.37(0.76)	

지역사회복지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기반 정비’라는 응답이 30.1%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복지 기관간 민간의 협력 수준(16.3%)’, ‘지역주민의 관심 및 참여확대(15.9%)’, ‘지역복지재정의 확충(15.4%)’,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확충(14.2%)’, ‘복지수요자의 시군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4.5%)’,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활동수준(2.4%)’, ‘시군의 자체사업의 비율(0.8%)’, ‘기타(0.4%)³⁾’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지역사회복지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구분	빈도	비율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기반 정비	74	30.1
지역복지재정의 확충	38	15.4
지역주민의 관심 및 참여확대	39	15.9
사회복지전문인력의 확충	35	14.2
사회복지기관간 민관의 협력수준	40	16.3
복지수요자의 시군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1	4.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수준	6	2.4
시군의 자체사업의 비율	2	0.8
기타	1	0.4
합계	246	100.0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교류협력의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잘 되고 있다, 매우 잘 되고 있다)이 33.0%로 부정적인 응답(잘 못 되고 있다, 매우 잘 못 되고 있다) 11.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5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3.25점으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교류협력의 정도에 대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3) 기타는 ‘지자체의 편중된 복지사업 및 서비스 전달체계(민간영역에서의 전달체계)의 과도한 참여로 인한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강화’ 의견임

〈표 7〉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교류협력의 정도에 대한 평가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잘 못 되고 있다	2	.8
잘 못 되고 있다	26	10.6
보통이다	137	55.7
잘 되고 있다	71	28.9
매우 잘 되고 있다	10	4.1
합계	246	100.0
평균(표준편차)	3.25(0.72)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간의 교류협력을 가장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상적 업무의 과중함’이 29.1%로 가장 높았으며, ‘기관 및 상이한 사업내용 및 운영여건(27.4%)’, ‘교류협력에 대한 낮은 기대감(20.9%)’, ‘기관 및 시설 간 경쟁의식(12.6%)’, ‘책임 있는 중심기관 선정의 어려움(8.3%)’, ‘기타(1.7%)⁴⁾’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간의 교류협력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

구분	빈도	비율
기관 및 시설 간 경쟁의식	29	12.6
기관 및 상이한 사업내용 및 운영여건	63	27.4
교류협력에 대한 낮은 기대감	48	20.9
일상적 업무의 과중함	67	29.1
책임있는 중심기관 선정의 어려움	19	8.3
기타	4	1.7
합계	230	100.0

4) 기타에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관심분야 개발을 통한 상호협력’, ‘정확한 실태파악의 부족과 군민 기관 시설 간 역할분담 협력 조정 부족’, ‘기관장의 사고’라는 의견이 있었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립이 복지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하여서는 ‘도움이 된다(42.6%)’ 와 ‘많은 도움이 된다(14.3%)’ 가 56.9%이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6%)’ 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8.2%)’ 의 부정적 의견이 9.8%로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5점 척도로 환산하였을 경우 3.6점으로 비교적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립이 복지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1.6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	8.2
보통이다	81	33.2
도움이 된다	104	42.6
많은 도움이 된다	35	14.3
합계	244	100.0
평균(표준편차)	3.60(0.89)	

② 네트워킹 현황

업무이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복지 기관이나 단체의 관리자들과 아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37.4%, 보통이 41.1%, 부정적인 응답이 21.5%로 나타났다. 이를 5점 척도로 살펴보면 평균이 3.2점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0〉 업무이외 개인적으로 다른 복지기관(단체)의 관리자들을 많이 아는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	2.0
별로 그렇지 않다	48	19.5
보통이다	101	41.1
그렇다	77	31.3
매우 그렇다	15	6.1
합계	246	100.0
평균(표준편차)	3.20(0.89)	

복지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다른 복지기관(단체)들과 공유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25.2%)’ 와 ‘매우 그렇다(3.3%)’ 의 긍정적인 응답이 28.5%로 나타났고, ‘별로 그렇지 않다(29.7%)’ 와 ‘전혀 그렇지 않다(2.8%)’ 가 32.5%로 나타나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이를 5점 척도로 살펴보면 2.96점으로 약간의 차이지만 부정적인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복지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다른 복지기관(단체)들과 공유하는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7	2.8
별로 그렇지 않다	73	29.7
보통이다	96	39.0
그렇다	62	25.2
매우 그렇다	8	3.3
합계	246	100.0
평균(표준편차)	2.96(0.89)	

업무수행과 관련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외부 단체와의 공청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긍정이 55.5%, 부정이 12.6%로 나타나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3.55점으로 참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표 12〉 업무수행과 관련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외부 단체와의 공청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0.4
별로 그렇지 않다	30	12.2
보통이다	78	31.8
그렇다	106	43.3
매우 그렇다	30	12.2
합계	245	100.0
평균(표준편차)	3.55(0.88)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출범이후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소통 및 연계·조정이 원활해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그렇다(39.8%)’, ‘보통이다(38.2%)’, ‘매우 그렇다(10.2%)’, ‘별로 그렇지 않다(11.4%)’, ‘전혀 그렇지 않다(0.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5점 척도로 환산하였을 경우 3.48점으로 다른 단체들과 소통 및 연계·조정이 원활해졌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출범이후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소통 및 연계 · 조정이 원활해졌는지에 대한 평가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0.4
별로 그렇지 않다	28	11.4
보통이다	94	38.2
그렇다	98	39.8
매우 그렇다	25	10.2
합계	246	100.0
평균(표준편차)	3.48(0.84)	

다른 단체들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응할 용의의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87.0%로 부정적인 응답 0.8%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이를 5점 척도로 보면 4.09점으로 업무와 관련해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응할 용의의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다른 단체들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응할 용의의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별로 그렇지 않다	2	0.8
보통이다	30	12.2
그렇다	159	64.6
매우 그렇다	55	22.4
합계	246	100.0
평균(표준편차)	4.09(0.61)	

업무수행과 관련해 접촉하게 되는 다른 유관기관의 관리자들에 대해서 친밀하게 느끼는 정도에서 는 긍정적인 응답이 61.3%, 부정적인 응답이 8.1%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이 전혀 없어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5점 척도로 살펴보면 3.62점으로 다른 유관기관의 관리자들에게 친밀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업무수행과 관련해 접촉하게 되는 다른 유관기관의 관리자들에 대해서 친밀하게 느끼는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별로 그렇지 않다	20	8.1
보통이다	75	30.5
그렇다	129	52.4
매우 그렇다	22	8.9
합계	246	100
평균(표준편차)	3.62(0.76)	

업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단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그렇다(43.1%)’, ‘보통이다(39.8%)’, ‘별로 그렇지 않다(12.2%)’, ‘매우 그렇다(4.1%)’, ‘전혀 그렇지 않다(0.8%)’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5점 척도의 점수는 3.37점으로 지식이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 경향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16〉 업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단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	0.8
별로 그렇지 않다	30	12.2
보통이다	98	39.8
그렇다	1406	43.1
매우 그렇다	10	4.1
합계	246	100.0
평균(표준편차)	3.37(0.78)	

운영하는 복지기관(시설)의 전체적인 업무성과에 관련해 다른 단체들과 업무 연계활동은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9.8%)’ 와 ‘별로 그렇지 않다(29.8%)’ 로서 부정적인 견해가 39.6%로 긍정적인 견해 16.7%(‘그렇다’ (15.9%)와 ‘매우 그렇다’ (0.8%)를 합한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문항의 응답별 점수를 5점으로 환산 한 점수는 2.58점으로 나타나 복지기관의 업무성과가 다른 단체들과의 업무 연계활동과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7〉 운영하는 복지기관(시설)의 전체적인 업무성과에 관련해 다른 단체들과 업무 연계활동은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지에 대한 평가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4	9.8
별로 그렇지 않다	73	29.8
보통이다	107	43.7
그렇다	39	15.9
매우 그렇다	2	0.8
합계	245	100.0
평균(표준편차)	2.58(0.89)	

③ 협의체 현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실정에 대해서는 54.2%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 (12.2%), ‘잘 운영되고 있다’ (42.0%)). 게다가 부정적인 견해는 7.3%에 불과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한 평가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문항의 응답별 점수를 5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3.59점으로 나타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평가는 좋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실정에 대한 평가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별로 그렇지 않다	18	7.3
보통이다	94	38.4
그렇다	103	42.0
매우 그렇다	30	12.2
합계	245	100.0
평균(표준편차)	3.59(0.80)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간위원 위촉과정에 대해서는 54.5%가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그렇다’ (17.6%), ‘그렇다’ (36.9%)). 게다가 부정적인 견해는 9.8%에 불과해서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문항의 응답별 점수를 5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3.62점으로 나타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간위원 위촉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간위원 위촉과정에 대해 신뢰의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별로 그렇지 않다	24	9.8
보통이다	87	35.7
그렇다	90	36.9
매우 그렇다	43	17.6
합계	244	100.0
평균(표준편차)	3.62(0.88)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보건, 복지, 시민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지에 대해서는 52.0%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그렇다’ 5.7%, ‘그렇다’ 46.3%). 부정적인 견해는 15.1%로 나타났다(‘전혀 그렇지 않다’ 1.2%, ‘별로 그렇지 않다’ 13.9%)로 나타났다. 또한 이 문항의 응답별 점수를 5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3.41점으로 나타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의 대표성에 대한 평가는 좋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보건, 복지, 시민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지에 대한 평가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	1.2
별로 그렇지 않다	34	13.9
보통이다	80	32.8
그렇다	113	46.3
매우 그렇다	14	5.7
합계	244	100.0
평균(표준편차)	3.41(0.84)	

시군의 공무원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나 활동에 얼마나 많이 참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7.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매우 그렇다’ 7.3%, ‘그렇다’ 40.0%). 부정적인 견해는 15.1%로 나타났다(‘전혀 그렇지 않다’ 3.7%, 별로 그렇지 않다 16.3%)로 나타났다. 또한 이 문항의 응답별 점수를 5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3.31점으로 나타나 시군의 공무원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활동 빈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시군의 공무원들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정도(많을수록 그렇다에 응답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9	3.7
별로 그렇지 않다	40	16.3
보통이다	80	32.7
그렇다	98	40.0
매우 그렇다	18	7.3
합계	245	100.0
평균(표준편차)	3.31(0.96)	

자신이 속한 시군의 대표협의체 활동에 대해서 41.8%가 활발하다고 응답하였다(‘매우 그렇다’ (5.3%), ‘그렇다’ (36.5%)). 부정적인 견해는 18.4%로 나타났다(‘전혀 그렇지 않다’ (3.3%), 별로 그렇지 않다(18.4%)로 나타났다. 또한 이 문항의 응답별 점수를 5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3.22점으로 나타나 시군의 대표협의체 활동이 활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자신이 속한 시군의 대표협의체 활동은 활발한지에 대한 평가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8	3.3
별로 그렇지 않다	45	18.4
보통이다	89	36.5
그렇다	89	36.5
매우 그렇다	13	5.3
합계	244	100.0
평균(표준편차)	3.22(0.92)	

자신이 속한 시군의 실무협의체 활동에 대해서 47.0%가 활발하다고 응답하였다(‘매우 그렇다’ (9.0%), ‘그렇다’ (38.0%)). 부정적인 견해는 13.0%로 나타났다(‘전혀 그렇지 않다’ (1.2%), 별로 그렇지 않다(11.8%))로 나타났다. 또한 이 문항의 응답별 점수를 5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3.42점으로 나타나 시군의 실무협의회 활동이 활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자신이 속한 시군의 실무협의체 활동은 활발한지에 대한 평가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	1.2
별로 그렇지 않다	29	11.8
보통이다	98	40.0
그렇다	93	38.0
매우 그렇다	22	9.0
합계	245	100.0
평균(표준편차)	3.42(0.86)	

자신이 속한 시군의 실무분과에 대해서 45.4%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매우 그렇다’ (15.0%), ‘그렇다’ (39.0%)). 부정적인 견해는 9.3%로 나타났다(‘전혀 그렇지 않다’ (0.4%), 별로 그렇지 않다(8.9%)로 나타났다. 또한 이 문항의 응답별 점수를 5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3.60점으로 나타나 시군의 실무분과 활동이 활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자신이 속한 시군의 실무분과의 활성화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0.4
별로 그렇지 않다	22	8.9
보통이다	89	36.2
그렇다	97	39.4
매우 그렇다	37	15.0
합계	246	100.0
평균(표준편차)	3.60(0.87)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의결 처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에 대해서 45.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매우 그렇다’ (2.9%), ‘그렇다’ (32.1%)). 부정적인 견해는 19.6%로 나타났다(‘전혀 그렇지 않다’ (2.0%), 별로 그렇지 않다(17.6%))로 나타났다. 또한 이 문항의 응답별 점수를 5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3.17점으로 나타났다.

〈표 2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의결 처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	2.0
별로 그렇지 않다	43	17.6
보통이다	109	44.5
그렇다	81	33.1
매우 그렇다	7	2.9
합계	245	100.0
평균(표준편차)	3.17(0.8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역할에 비해 선발기준이 적절한 정도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가 90.5%로 거의 대부분이 선발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역할에 비해 선발기준이 적절한 정도

구분	빈도	비율
그렇지 않다	23	9.5
그렇다	219	90.5
합계	242	100.0

협의체회의 안건은 주로 관에서 준비하며, 관의 의도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55.1%)’와 ‘매우 그렇다(4.1%)’의 긍정응답이 59.2%이고, ‘별로 그렇지 않다(37.0%)’와 ‘전혀 그렇지 않다(3.7%)’의 부정응답이 40.7%로 다소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4점 척도로 환산하면 2.60으로 중앙인 2.5보다 상회하여 관에서 준비하고, 관의 의도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표 27〉 협의체회의 안건은 주로 관에서 준비하며, 관의 의도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9	3.7
별로 그렇지 않다	90	37.0
그렇다	134	55.1
매우 그렇다	10	4.1
합계	243	100.0
평균(표준편차)	2.60(0.63)	

시군은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해를 위한 교육, 워크숍이 실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77.3%로 나타나 교육과 워크숍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이해를 위해 실시된다고 할 수 있다.

〈표 28〉 시군은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해를 위한 교육, 워크숍이 실시되는지 여부

구분	빈도	비율
그렇지 않다	55	22.7
그렇다	187	77.3
합계	242	100.0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의 참여에 대해서 46.3%가 활발하다고 응답하였다(‘매우 그렇다’ 7.7%, ‘그렇다’ 38.6%). 부정적인 견해는 13.0%로 나타났다(‘전혀 그렇지 않다’ 0.8%, ‘별로 그렇지 않다’ 12.2%)로 나타났다. 또한 이 문항의 응답별 점수를 5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3.40점으로 나타나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의 참여가 활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의 참여가 활발한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	0.8
별로 그렇지 않다	30	12.2
보통이다	100	40.7
그렇다	95	38.6
매우 그렇다	19	7.7
합계	246	100.0
평균(표준편차)	3.40(0.8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는 갈등과 중복의 소지에 대해서 61.1%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전혀 그렇지 않다’ 7.4%, ‘별로 그렇지 않다’ 53.7%). 한편 긍정적인 견해는 38.9%로 나타났다(‘매우 그렇다’ 4.5%, 그렇다 34.4%)로 나타났다. 또한 이 문항의 응답별 점수를 4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2.36점으로 나타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는 갈등과 중복의 소지가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는 갈등과 중복의 소지가 있는지 평가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8	7.4
별로 그렇지 않다	131	53.7
그렇다	84	34.4
매우 그렇다	11	4.5
합계	244	100.0
평균(표준편차)	2.36(0.69)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 운영목표와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50.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그렇다’ 3.7%, ‘그렇

다’ (46.7%). 부정적인 견해는 14.2%로 나타났다(‘전혀 그렇지 않다’ (0.4%), 별로 그렇지 않다 (13.8%)로 나타났다. 또한 이 문항의 응답별 점수를 5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3.39점으로 나타나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협의체 운영목표와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 운영목표와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0.4
별로 그렇지 않다	34	13.8
보통이다	87	35.4
그렇다	115	46.7
매우 그렇다	9	3.7
합계	246	100.0
평균(표준편차)	3.39(0.7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3층 구조는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부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는 응답이 59.1%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0.9%로 3층 구조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3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3층 구조는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부

구분	빈도	비율
그렇지 않다	99	40.9
그렇다	143	59.1
합계	242	100.0

상근간사를 중심으로 시군청과 분리된 별도의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그렇다’가 77.0%이고, ‘그렇지 않다’가 23.0%로 시군청과 분리된 별도의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 상근간사를 중심으로 시군청과 분리된 별도의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부

구분	빈도	비율
그렇지 않다	56	23.0
그렇다	187	77.0
합계	243	100.0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청에 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여부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이 46.3%로 ‘그렇지 않다’의 53.7%로 나타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는 시군청과 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청에 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여부

구분	빈도	비율
그렇지 않다	131	53.7
그렇다	113	46.3
합계	244	100.0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근간사의 전문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96.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매우 그렇다’ 41.1%, ‘그렇다’ 55.3%). 부정적인 견해는 3.7%밖에 되지 않아서 응답자 절대 다수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근간사의 전문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근간사의 전문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별로 그렇지 않다	9	3.7
그렇다	136	55.3
매우 그렇다	101	41.1
합계	246	100.0
평균(표준편차)		3.37(0.56)

도청 또는 시군청의 예산편성 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91.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매우 그렇다’ 33.7%, ‘그렇다’ 57.3%). 부정적인 견해는 8.9%밖에 되지 않아서 응답자 절대 다수가 도청 또는 시군청의 예산편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도청 또는 시군청의 예산편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재정적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별로 그렇지 않다	22	8.9
그렇다	141	57.3
매우 그렇다	83	33.7
합계	246	100.0
평균(표준편차)	3.25(0.61)	

실무분과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회의참석에 대하여 소속기관 평가 시 가점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69.0%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그렇다’ 20.8%, ‘그렇다’ 48.2%). 부정적인 견해는 31.0%로 나타났다(‘전혀 그렇지 않다’ 5.3%), ‘별로 그렇지 않다’(25.7%)로 나타났다. 또한 이 문항의 응답별 점수를 4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2.84점으로 나타나 실무분과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회의참석에 대하여 소속기관 평가 시 가점을 주는 방안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실무분과의 회의참석율을 높이기 위해 회의참석에 대하여 소속기관 평가시 가점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고 생각하는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3	5.3
별로 그렇지 않다	63	25.7
그렇다	118	48.2
매우 그렇다	51	20.8
합계	245	100.0
평균(표준편차)	2.84(0.81)	

상근간사, 담당공무원, 위원장, 분과장에 대한 도차원의 협의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89.0%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그렇다’(19.2%), ‘그렇다’(69.8%)). 부정적인 견해는 11.0%로 나타났다(‘전혀 그렇지 않다’(0.8%), 별로 그렇지 않다(10.2%)로 나타났다. 또한 이 문항의 응답별 점수를 4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3.07점으로 나타나 상근간사, 담당공무원, 위원장, 분과장에 대한 도차원의 협의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상근간사, 담당공무원, 위원장, 분과장에 대한 도차원의 협의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	0.8
별로 그렇지 않다	25	10.2
그렇다	171	69.8
매우 그렇다	47	19.2
합계	245	100.0
평균(표준편차)	3.07(0.57)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다면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참여하는 민간 기관의 인식 및 의지의 부족’이 32.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시군의 인식 및 의지의 부족(23.4%)’, ‘제도적 기반의 불비(16.9%)’, ‘물적 운영기반의 미흡(11.7%)’, ‘인적 역량의 부족(9.1%)’, ‘기타(3.0%)⁵⁾’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관과 민의 서로에 대한 불신과 참여했을 때의 이익이 있느냐하는 부분’, ‘민관의 관심과 소통 부족’, ‘정부와 민간 그리고 시민이 모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함. 하지만 주로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 만큼 관(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음.’, ‘민관 네트워크필요성 인식 부재’, ‘업무량 대비 인력확충 문제 해결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음

〈표 39〉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다면 가장 큰 이유

구분	빈도	비율
시군의 인식 및 의지의 부족	61	26.4
참여하는 민간기관의 인식 및 의지의 부족	76	32.9
제도적 기반의 불비	39	16.9
인적 역량의 부족	21	9.1
물적 운영기반의 미흡	27	11.7
기타	7	3.0
합계	231	100.0

(2) 지역특성별 차이분석

① 지역복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역복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자료는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명목척도로 측정한 자료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의 경우 유의한 경우 DUNCAN의 방법으로 사후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표 40〉에는 ‘지역사회복지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교류 협력의 정도에 대한 평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립이 복지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지역별, 특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산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모두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아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각의 지역복지에 대한 항목은 지역별 특성(도시, 농촌, 도농)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의한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DUNCAN⁶⁾의 방법으로 사후분석을 수행하였다. ‘지역사회복지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립이 복지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도시가 가장 높고, 도농이 다음이고, 농촌이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6) DUNCAN의 방법은 표에서 a, b, c로 나타냈으며, a부터 시작하여 크면 b, c로 표현하였다. 같은 알파벳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알파벳이 사용되면 통계적으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났다.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교류협력의 정도에 대한 평가’ 역시 도시, 도농, 농촌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도시가 가장 높고, 도농과 농촌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지역특성별 지역복지의 분산분석

항목	도시	도농	농촌	F-값 (유의확률)
지역 사회복지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3.78 (0.72) c	3.38 (0.68) b	3.08 (0.72) a	20.17 (0.000)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교류협력의 정도에 대한 평가	3.48 (0.76) b	3.21 (0.67) a	3.12 (0.71) a	5.29 (0.00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립이 복지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도	3.96 (0.79) c	3.65 (0.85) b	3.33 (0.90) a	11.43 (0.000)

〈표 41〉 지역특성별 지역복지의 교차분석

항목	도시	농촌	도농	χ^2 값 (유의확률)
지역 사회복지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기반 정비	17	34	23
	지역복지재정의 확충	17	16	5
	지역주민의 관심 및 참여확대	10	14	15
	사회복지전문인력의 확충	13	13	9
	사회복지기관간 민관의 협력수준	9	18	13
	복지수요자의 시군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	8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수준	1	3	2
	시군의 자체사업의 비율	1	0	1
	기타	0	0	1
사회 복지 기관 및 시설간의 교류협력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	기관 및 시설 간 경쟁의식	3	16	10
	기관 및 상이한 사업내용 및 운영여건	21	23	19
	교류협력에 대한 낮은 기대감	4	25	19
	일상적 업무의 과종합	32	25	10
	책임있는 중심기관 선정의 어려움	4	8	7

지역특성별 지역복지에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명목자료에 대한 분석을 교차분석을 하여 <표 41>에 제시하였다. ‘지역사회복지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의확률이 0.206으로 유의수준 0.1에서도 유의하지 않아 지역특성별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으며,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간의 교류협력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항목에서는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아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간의 교류협력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의 지역특성별 차이를 보기 위해 교차표를 살펴보면 도시는 ‘일상적 업무의 과중함’이라는 응답이 32(50.0%)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간의 교류협력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에서는 ‘교류협력에 대한 낮은 기대감’과 ‘일상적 업무의 과중함’의 응답이 25(25.0%)로 교류협력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도농에서는 ‘기관 및 상이한 사업내용 및 운영여건’과 ‘교류협력에 대한 낮은 기대감’이라는 응답이 19(28.8%)로 교류협력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네트워킹 현황

지역특성별 네트워킹 현황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출범이후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소통 및 연계·조정이 원활해졌는지에 대한 평가’ 만이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게 나타나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항목들은 모두 유의확률이 0.1보다도 커 지역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지역별로 어느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퍼센테이지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표 42〉 지역특성별 네트워킹 현황의 분산분석

항목	도시	도농	농촌	F-값 (유의확률)
업무이외 개인적으로 다른 복지기관(단체)의 관리자들을 많이 아는 정도	3.26 (0.96) a	3.17 (0.76) a	3.18 (0.93) a	0.23 (0.794)
복지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다른 복지기관(단체)들과 공유하는 정도	3.10 (0.97) a	2.90 (0.80) a	2.92 (0.90) a	1.16 (0.316)
업무수행과 관련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외부 단체와의 공청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정도	3.62 (0.84) a	3.66 (0.79) a	3.42 (0.94) a	2.02 (0.13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출범이후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소통 및 연계·조정이 원활해졌는지에 대한 평가	3.77 (0.84) b	3.52 (0.86) b	3.26 (0.77) a	8.06 (0.000)
다른 단체들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응할 용의의 정도	4.26 (0.59) a	4.10 (0.48) a	3.96 (0.68) a	5.20 (0.006)
업무수행과 관련해 접촉하게 되는 다른 유관 기관의 관리자들에 대해서 친밀하게 느끼는 정도	3.59 (0.83) a	3.75 (0.65) a	3.56 (0.78) a	1.39 (0.251)
업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 한 지식이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단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도	3.45 (0.87) a	3.30 (0.62) a	3.38 (0.82) a	0.68 (0.510)
운영하는 복지기관(시설)의 전체적인 업무성과에 관련해 다른 단체들과 업무 연계활동은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지에 대한 평가	2.58 (0.88) a	2.63 (0.88) a	2.78 (0.89) a	1.22 (0.296)

네트워킹 현황에서 유일하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출범이후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소통 및 연계·조정이 원활해졌는지에 대한 평가’에 대한 DUNCAN의 사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농촌이 가장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와 도농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와 도농에 비하여 농촌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출범이후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소통 및 연계·조정이 원활해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협의체 현황

지역특성별 협의체 현황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자료는 분산분석을, 명목척도로 측정한 자료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3〉에서 제시한 것처럼 지역특성별 협의체 현황의 분산분석결과 유의하게 나타나 것은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실정에 대한 평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간위원 위촉과정에 대해 신뢰의 정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보건, 복지, 시민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지에 대한 평가’, ‘시군의 공무원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나 활동에 많이 참석하는 정도’, ‘자신이 속한 시군의 대표협의체 활동은 활발한지에 대한 평가’, ‘자신이 속한 시군의 실무협의체 활동은 활발한지에 대한 평가’, ‘자신이 속한 시군의 실무분과의 활성화 정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의결 처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의 참여는 활발한 정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는 갈등과 중복의 소지가 있는지 평가’,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 운영목표와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실무분과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회의참석에 대하여 소속기관 평가 시 가점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고 생각하는 정도’이다. 즉, 도시, 농촌, 도농들 중 적어도 하나는 다르게 나타난 협의체 현황의 항목들이다.

지역특성별 협의체 현황의 분산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협의체회의 안건은 주로 관에서 준비하며, 관의 의도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정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근간사의 전문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도청 또는 시군청의 예산편성 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상근간사, 담당공무원, 위원장, 분과장에 대한 도차원의 협의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인 4개의 문항이다. 즉, 제시한 4개의 문항에서는 도시, 도농, 농촌 어느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특성별 협의체 현황에 대한 질문 16개 중 12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후분석으로 DUNCAN 방법을 적용하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실정에 대한 평가’는 도시, 도농, 농촌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간위원 위촉과정에 대해 신뢰의 정도’는 도시와 도농은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농촌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신뢰의 정도가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지역특성별 협의체 현황의 분산분석

항목	도시	도농	농촌	F-값 (유의확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실정에 대한 평가	4.07 (0.70) c	3.61 (0.77) b	3.27 (0.72) a	24.95 (0.000)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간위원 위촉과정에 대해 신뢰의 정도	3.84 (0.85) b	3.83 (0.93) b	3.34 (0.81) a	9.86 (0.00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보건, 복지, 시민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지에 대한 평가	3.67 (0.82) b	3.50 (0.88) b	3.19 (0.79) a	7.52 (0.001)
시군의 공무원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나 활동에 많이 참석하는 정도	3.62 (0.92) b	3.37 (0.99) a,b	3.08 (0.90) a	7.20 (0.001)
자신이 속한 시군의 대표협의체 활동은 활발한지에 대한 평가	3.74 (0.86) b	3.04 (0.90) a	3.01 (0.85) a	16.60 (0.000)
자신이 속한 시군의 실무협의체 활동은 활발한지에 대한 평가	3.88 (0.78) b	3.38 (0.82) a	3.13 (0.81) a	18.31 (0.000)
자신이 속한 시군의 실무분과의 활성화 정도	3.93 (0.83) b	3.61 (0.93) a	3.38 (0.77) a	9.02 (0.000)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의결 처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	3.57 (0.63) b	3.15 (0.80) a	2.92 (0.85) a	14.06 (0.000)
협의체회의 안건은 주로 관에서 준비하며, 관의 의도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정도	2.59 (0.69) a	2.67 (0.50) a	2.55 (0.67) a	0.80 (0.451)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의 참여는 활발한 정도	3.71 (0.86) b	3.38 (0.88) a	3.22 (0.72) a	7.81 (0.00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는 갈등과 충복의 소지가 있는지 평가	2.32 (0.72) b	2.19 (0.52) a,b	2.50 (0.73) a	4.63 (0.011)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 운영 목표와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3.75 (0.65) c	3.41 (0.82) b	3.15 (0.75) a	13.63 (0.000)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근간사의 전문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3.36 (0.51) a	3.35 (0.56) a	3.40 (0.58) a	0.15 (0.857)
도청 또는 시군청의 예산편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3.30 (0.63) a	3.30 (0.60) a	3.18 (0.60) a	1.20 (0.302)
실무분과의 회의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회의참석에 대하여 소속기관 평가시 가점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고 생각하는 정도	2.53 (0.84) b	3.01 (0.77) b	2.93 (0.77) a	7.75 (0.001)
상근간사, 담당공무원, 위원장, 분과장에 대한 도자원의 협의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3.04 (0.58) a	3.06 (0.61) a	3.10 (0.53) a	0.27 (0.76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보건, 복지, 시민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도 도시와 도농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은 다른 지역보다 유의하게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의 공무원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나 활동에 많이 참석하는 정도’에서는 도시와 도농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도농과 농촌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는 농촌보다 시군의 공무원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나 활동에 많이 참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속한 시군의 대표협의체 활동은 활발한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도시가 가장 활발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농과 농촌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속한 시군의 실무협의체 활동은 활발한지에 대한 평가’에서도 역시 도농과 농촌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가 다른 지역들보다 실무협의체 활동이 활발하다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속한 시군의 실무분과의 활성화 정도’에서도 도시가 다른 지역들보다 실무분과의 활성화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의결 처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에서도 도시가 다른 지역들보다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농과 농촌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의 참여는 활발한 정도’는 도시가 다른 지역보다 민간의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는 갈등과 중복의 소지가 있는지 평가’는 도시와 도농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도농과 농촌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시는 농촌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는 갈등과 중복의 소지가 있는지 평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 운영목표와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 도시, 도농, 농촌의 순으로 지역별로 뚜렷하게 평가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였다. ‘실무분과의 회의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회의참석에 대하여 소속기관 평가 시 가점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서는 도시와 도농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은 다른 지역보다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 현황의 문항 중 명목변수들은 교차분석을 통하여 지역별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였는데 이는 <표 44>에 제시하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3종 구조는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상근간사를 중심으로 시군청과 분리된 별도의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청에 같이 있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역할에 비해 선발기준이 적절한 정도' 와 '시군은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해를 위한 교육, 워크숍이 실시되는지 여부'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면 가장 큰 이유' 에서는 지역특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 질문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3층 구조는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부' 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도시는 40(58.8%), 농촌은 77(74.0%), 도농은 26(37.1%)로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근간사를 중심으로 시군청과 분리된 별도의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부' 에서 그렇다는 응답의 비율을 살펴보면 도시는 47(69.1%), 농촌은 89(84.8%), 도농은 51(72.9%)로 응답하여 지역별로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청에 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여부' 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도시는 29(42.6%), 농촌은 38(35.8%), 도농은 46(65.7%)로 나타나 지역별로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4〉 지역특성별 협의체 현황의 교차분석

항목		도시	농촌	도농	χ^2 값 (유의확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역할에 비해 선발기준이 적절한 정도	그렇지 않다	9	10	4	2.371 (0.306)
	그렇다	58	95	66	
시군은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해를 위한 교육, 워크숍이 실시되는지 여부	그렇지 않다	10	26	19	3.347 (0.188)
	그렇다	57	79	5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 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3종 구조는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부	그렇지 않다	28	27	44	23.564 (0.000)
	그렇다	40	77	26	
상근간사를 중심으로 시군청과 분리된 별도의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부	그렇지 않다	21	16	19	6.627 (0.036)
	그렇다	47	89	51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청에 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여부	그렇지 않다	39	68	24	15.633 (0.000)
	그렇다	29	38	46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면 가장 큰 이유	시군의 인식 및 의지의 부족	12	32	17	5.956 (0.536)
	참여하는 민간기관의 인식 및 의지의 부족	17	35	24	
	제도적 기반의 불비	14	15	10	
	인적 역량의 부족	6	11	4	
	물적 운영기반의 미흡	8	11	8	
	기타	2	1	4	

3. 설문조사 결론

(1) 일반적인 결론

설문조사의 일반적인 결론을 지역복지, 네트워킹현황, 협의체현황으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① 지역복지

지역복지가 잘 되고 있는지의 질문에 ‘보통이다’의 응답이 49.2%로 가장 빈도가 높았지만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이 41.5%로 잘못되고 있다고 응답한 9.3%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일선현장에서 지역사회복지는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복지인프라 구축’ 이 일순위로 응답되어 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및 복지시설 확충 등이 긴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교류협력에 대하여 긍정적 응답이 33.0%로 부정적인 응답(11.4%)보다 높었지만 일상적 업무의 과중함이 교류협력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파악된 만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업무량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발족이 사회복지업무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는 부정적인 의견이 9.8%에 불과하여 2005년 천안시를 필두로 15개 시군에서 설립된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유관기관의 복지업무 수립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네트워킹 현황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이다. 설문자들이 업무이외에 개인적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관리자들에 대한 인지도(긍정적인 응답 37.4%對부정적인 응답 21.5%)가 비교적 높았고 친밀도 (긍정적인 응답 61.3%)역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과 업무에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긍정적인 응답 87.0%)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업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단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응답한 협의체 위원(43.1%)도 많았다. 협의체 출범이후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소통 및 복지서비스 연계·조정도 활성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수요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는 부정적인 응답(32.5%)이 긍정적인 응답(28.5%)보다 높아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종사자들간의 비공식적 인지도, 친밀감, 적극적인 업무공조의 사가 공식적인 업무연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반 조건들(비공식적 인지도, 친밀감, 적극적인 업무공조 의사)과 비교하여 정작 다른 단체들과의 업무 연계활동의 관련성은 낮아서(부정적인 응답 39.6%對 긍정적인 응답 16.7%) 현재 유관기관간 네트워킹이 그다지 활발하지 못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협의체 구성원들은 높은 비공시적 인지도, 친밀도, 적극적 협력의사를 일상의 복지업무에 반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의 열매는 유관기관간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가시화 될 것이다.

③ 협의체 현황

협의체 현황은 8가지 세부적인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전반적인 협의체 운영실정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협의체 발전의 저해요인으로는 ‘참여하는 민간기관의 인식 및 의지의 ’ 부족(32.9%)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 향후 협의체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참여를 얼마나 유도해 낼 수 있는지가 관건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기관에 평가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긍정적 응답이 많아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포괄적으로 민간참여는 지역사회의 인적자원 개발여부와 연관된 문제이고 성북구의 사례가 모범이 될 수 있다.

둘째, 협의체 민간위원 위촉과정의 신뢰여부, 위원들의 대표성 여부, 협의체내에서 민간의 활발한 참여여부 등, 협의체 위원들에 관한 사항이다. 협의체의 민간위원 위촉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 위원들의 복지 분야의 대표성에 대한 평가 역시 좋은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협의체 민간위원들의 활동도 긍정적 응답이 46.3%로 활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군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활동역시 활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의결 처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에 대해서도 45.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 협의체 내부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담당공무원의 협의체 회의 참석여부 및 관의 협의체 회의 주도로 두 질문 모두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협의체가 민·관 협치기구이지만 관의 지원과 담당공무원의 적극적 참여가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필수조건임을 고려할 때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응답자들은 상근간사의 선발기준에 대한 신뢰하였지만 간사들의 역량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압도적이어서 간사들의 역량이 곧 협의체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험 있고 역량 있는 간사의 선발과 그에 걸맞은 합당한 처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여섯째, 협의체 위원들은 시·군청과 분리된 협의체사무국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장기적으로 모든 15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독립된 사무국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곱째, 협의체의 3종 구조의 통일은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많아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부분과를 아우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의체 개선방안으로는 예산지원의 확대, 복지기관이 협의체회의참석에 대하여 평가시 가점을 주는 방안, 간사, 담당공무원, 위원장, 분과장을 망라한 교육 등에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2) 지역특성별 차이분석

① 지역복지

지역복지에 대한 항목은 지역별 특성(도시, 농촌, 도농)에 따라 차이가 났다. ‘지역사회복지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립이 복지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도시가 가장 높고, 도농이 다음이고, 농촌이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교류협력의 정도에 대한 평가’, 역시 도시, 도농, 농촌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도시가 가장 높고, 도농과 농촌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네트워킹 현황

지역특성별 네트워킹 현황은 도시, 농촌, 도농에 따라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출범이후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소통 및 연계·조정이 원활해졌는지에 대한 평가’ 만이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게 나타나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7개 항목들은 모두 유의

확률이 0.1보다도 커 지역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지역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③ 협의체 현황

지역특성별 협의체 현황에 대한 질문 16개 중 12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 도농, 농촌의 지역에 따라 협의체 현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특성별 협의체 현황의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협의체회의 안전은 주로 관에서 준비하며, 관의 의도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정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근간사의 전문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도청 또는 시군청의 예산편성 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상근간사, 담당공무원, 위원장, 분과장에 대한 도차원의 협의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인 4개의 문항이다. 즉, 제시한 4개의 문항에서 는 도시, 도농, 농촌 어느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연구 : 남양주, 연기군, 성북구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타 시도 우수지역 사례로는 경기도 남양주시, 충청남도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⁸⁾, 서울시 성북구를 선정하였다. 연기군은 부천시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2011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남양주시 또한 전국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강사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거론된 지역으로 2014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상을 수상 하는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벤치마킹 지역으로 부상되는 지역이다. 서울의 성북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동 단위로 조직하고 있다. 성북구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속적으로 복지수요자를 발굴하고 여기에 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관과 개인을 연결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구성의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성북구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선정근거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 주관한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사회복

8) 충청남도 연기군은 2012년 6월 30일 폐지되고,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었다.

지협의체 모니터링을 통해 최고 점수를 받아 으뜸 협의체로 평가 받았다.⁹⁾

모니터링 대상에는 대표·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현황, 실무분과의 구성 및 사업 현황, 사회복지계획수립 실태, 사례관리사업 현황, 운영여건, 자체활동 등이 포함되었다. 남양주협의체는 실무분과활동, 지자체지원, 자체활동, 사례관리 분야에서 만점을 받아 총 75점에 71점으로 자원이 보통인 ‘나’ 유형 (복지관이 2개 이상 5개 이하 규모)의 14개 협의체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경기도 주관 으뜸 협의체로 선정된 것 이외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수사례로 전국에서 벤치마킹의 모델이 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뿐만 아니라 복지공급시스템 측면에서 희망케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민간 협력의 상징으로 지난 몇 년간 효과성과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다.

2) 연혁

남양주시는 얼마 전까지 복지에 관하여 ‘사각지대’의 전형을 보여준 도시이다. 도농복합도시의 일반적인 문제점 즉, 재정기반 약화와 기반시설 부족, 산과 산 사이에 조성된 다핵도시로 인해 빚어지는 이동성과 접근성 부족, 그 와중에 경제력이 부족한 인구의 급작스런 유입, 도시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에서 필요로 하는 지도력의 부재와 더불어 지역 토착세력의 강한 영향력 등의 특징을 보여주는 21세기의 20세기 도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서울에서 유입된 젊은 층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살아야만 하는 남양주’, ‘몸은 여기 살아도 마음은 저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남양주의 현실이었다(2009 u-쾌한 도전을 운영백서).

게다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재정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다보니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이 남양주의 현실이었다. 이것이 남양주시의 복지 인프라가 열악할 수밖에 없는 주요 인이었다. 그 결과 2007년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부천 등 다른 경기 지역과 비교해볼 때 출범한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1기의 출범은 빨랐다고 할 수 없다.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근거하여, 2005년 3월 준비위원회를 구

9) 경기도의 모니터링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상으로 2013년 8-9월 중 2개월간 모니터링이 진행되었다(경기일보, 2013.10.11).

성하고 10월에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제정, 12월에 대표협의체 구성, 2006년에 실무협의체 구성 및 실무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일찍 출범시킨 서울과 경기도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에 비해 남양주시는 조금은 늦은 편이었다(2009 u-쾌한 도전을 운영백서).

2007년 8월 27일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민 8대 서비스를 통합지원 할 계획 아래 민·관 협의체인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창립하고 협의체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해 왔다.

‘U’는 유비쿼터스 (ubiquitous)의 약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정보기술 혁명을 통해 나온 유비쿼터스의 개념에다가 민관 협의체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한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하자는 뜻에서 나온 합성어이다.

‘U-쾌한 남양주’는 주민생활 8대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진 만큼 사람과 사람의 촘촘한 네트워크, 민과 관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이루어 남양주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U-쾌한 남양주’는 지역 내 기술적 인적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고 모든 분야의 주민생활 8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명품도시 남양주를 건설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는 의미이다(2009 u-쾌한 도전을 운영백서).

3) 운영실태

남양주시가 추구하는 따듯한 선진복지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그 동안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민민협의회(실무협의체), 민민협력단(실무분과)을 구성하여 기능별 회의, 분과별 워크숍, 실무자 연수, 평가토론회 등 각종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2007년에는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를 남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공동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복지욕구는 많으나 복지서비스 제공에 역량부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 1기 사회복지 협의체가 출범함으로써 네비게이션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금의 희망케어센타(희망케어 센타는 사례관리 위주로 보건과 복지를 통합하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무한돌봄센터도 희망케어센타의 벤치마킹이며, 희망복지지원단도 이를 모방하여 만들어졌다)가 나올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남양주시 이석우 시장이 ‘명품복지 실현’을 주요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희망케어센터 설치와

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의회가 예산배정에 협력해 줌으로써 남양주시의 복지총량 증가와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되었으며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온도가 많이 상승하였다.

이제 복지에 관한한 남양주는 벤치마킹하러 다니는 지자체가 아니라 벤치마킹하러 오는 지자체가 되었다. 이와 같이 복지에 있어서 변방에 불과하던 남양주시가 타 시군의 부러움을 사는 모범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었던 중심에는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었다.

4) 잘되고 있는 점

첫째, 남양주시의 복지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벤치마킹해야 할 점은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민·관 협력을 기본 틀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실천에 옮김으로써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출범하면서 경기 대 김형모 교수를 주축으로 남양주시 주민을 상대로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시급한 복지욕구가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1기 남양주시 복지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복지계획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남양주시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수용한 계획으로 남양주시만의 독자적인 계획인 것이다.

둘째, 조직구성에 있어서도 관주도의 일반통행이 아니라 쌍방 간의 대화, 즉 민주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협의체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실무분과의 활성화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각 실무분과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단합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실행함으로써 협의체 위원들 간에 연대를 다져나갔다. 또한 출범을 준비하던 초기 남양주시에서는 보육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시설과 복지종사자들은 있었지만 이를 대표할만한 협의회(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협의체에 관심이 있는 지역 내 분야별 몇몇 복지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협의체 구성 관련 업무를 맡은 사회위생과(조직개편으로 훗날 주민생활지원과가 됨)에 개진을 하였다. 실무협의체 구성 역시 대표협의체에서 민과 관의 논의를 통해 구성되었다.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 진행되면서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육체적, 시간적 압박을 받아가면서도 수도 없이 만나 회의와 토론을 반복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복지환경과 복지인프라

조성을 위해 남양주 민간위원들은 주도적으로 관에 의사를 개진하였고 많은 부분을 관철하였다 (2009 u-쾌한 도전을 운영백서).

셋째, 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복지분야에 있어 남양주시의 가장 큰 약점은 자원이 많지 않다는 것이며, 이러한 환경적 특성이 네트워크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냈다. 역설적으로 자원이 없어 뭉치지 않으면 생존 할 수 없는 환경이 남양주의 성공비결이었다. 남양주의 복지종사자들은 그들이 담당해야 할 남양주시의 면적이 넓음에도 주민복지률 제고하기 위한 자원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이에 남양주시 복지 종사자들은 이러한 약점을 주어진 환경으로 치부해버리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수많은 회의와 논의를 가졌으며, 그 결과 부족한 자원들을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다 현행 시장의 복지에 대한 의지와 지원이 합해져서 복지 후진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지역으로 탈바꿈되었다. 이러한 남양주시의 모범 사례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서도 협의체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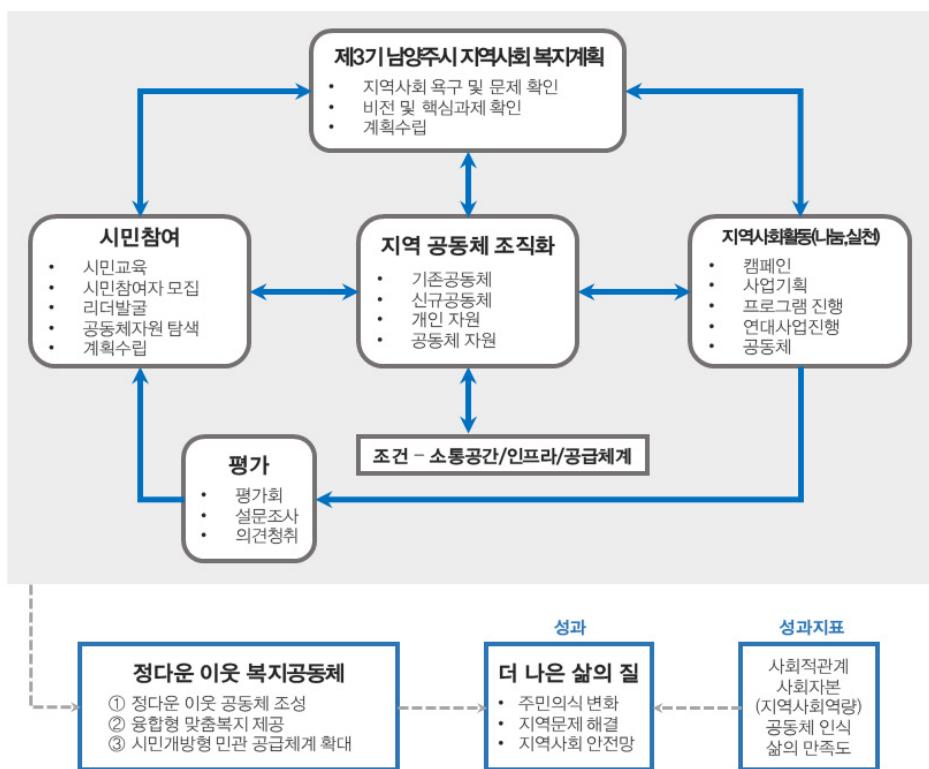
(그림 4) 제3기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

자료 : 제3기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2014

넷째, 남양주시는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에 있어 시민참여를 도모하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최대한 시민의 의사를 계획수립에 반영한 것도 모범의 전형이 되고 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은 <그림 5> 와 같다. 이는 기초단계와 연차별 계획수립 단계로 구분되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 남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정책수립 및 실행과정에 주민의 참여권한을 확대한 점이다.

읍면동 단위에서 복지 네트 중심으로 실행력을 갖춘 기존의 다양한 시민 조직들이 움직이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공식화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기관의 정책변화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공적 자료 열람 및 단순 회의 참관에서부터 공공-민간-시민 협력 내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 결정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마다 일정 비중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하였다(제3기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2014).



(그림 5) 제3기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

자료 : 제3기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2014

5) 충남의 시사점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주는 시사점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에 있다. 공공과 민간사업에서 지역주민의 권한 행사가 공익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지고 지역사회에 대한 더 큰 부여로 보상받고 지역주민의 권한과 책임이 나선형 상승 구조를 실현하도록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방향을 설정한 것이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주는 시사점이다.

충남도 15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 제3기 복지계획을 자체수립한 곳은 아산, 홍성, 천안, 논산 등 몇 곳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만큼 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인력충원도 시급하다. 남양주시처럼 교육, 참여자 모집, 리더발굴 등 체계적인 시민참여 기회를 확보한 것도 충남도에게 주는 시사점이다. 시민참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의체내에 시민참여의 공간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다면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참여하는 민간기관의 인식 및 의지의 부족’(32.9%), 다음으로 ‘시군의 인식 및 의지의 부족(23.4%)’, 임을 고려할 때 시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고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시사점이다.

2. 세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선정근거

세종특별자치시가 되기 전 연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한 ‘2011년 전국기초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평가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복지사업,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 평가부문 30개 지표를 통해 도시유형구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상위 15개 기관을 선정했는데, 지

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추진실적 조사결과와 지역특성, 협의체구조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합산한 결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농어촌부분에서 연기군은 경기 가평군, 당진군, 청양군과 함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금강일보, 2011.11.18).

2) 연혁

연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2년부터 협의체 구성 준비를 해오다가 2005년 12월에 대표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며, 2006년 10월 설립허가를 받았다. 2012년 9월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인해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5년 현재 제 3기 임원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의 사무국장은 세종시 협의체에서 일한지 8년차(2007년도에 부임)이고 지금은 간사 1명을 채용하여 국장(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2008년 초창기에는 협의체 회원들 간에 협의체가 어떤 조직(기구)이고 또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등 협의체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협의체가 그들의 고유 업무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주도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씩 해결되었으며, 협의체 조직과 기능 등이 자리 잡혀 갔다.

3) 운영실태

전반적으로 세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초창기보다는 민간 참여가 많아졌다. 인력 중 간사는 행정업무에 주력하고 국장은 오후에는 외근을 하는 등 지역에서 유관기관 간 관계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구축의 완성도가 높지는 않다.

네트워킹은 사람이 관건이고 1인 기업처럼 모든 것을 해낼 수는 없다. 따라서 일보다는 관계형성에 주력하고 있고 오전에는 행정업무, 오후에는 사람을 만나는 형식으로 대외협력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협의체의 어려움 역시 기관들과의 관계형성이다.

4) 잘되고 있는 점

완성도가 높지는 않지만 연기군이었을 때도 회원들 간 또는 기관들 간 네트워크는 잘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충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자체 수립함으로써 협의체의 정체성 형성과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관계기관 간 및 회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복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회원들 간에 관계형성을 하게 되는데 세종시에서는 복지계획 자체 수립을 통해 회원들 간의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였다. 협의체 사무국장은 ‘협의체는 자체사업도 중요하지만 회원들 간의 관계형성이 더 중요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회원들 간의 관계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협의체는 복지계획의 수립과 연차별 계획수립에 집중하며 자체사업 등, 기타 행사는 우선순위를 낮게 두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실무분과 차원에서 중간관리자들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참여를 독려하여 자연스러운 관계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일찌감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협의체의 정체성과 고유기능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점은 자체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군 단위 협의체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5) 충남의 시사점

충남도에 주는 시사점은 협의체가 자체사업을 실행하기 보다는 협의체의 성과를 한 마디로 개인이나 기관간의 관계 맺기에 주력하였다는 점이다. 충남도 15개 시군 중 관(官)측의 성과요구 때문에 협의체의 본질적인 업무가 아닌 자체사업에 매달리는 시군 (주로 군 단위지역에서) 도 없지 않았다. 가령, 복지박람회같은 행사는 협의체에서 할 필요는 없고 본연의 기능은 복지계획의 수립과 연차별계획 이란 것을 사무국장은 강조하는 것도 세종시가 충남도에게 주는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다른 지역에 주는 시사점은 일찌감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복지부장관상도 수상하면서 동시에 협의체의 정체성과 고유기능을 정립한 점이다.

3. 서울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선정근거

성북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동 단위로 조직하고 있다.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속적으로 복지수요자를 발굴하고 여기에 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관과 개인을 연결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조명래, 2011).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동 단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조직하고 있는 서울시 성북구의 시도는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 연혁

성북구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11년 5월 2일 출범하였다. 출범 당시 협의체는 성북구내 20개 각 동별로 교육기관, 종교기관, 의료기관, 복지관 관계자, 개인사업자 등 20~30명씩으로 구성되었다. 20개 동에서 463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개인사업자가 24%로 가장 많고 종교인 16%, 복지관 계자 9%, 공무원 9%, 교육 관계자 7%, 통장 6%, 봉사단체회원 6%, 의료기관 종사자 5%, 기타 공공과 시민단체 등 회원이 18%로 구성되었다. 2015년 현재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3) 운영실태

성북구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19명, 실무협의체 19명, 실무분과 9개(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여성, 장애인, 사례관리, 사회서비스혁신, 보건의료) 8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성북구는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복지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 시민단체, 통장, 학교,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와 복지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종교인, 기업인, 병원장, 학원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성북구는 구청의 복지인력을 가능한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동사무소에서 일반 행정을 함께 담당했던 복지행정담당자는 복지행정만 전담하도록 업무를 재배치하여 복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아시아경제, 2011.6.14).

성북구는 동 차원의 복지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면

서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년마다 수립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큰 틀을 짤 때도 동 단위의 복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북구의 주요 추진실적에는 지역복지 네트워크 활성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빈곤층 발굴 보호, 주민참여 거버넌스 강화 등이 있다.

4) 잘되고 있는 점

성북구는 동지역복지협의체를 통한 사례발굴이나 복지인력의 현장 배치가 현재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한계 속에서도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명래, 2011). 이러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풀뿌리화’는 성북구의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성북구는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역공동체의 형성,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과 마을 만들기 사업의 연계, 동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라는 4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성북구는 4가지 과제를 통해 깊주림, 고독, 자살이 없고 새로운 가족과 아름다운 돌봄이 있는 성북형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2013년 5월 서울시 최초로 관내 모든 동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성북구는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주민들의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동(洞)단위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또한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협의체를 만든 것이었다.

5) 충남의 시사점

서울 성북구가 충남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보여줄 수 있는 시사점은 전달체계 개선 노력, 즉 가장 하위단위의 행정기관인 동 단위로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점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간자원의 발굴 및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성북구의 동 단위로의 협의체 구성은 그 동안 발굴하지 못하고 있던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동 협의체 조직을 사회복지기관, 시민단체, 통장, 학교,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종교인, 기업인, 병원장, 학원장 등 지역 내 다양한 민간인까지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전달체계를 개

선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복지재단 설립 등으로 충남도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하려는 충남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시장상인, 학원장, 음식점주 등의 기부와 자원봉사를 이끌어 내는 것도 충남도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달체계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어, 동 중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다는 사실은 진정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을 보여주는 모범이라 할 수 있다.

6) 우수사례의 시사점 종합정리

남양주, 세종시, 성북구의 사례가 충남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시사 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주체들의 강한 의지와 시의 적극적 지원의 결합이다. 복지 후진지역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탈바꿈한 남양주의 사례는 적극적인 시의 지원과 복지자원이 없다는 위기의식을 오히려 기회로 만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체들의 강한 의지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결과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을 망라한 구성원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더불어 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행정기관 및 다양한 민간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다. 세종시의 사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어떤 특정한 자체사업보다는 복지관련 기관 및 민간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협의체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셋째, 효과적인 민간자원의 활용 및 전달체계의 개선이다. 서울 성북구는 동 단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조직하여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보다 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구성원들에게 기부와 자원봉사를 유도하여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고 지역주민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동 단위로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4. 충남도 사례분석

1) 도시지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질적 분석 : 천안, 아산, 당진

(1) 연혁

천안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금의 상근 간사를 채용한 년도인 2005년도에 구성되었다. 아산시 역시 2008년 지금의 상근간사를 배치한 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천안시,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충남도에서 비교적 선진지역인 것은 간사들의 장기근속도 한 뜻을 하고 있다. 당진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창립총회는 2006년도에 개최하였지만 간사채용은 천안, 논산에 비하면 조금 늦은 2009년도 말이다.

간사들에 의하면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정도는 5점 만점에 4점이다. 5점 만점을 주지 못하는 것은 천안시의 경우 독립된 사무실이 없을뿐더러 3개 지역 공통적으로 간사 1인체제이기 때문이다. 천안, 아산, 당진 공히 초창기에는 매우 어려웠다. 처음에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고 지금은 하나의 시각,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3개 지역 모두 제3기 복지계획 자체수립시에는 자기 분야 사업을 강조하지 않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2) 복지자원

천안의 복지자원을 살펴보자면 기업유치는 아산보다 적지만 비교적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의 규모는 천안이 크나 복지 쪽으로는 약한 것이 사실이다. 개별자원은 적어서 가령 가령 복지관은 아산이 7개인데 반하여 천안은 2개로 개별복지자원은 적다. 당진 역시 복지타운 이외에는 개별 자원이 많은 것은 아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하면 적지만 충남의 도시지역은 복지자원이 비교적 풍부하다. 도시지역의 복지환경의 특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 및 지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복지수요 대비 시설 배치수준이 전반적으로 가장 우수하며 시설유형별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 서비스 접근성이 좋다.

(3)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운영

천안군은 2013년 기준, 28명이 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간회의 개최횟수는 2회로 이중 1번은 서면회의로 대신했다. 실무협의체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연간회의 개최횟수는 3회이다(2013년 기준). 실무분과는 76명으로 구성되어있고 7개의 분과가 있으며 연간회의 개최횟수는 37회이다(2013년 기준). 아산시는 2013년 기준 20명이 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간회의 개최횟수는 6회로 세 개 도시 중 가장 많다. 실무협의체는 28명으로 구성되어 연간회의 개최횟수는 4회이다(2013년 기준). 실무분과는 95명으로 구성되어있고 7개의 분과가 있으며 연간회의 개최횟수는 71회로 (2013년 기준)세 개 도시 중 가장 많다. 당진시는 2013년 기준, 23명이 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간회의 개최횟수는 2회 했다. 실무협의체는 21명으로 구성되어 연간회의 개최횟수는 2회이다(2013년 기준). 실무분과는 105명으로 구성되어있고 8개의 분과가 있으며 연간회의 개최횟수는 51회이다(2013년 기준). 실무협의체의 회의는 분기별로 즉 년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협의체 회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천안의 경우는 협의체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대표협의체가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논의를 한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그것은 제안된 안건의 과정을 모르기 심의보다는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천안의 대표협의체는 경우에 따라 실무협의체와 연속회의를 하기는 것이 특징이다.

(4) 관주도? 민주도?

천안시 협의체는 시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산하기관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나, 사실은 시와 민간의 중간 즉 제3섹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외부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가 공무원처럼 인식되어 있다.

아산역시 협의체 주도는 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당진은 민관공동주도이며 당진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천안은 따로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회의는 기관들을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게 된다. 시청에 부속되는 장점도 많은데, 가령, 공무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공무원과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은 장점으로 뽑을 수 있다.

(5) 네트워킹 현황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세 개지역은 현재는 유관기관 간 연계가 잘 되고 있는 편이다. 일례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자기 것을 내놓는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곤 한다. 협의체 회원들은 회의에 참석하면 얻어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세 지역의 경우 실무분과 위원들의 참석률은 85% 정도까지 된다.

당진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 가장 큰 협의체의 일이고 다음으로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이 두 번째 우선순위이다. 아산시는 큰 종합복지관이 7개나 되고 행복키움지원단도 7개 복지관과 연계하여 사례관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복지시설간 네트워크 구축이 잘 되고 있다. 천안시는 과거에는 복지관과 행복키움지원단의 사례관리가 불협화음을 내곤 하였으나 천안시가 나서서 사례관리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T/F팀을 작동시켜 사례관리가 정착이 되었다. 따라서 행복키움지원단 담당공무원의 관할에 놓인 협의체역시 네트워크가 간접적로 활성화되었다.

(6)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천안, 아산, 당진 등은 활성화 정도가 공히 5점 만점에 4점이고 지역사회자원도 비교적 풍부하며 간사가 장기 근속하는 경우가 많고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도 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등 활성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 지역 모두 2014년도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주력하였다.

(7) 자체사업

천안, 아산, 당진 모두 사회복지박람회같은 실무분과의 자체사업이 있다. 아산시협의체는 지역의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 자체협력사업을 빈번히 하고 있다. 당진시협의체는 직접(자체)사업을 전혀 안 하지는 않으나 직접사업은 협의체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당진시복지재단사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체하는 경향이 있다. 천안시협의체는 분과사업으로 장애인인권교육, 노인복지종사자 대상 경영마인드 함양교육, 사회복지직 자살예방교육, 행복키움지원단 간담회 등이 있다. 분과초월사업은 제안은 했으나 연합사업은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그 이유는, 연합사업은 원하는 분과도 있고 원하지 않은 분과도 있기 때문이다.

2) 도·농 복합지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질적분석 : 논산

(1) 연혁

2003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전국적으로 발족하였고 논산시는 2005년도부터 지금의 간사가 연속 근무하게 되었다. 2005년도 협의체 간사로 봉직하기 전부터도 사회복지사로서 논산시청에서 이미 의료복지과 의료급여업무를 담당했다. 협의체 발족이전에 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관의 환경을 잘 알았던 것이 협의체 간사로 일하게 된 후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충남도에서는 천안다음으로 논산이 상근강사를 배치하였다. 초창기에는 충남도에서는 협의체가 구성된 지 일천하였기 때문에 경기도부천시를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하였다.

(2) 논산시 복지자원

논산시 복지자원의 특징은 이용시설이 적다는 것이다. 반대급부적으로 주변부에 정신시설도 많고 생활시설도 많지만 재가복지부문은 취약하고 종합사회복지관 한 군데 있긴 하나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복지욕구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3)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운영

대표협의체는 복지계획 심의가 주요업무이다. 다른 시군은 긴급지원제도 역시 심의하나 논산시는 그렇지 않다. 사업들은 대부분 실무분과에서 다뤄지고 있다. 1년에 협의체는 2-3회 개최되고, 7개 실무분과는 통틀어 50회(분과별로 매달모임,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분과도 있음)정도 개최가 된다. 가장 활성화된 분과는 노인, 아동청소년, 사례관리분과이다.

아동청소년분과는 나눔장터와 함께 위기청소년, 학교폭력 등의 이슈로 인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자원분과는 구성원자체가 건보공단, 보건소, 공공기관이 70%인데다가 이질적이고 분과구성원간에 공통분모가 없어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협의체 전체는 간사, 분과별로 모이는 것은 분과장, 서기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록도 작성한다.

(4) 네트워킹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지자체공무원의 태도가 시군마다 편차가 있었다. 적극적인 계장님 있는 반면 참여가 덜한 계장님도 있어 협의체 민간위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공공분야간의 협력역시 풀리지 않은 숙제이다. 가령, 보건소와 협력은 용이하지 않다. 논산시의 경우 초창기에는 보건의료분과가 있었으나 결국 분과 안에서 공동이슈를 찾지 못해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가 결국 과반수 의사결정에 의하여 보건의료분과가 없어지게 되었다. 보건분야실무자들은 사회복지 보건복지의 하위분야로 인식하고 있어 협력이 어려운 실정이다. (가령, 청양군같은 경우는 복지계획에서 보건의료는 따로 수립함). 장애인분야같은 경우는 분야(청각, 시각)마다 협력이 안되고 있다. 노인복지분야 역시 재가실무자와 시설종사자간의 협력은 잘 되지 않았다. 사례관리분과 안에서도 독거노인의 밀반찬 배달사업의 중복을 조정하려고 시도하였지만 대상자 공유가 이루지지지 않아 실패했다.

논산시 협의체 활성화 정도는 5점 만점에 4점이다. 협의체 기능이 보통이상으로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다. 실무분과를 통해서 매달 모이므로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분과의 활성화 정도는 간사의 개입 없이는 활성화 정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논산시의 7개 분과 중 절반정도는 자체적으로 움직이나 반은 지원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5) 관주도? 민주도?

협의체 차원에서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 시청의 사회복지과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관의 동태를 파악하는데는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간사가 공무원과 친해지지 않으면 운영이 협의체의 어렸기도 하고 초창기에는 관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협의체 운영이 힘듦으로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논산시는 민관 공동 주도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않는 협의체이다. 처음에는 논산시의 경우 관이 주도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고 현재에는 민관의 교량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공동 주도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민이 불만이 많았고 관에 대한 불신도 많았다. 민에 불만을 관에 전달하면 관 쪽에서 관의 편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지금의 간사는 시청에 만 15년 근무한 것도 관에서 입지를 굳건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논산시차원에는 관의 생리를 잘 아는 지금의 간사가 협의체를 주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평가하게 되었다. 자연히 관에서 좋은 평가가 나왔다. 협의체 안에도 민관이 공존하고 계속만나다보니 소통이 되었다. 논산시에는 분과 회의때 점심

식사와 병행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두 쪽의 대치가 살벌했으나 점심을 먹으면서 분위기가 풀리는 것意大半사이다.

(6) 지역사회복지 수립 경위

1기, 2기 때는 인근대학에 용역을 주었다. 3기 때 역시 시에서 용역을 주자고 하였으나 협의체에서 자체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상반기 때는 협의체의 활동이 복지계획에 주력하게 되었다. 상근간사 1인 이외에 별도인력 없이 현실적으로 자체수립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궁여지책으로 자체수립이긴 하나 복지계획 TF팀 안에 외부에서 3명의 교수를 영입하여 원고를 의뢰하는 것으로 자체수립 하였다. 이로서 충남도차원에서 복지지원 자체수립은 논산, 당진, 천안, 홍성 등 4군데이다.

(7) 자체사업

협의체 차원에서 대규모의 자체사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논산시는 실무분과별로는 소규모사업을 하고 있다. 가령, 아동청소년분과에서는 분과사업비 200만원으로 ‘아동청소년나눔장터’라는 사업을 4년째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연계체계구축을 분과차원에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과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며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이벤트판매 수익금으로 자발적 기부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같은 행사는 아동청소년 기관의 화합과 단합으로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행사는 주요내용은 벼룩시장, 먹거리바자회, 공연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규모사업외에 모든 분과를 망라한 큰 테두리의 사업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연마다 열리는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유일하다.

3) 농촌지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질적 분석 : 태안, 홍성, 부여, 청양

(1) 연혁

태안군 협의체는 2012년도에야 뒤늦게 상근간사를 채용했고 홍성군은 2010년에 상근간사를 배치하였다. 부여군은 비교적 이른 2007년도에 상근간사를 두었지만 간사가 빈번히 교체되곤 했다. 청양

군도 2006년에 일찌감치 상근간사를 고용하였지만 장기근속하는 간사가 나오지 않아 현재의 간사가 4번째 간사이다.

공통적으로 농촌지역은 협의체 상근간사의 잣은 교체가 특징이다. 홍성군을 제외한 부여, 청양, 서산, 태안, 등에서 예외 없이 장기근속하는 간사가 없었다. 따라서 협의체업무가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지역사회차원에서 협의체가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잣은 간사 이직은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든 구성원이 정체성을 찾기 어려워지고 간사가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구조로 인하여 협의체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된다.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의 협의체는 주무부서인 행복키움지원단과 이원적 구조로 갈등을 겪는 지역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청양, 부여군은 행복키움지원단과 공동으로 전달체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여군의 경우 행복키움지원단과 협의체의 업무연계비율이 50%가량 된다.

(2) 복지자원

도시나 도·농지역에 비해 가장 두드러진 농촌지역의 특징은 복지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역 사회의 거점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배치 규모가 대도시 및 중소 도시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농촌지역은 노인 및 장애인 지원서비스(주·단기보호서비스)가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하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인구 비율이 역시 낮기 때문에 지역아동아동센터 등 관련 시설의 수요 대비 배치수준은 대도시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 이므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3)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운영

홍성군은 2013년 기준 21명이 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간회의 개최횟수는 4회로 이중 2번은 서면회의로 대신했다. 실무협의체는 23명으로 구성되어 연간회의 개최횟수는 4회이다(2013년 기준). 실무분과는 100명으로 구성되어있고 6개의 분과가 있으며 연간회의 개최횟수는 33회이다(2013년 기

준). 태안군은 2013년 기준 20명이 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간회의 개최횟수는 3회로 이중 1번은 서면회의로 대신했다. 실무협의체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연간회의 개최횟수는 3회이다(2013년 기준). 실무분과는 60명으로 구성되어있고 3개의 분과가 있으며 연간회의 개최횟수는 20회이다(2013년 기준). 부여군은 2013년 기준 17명이 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간회의 개최횟수는 5회했다. 실무협의체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연간회의 개최횟수는 1회이다(2013년 기준). 실무분과는 3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5개의 분과가 있으며 연간회의 개최횟수는 7회이다(2013년 기준). 청양군은 2013년 기준, 12명이 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간회의 개최횟수는 3회했다. 실무협의체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연간회의 개최횟수는 5회이다(2013년 기준). 실무분과는 63명으로 구성되어있고 6개의 분과가 있으며 연간회의 개최횟수는 31회이다(2013년 기준).

(4) 네트워킹

농촌지역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간의 교류협력은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한 지역과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지역이 대등하였고 태안군은 협의체의 회의가 민간위원이 주로 불만사항을 토로하는 장으로 인식되는 극단적인 지역이다. 그러나 청양은 특이하게도 보건부분과 연계가 활발하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협의체사무실이 보건의료원과 근접해 있고, 보건의료분과에 보건의료원 인사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보건과 복지는 틈새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농촌지역은 복지자원의 부족으로 구조적으로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5) 관주도? 민주도?

청양시의 경우는 민간이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상근 강사(지금은 교체됨)가 제2기 때부터 분과위원장은 맡고 있었고 다문화센터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건물을 공유하는 사회복지협의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여군은 연속성이 없어서 관의 주도로 갈 수밖에 없었다. 간사의 근무가 4-5년 계속 이어졌다면 민간주도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홍성군은 관의 적극적 지원(협의체 인력이 3명이나 됨)이 뒷받침된 것은 사실이나 담당공무원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도 많아 민·관공동주도로 평가 할 수 있다. 태안군은 협의체가 관 복지행정의 도구화로 전락한 대표적인 지역이고

관의 도구화는 농촌지역일수록 협의체 활성화가 덜 된 지역일수록 더욱 심한 경향이 있다.

(6) 지역사회복지 수립경위

농촌지역은 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참여하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홍성군 정도를 제외하곤 대부분은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7) 자체사업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협의체 자체사업에 긍정적이었다. 이는 복지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협의체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보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자체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4) 질적조사의 결론

질적 조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성이 판이하게 구별된다는 점이다.

도시지역은 비교적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정도가 높고 유관기관간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역시 비교적 풍부한데다가 일찌감치 상근간사를 배치하여 협의체를 출범 시킨 후 간사의 교체 없이 협의체의 지속성을 담보한 것이 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외부에서 평가하는 상근간사의 역량이 우수한 것도 도시지역의 공통된 특징이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회의 개최빈도 역시 도시지역이 압도적으로 많다. 지역사회복지계획도 공통적으로, 도시지역은 외부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립하였다.

농촌지역은 관의 도구화로 전락된 지역이 많았고 무엇보다도 상근간사의 잣은 교체로 협의체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없었다는 점이 협의체가 발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농촌지역은 복지자원이 부족하여 복지서비스의 연계·조정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회의 개최빈도 역시 도시지역에 비해 월등히 적다.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보다는 평가를 위하여 자체사업에 치중하고 협의체의 역량부족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농촌지역의 공통된 특징이다..

도농지역은 도시지역과 군단위지역의 중간성격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활성화 된 부문과 비활성화된 부문이 혼재되어 있다. 가령, 복지자원부분은 농촌지역에 가깝지만 간사의 역량은 도시지역에 못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족한 복지자원에 비하면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있다. 직접사업도 농촌지역처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사회복지계획역시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논산시의 경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회의 개최빈도 역시 도시지역에 비해 못하지 않다.

5) 설문조사와 질적 조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지역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는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공히 도시>도농>농촌 순이었다.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이 가장 필요한 지역도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공히 농촌지역으로 분석되었

다.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공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출범이후 유관기관 간 소통 및 연계 및 조정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정도 역시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공히 도시지역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군단위지역이 가장 비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와 질적 조사의 차이점도 분석결과 나타났다. 네트워킹 현황은 질적 분석에서는 도시지역이 활성화 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양적 분석에서는 3가지 지역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출범 이후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소통 및 연계·조정이 원활해졌는지에 대한 평가’ 만이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게 나타나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을 뿐 다른 항목들은 모두 유의확률이 0.1보다도 커 지역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네트워킹 분야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출범 이후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소통 및 연계·조정이 원활해졌는지에 대한 평가’ 항목을 제외하곤 3지역이 차이가 없다는 것이 설문조사의 합의이다. 또, 설문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도시지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관의 도구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협의체 활성화 정도에 있어 질적 분석에서는 농촌지역이 가장 활성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문조사에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시군의 공무원들의 협의체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는 긍정적으로 평가(47.3% 긍정적응답 對 15.1%의 부정적 응답)하였으나 질적 조사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의 협의체 활동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군도 많이 존재 하였다.

제5장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평가와 문제점

1.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평가

2005년 본격적인 출범 이후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립이 전반적인 지역사회복지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었고, 유관기관 간 소통 및 연계·조정도 출범 전보다 한층 더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이 지역의 복지정책에 반영되는 정도에 대해서도 많은 수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간참여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이외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부에 대한 평가역시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협의체의 운영 목표와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해서도 연구결과는 호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위원의 위촉과정, 협의체 위원들의 대표성 및 활동,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활동 등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된 3 중 구조는 지금보다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하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 조직, 인력, 사업, 재정, 네트워킹 현황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평가해보고자 한다.

1) 조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 수는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많고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적은 경향이 있다(가령, 천안 120명인데 반하여 청양 71명). 또 농촌지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변동이 많아서 협의체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지역사회복지자원도 도시지역이 많은 반면 농촌지역은 부족한 형편이었다. 한편, 도시, 도농, 농촌 지역을 불문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 현황은 편차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분과의 구성은 시·군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천안시는 노인, 장애인, 여성, 가족, 다문화, 영육아, 아동, 청소년 등의 대상별 분과가 존재하나 공주는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세 개 분과만 존재하고 있다. 실무분과가 구성되긴 했으나 연간 한 번도 분과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시·군도 있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시군 담당공무원의 태도 역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은 협의체 활성화의 절대적인 관건이지만 실무 분과 회의에 적극적인 시군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상근간사를 중심으로 시군청과 분리된 별도의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77%의 응답자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은 시·군청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재 별도의 사무국을 확보한 시군은 아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등으로 많은 지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청에 부속되어 있다.

2) 인력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 인력의 수에 있어, 홍성군이 예외적으로 3명의 인력으로 사무국장, 실장, 간사가 있으며, 보령시는 2명으로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으며, 나머지 시군은 모두 1명의 간사가 상근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상근 인력들의 신분보장은 천안, 아산, 논산, 홍성 등 4개 시군만이 무기계약직인 반면에 다른 시군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간사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상근간사가 자주 교체된 지역의 협의체는 경험적으로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 내 많은 시군이 1명의 인력만으로는 협의체 업무를 수행하기에 힘든 상황으로서 제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력충원을 시군의 사업으로 선정한 시군도 존재하였다. 인력이 많은 시군이 그렇지 못한 시군보다 반드시 협의체 업무의 양과 내용이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협의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분업이 가능한 유리한 구조인 것은 사실이다. 1명의 상근간사만을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인력으로 둔 시군에서는 보조 인력으로서 공익요원을 협의체 인력으로 활용하는 시군도 많았다. 한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선결조건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상근간사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도 보통 1명으로 주로 행복키움지원단 소속인 공무원이 협의체도 관장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는 회의지원, 사업진행과 관련된 행정업무 지원,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 등으로 분석되었으나, 시군에 따라 협의체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기여도는 편차가 있었다.

3) 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고유의 업무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복지계획 자체 수립, 지역사회 복지정책 심의 및 수립으로 크게 대별해 볼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구축은 협의체 출범 이후 소통 및 연계·조정이 활발해짐에 따라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발굴 및 전달체계 개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향후 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서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을 꼽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처럼 네트워크 구축은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본연의 업무임에 틀림없으나 충남도의 경우 아산, 천안, 논산, 홍성을 빼고는 주도적으로 복지계획을 수립한 시군이 없다. 따라서 협의체가 복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체 역량강화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심의·의결 처리한 사항이 지역의 복지정책에 반영되는 정도에 대해서도 많은 수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비추어볼 때,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심의 및 수립에 협의체가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실무분과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반영도는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자체 사업에는 모든 실무분과가 참여하는 대규모의 사업은 존재하지 않으나 개별적인 실무분과가 주도하는 소규모의 사업은 시군에 따라 그 내용은 다를지라도 거의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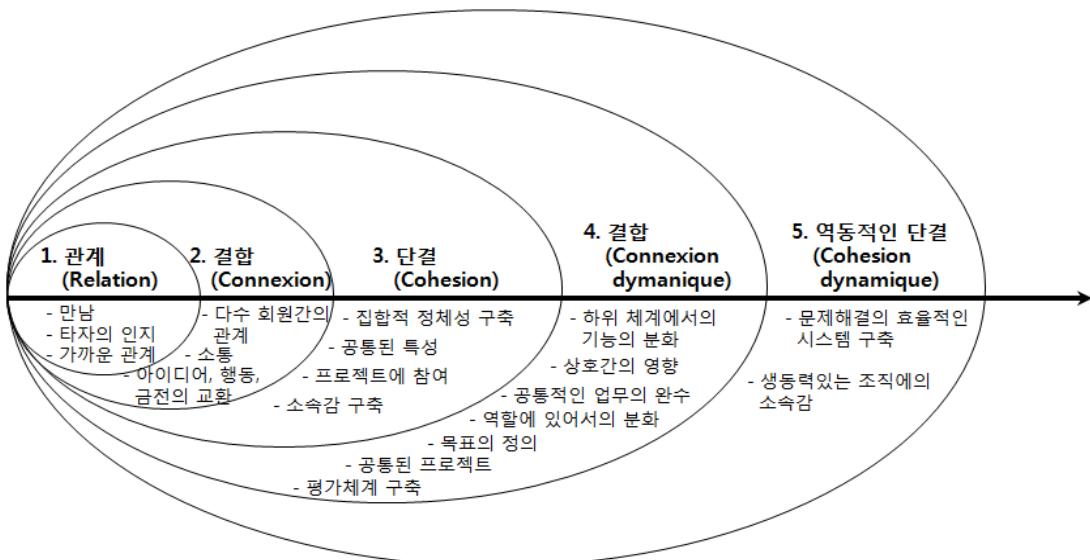
협의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자체사업을 하는 것은 논란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초 단계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4) 재정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예산은 기초자치단체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내려주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다. 그럼에도 충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충남도 15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은 홍성군 1억 8천에서부터 태안군의 3500만원까지 편차가 다양하다. 예산은 인건비 소요가 가장 많고, 대부분의 협의체에 있어 자체 사업비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5) 네트워킹 현황

설문조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출범 이후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소통 및 연계·조정이 원활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39.8%)’, ‘보통이다(38.2%)’, ‘매우 그렇다(10.2%)’, ‘별로 그렇지 않다(11.4%)’, ‘전혀 그렇지 않다(0.4%)’의 순으로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민·관의 소통구조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J. Clenet 와 C. Gerard의 파트너십에 이르기 위한 5가지 단계, Dhume(2001)

그러나 심층면접 분석결과에 의하면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네트워킹 수준은 <J. Clenet 와 C. Gerard의 파트너십에 이르기 위한 5가지 단계>에 있어 두 번째 단계인 결합(connexion) 수준에 머물러 있다. 비록, 협의체 회원 간 네트워킹이 존재한다하더라도 대부분 비공식적이거나 개인적 친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표 4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네트워크의 활동수준

단계/구분	연락(communication)	연계(coordination)	통합(intergration)
사회복지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의뢰	사례관리, 서비스계획 공동수립, 개별기관 실시	포괄적·단일 서비스기 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
협력의 정도	정보교환 및 공유/장비 · 시설 대여 관련기관 간담회	협의체 구성, 공동사업 수행, 직원파견, 서비스공동계약	전달체계 내 조정기구를 통한 조직통합

자료: 박정호. 2004. “우리나라 재가 노인요양서비스 네트워크에 관한 서설적 연구”. 「사회복지리뷰」, p.135.

지역사회복지에서 서비스 네트워크의 활동수준을 〈표 45〉처럼 연락, 연계, 통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충남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연락(communication)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5년도 현재, 충남도 15개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상근간사의 채용은 완료하였다. 그러나 협의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열악한 지역이 많고, 실무 분과 회의가 개최되긴 하지만 본격적인 네트워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대부분 협의체에서 소규모의 자체사업이 있다하더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을 평가영역(조직, 인력, 사업, 재정, 네트워킹현황 등)을 나누어 고찰하여 본다.

1) 조직

(1) 민·관 협치구조로서의 협의체가 아니고 관 행정의 도구화로 전락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엄연히 수평적인 민·관 협치기구이나 실제로는 지역에 따라 시·군청 복지행정의 도구화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 시·군청 복지행정의 도구화는 협의체가 활성화가 되지 않은 곳(간사가 자주 교체되는 지역)에서 더욱 심했고 도시지역보다 군 단위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군 단위지역의 협의체담당공무원은 협의체 간사를 수평적으로 대하기보다는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고유의 업무는 제쳐두고 담당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민·관의 교량 역할을 해야 하는 간사 본연의 역할은 실종되고 간사의 정체성 역시 모호해 지기도 한다. 상근간사의 고용도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반계약직이라는 것도 민·관간의 수평적 관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명실상부한 민·관 협치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체 간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① 개선방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위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 참여의식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다 더 수평적이기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민간의 지원체계 확립이 요구된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될 때 수직적인 관주도의 협의체 운영이 아닌 개방적인 네트워크 관점에서 협의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담당공무원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계가 아닌 행복키움지원단 소속으로 되어있는 이원화의 문제

현재 15개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공식 소속은 행복키움지원단으로 되어있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담당을 협의체와 별로 관계없는 행복키움지원단 주무계가 하고 있어 협의체 행정이 이원화되고 있다. 협의체 담당부서의 이원화 문제는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협의체의 인력이 두 부서 모두에게서 지시를 받으니 업무에 혼선이 초래되고 심지어 정체성 문제까지 야기된다. 그러나 실제로 협의체와 함께 업무를 공조하는 부서는 행복키움지원단이 아닌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담당공무원으로, 현재의 이원화 구조는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에 저해 요인으로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협의체와 별로 관계없는 행복키움지원단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게 됨으로써 협의체 인력이 본연의 업무인 네트워킹보다는 직접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상근간사가 행복키움지원단 업무인 독거노인 집수리를 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담당 주무계는 행복키움지원단이 아닌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계로 일원화 되어야 한다.

② 개선방안

전국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을 변경할 수 없다면 충남도만이라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담당주무계가 행복키움지원단이 아닌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계로 운영지침이 수정되어야 한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시 지역사회 복지실무자가 실문분과로 가지 않고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에 이름을 올리는 문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3단계 구조이다. 그러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는 결코 위계적인 서열이 있는 조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실무분과가 가장 낮고 대표협의체가 가장 상층부인 위계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회의수당은 (대표·실무)협의체 참석자에게만 지급될 뿐만 아니라 (대표·실무)협의체는 전문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은 실무분과보다는 대표협의체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③ 개선방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구성의 자격요건의 수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복지부 조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은 반드시 실무분과에 소속되게 하도록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운영지침의 변경과 별도로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등 각 단계별 효과적 운영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먼저, 실무분과의 효과적 운영방안으로는 지역 내의 실무자들 간에 형성되어 있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네트워크 모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만약 이러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았다면 실무자들의 필요나 개인적 친분에 의해 구성되는 자생조직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무분과 회의를 실무자들의 여건을 고려해서 분과회의를 개최하는 등, 회의 개최의 유연성이 요구된다. 또한 각 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실무분과를 활성화 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무분과 회의 개최뿐만 아니라 각 분과마다 상

시적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회원들 간의 의견수렴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 실무협의체 효과적 운영방안으로는 첫째,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해야만 한다. 둘째, 지역사회에 각 분야별 사업 및 자원을 연계 하는데 있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실무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농촌지역 등 비활성화된 지역의 실무분과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표협의체의 효과적 운영방안으로는 대표협의체로 올라오는 심의(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표협의체 위원들은 실무분과나 실무협의체에서 발의되는 안건에 대하여 그 배경이나 문제점을 세세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전에 심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위한 미팅을 실무분과나 실무협의체 위원 중 한 명과 개최하여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인력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의 선발기준과 처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는 구조적으로 1인 체제이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등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상존한다. 1인 간사가 백여 명에 이르는 협의체 위원들을 상대하다 보니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민과 관의 가운데에 끼인 구조로 민과 관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갈등을 조정하는데도 많은 어려운 점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는 해당 간사의 열정과 역량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간사의 선발과 그에 걸맞은 처우는 협의체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는 새내기 사회복지사보다는 최소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중견급 사회복지사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는 예산상의 문제를 핑계로 사회복지 관련 경험이 없는 새내기 간사를 채용하고 그것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간사의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은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활동에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개선방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발전시키려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상근간사를 최소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의 경험 있는 역량 있는 간사를 선발하고 그에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시·군에서 계약직으로 되어있는 간사의 신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협의체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사업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원들 간에 네트워킹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각지대 빨굴, 서비스 제공의 중복과 누락 등 비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있어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의 수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원인 중의 하나이다.

현재 활동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네트워킹이 구축되지 못함으로써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큰 기여를 못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발굴과 관리도 활발히 이루지지 못하고 있다.

네트워킹의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민·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좀 더 체계화되고 제도화되어 네트워킹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은 협의체 활성화의 관건이다. 그러나 현재 유관기관과의 기본적인 연계와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회적 또는 사안별 연계와 협력에 그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인 네트워킹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개선방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 간에 연대의식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네트워크 구축의 선결 조건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협의체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협의체 구성원 간에 연대의식 또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소규모의 사업뿐만 아니라 실무분과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규모의 사업을

유관기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15개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뿐만 아니라 민간위원 차원에서도 도 단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시군단위 네트워크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재정

(1) 독립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의 확보

현재 시·군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의 위치가 시·군청에 종속되어 있거나 반대로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한 지역도 있다. 사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 분리 여부는 일장일단이 존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가할 사항은 아니다.

협의체 차원에서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 시·군청에 부속되어 있으면 관의 동태를 파악하는 데는 유리한 것도 사실이다. 간사가 공무원과 친해지지 않으면 협의체 운영이 어렵고 초창기에는 관이 이끌 어주지 않으면 협의체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시·군청에 부속되는 또 하나의 장점은 공무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공무원과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이다. 만약 따로 떨어져있다면 공문을 보내도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회의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립된 사무국은 외부에서 쉽게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민민간의 소통을 위해서는 초창기는 몰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군청에서 협의체 사무국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개선방안

설문조사의 결과도 상근간사를 중심으로 시군청과 분리된 별도의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그렇다’가 77.0%이고, ‘그렇지 않다’가 23.0%로 시군청과 분리된 별도의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때, 장기적으로 독립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表 4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문제점	개선방안
관 행정의 도구화로 전락	▶ 민간위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의 지원체계 확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담당 조직의 이원화	▶ 협의체의 담당 주무계를 지역사회복지수립 계로 변경
협의체 실무분과의 비활성화	▶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구성의 자격요건 수정
협의체 간사의 부적합한 선발기준과 열악한 처우	▶ 현장경험 5년 이상의 역량 있는 간사의 선발과 처우 개선(무기계약직 전환)
협의체 네트워킹 미흡	▶ 공동사업 수행을 통한 연대의식 제고
독립된 협의체 사무실의 부재	▶ 재정지원을 통한 독립된 사무실 확보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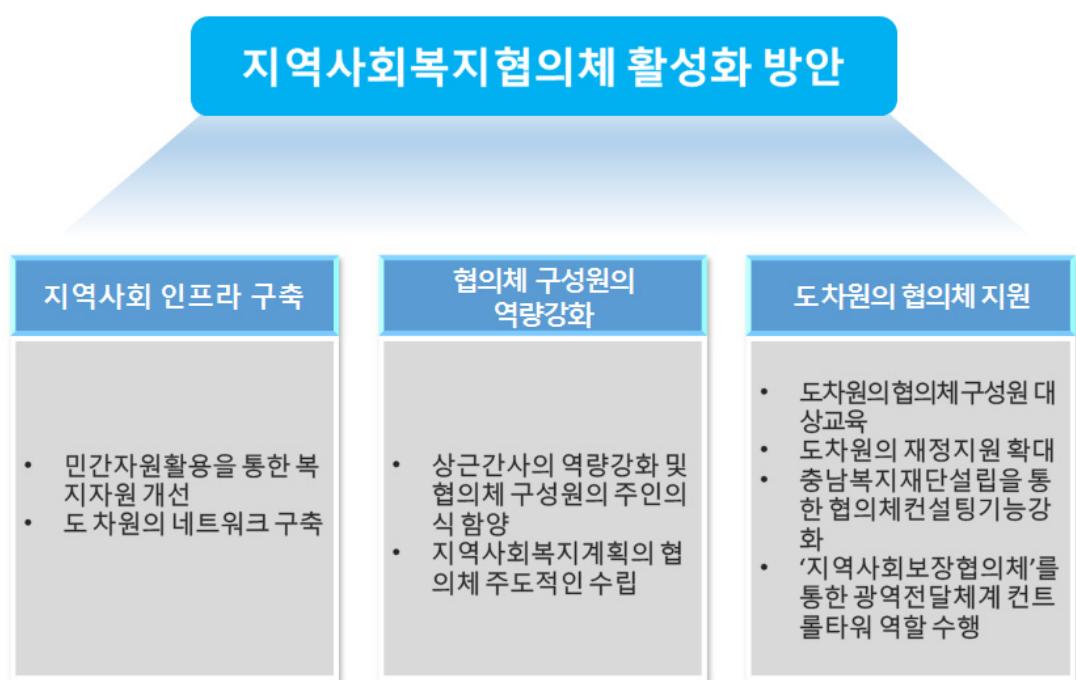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의 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계획하는 기구로서 2003년 출범하였다. 이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서 무엇보다도 지역 단위의 복지를 체계화하기 위한 야심찬 시도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 업무는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발굴·동원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을 통해 효율적이고 조율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충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선 복지 현장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과 관 그리고 유관기관 간 상호이해를 높이고, 불신을 불식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상호간의 긍정적인 소통 구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가시적인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각지대 빌굴, 서비스 제공의 중복과 누락 등 비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크게 일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의 수준이 만족할 말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도 몇몇 시군의 협의체를 제외하고는 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2.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지역사회 인프라 조성, 협의체 고유 역할 및 기능수행을 위한 역량강화, 그리고 이를 위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원방안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1) 지역사회복지인프라 구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인프라 구축은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복지자원 발굴 및 도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이 포함된다.

(1)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복지자원 발굴

지방정부나 기초자치단체가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과 복지자원의 부족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와 관련된 실무자들이 협의체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복지자원, 특히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조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민간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의 거점기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복지자원 발굴에는 협의체 내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민간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수 사례의 남양주시처럼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도 맥을 같이 한다. 성북구의 동 단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을 조직하는 방안은 기부자 및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자연스럽게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사례이다.

(2) 도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

충남도 15개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강사들은 상호 긴밀히 소통하며 정기적으로 회합을 갖는 등 이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있으나, 간사들 이외에 다른 구성원들의 네트워크는 아직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협의체 관련 공무원들도 도 차원에서 관계망을 형성하여 상호 정보교류와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의 역량강화

(1) 상근간사의 및 협의체 구성원의 주인의식 함양 및 역량 강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근간사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협의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폐쇄성또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협의체 업무를 자기 기관의 일로 인식하는 주인 정신의 함양이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 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참여하는 민간기관의 인식 및 의지의 부족’이 32.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시군의 인식 및 의지의 부족(23.4%)’, ‘제도적 기반의 불비(16.9%)’, ‘물적 운영기반의 미흡(11.7%)’, ‘인적 역량의 부족(9.1%)’, ‘기타(3.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민간기관의 주인의식 함양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상근간사 및 협의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역량강화 워크숍’은 필수적이며 도(道)차원에서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협의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각자가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2) 주도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모니터링 및 평가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4개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협의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협의체의 인력도 충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수반되는 재정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협의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협의체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3) 도 차원의 협의체 지원 방안

(1) 도차원의 협의체 구성원 대상 교육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 중 상근간사를 대상으로 하는 협의체 자체 교육이나 보건복지부 차원의 교육은 진행되고 있으나 도 차원의 교육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민간위원이나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 모두를 망라한(상근간사, 민간위원, 담당공무원 등) 교육을 충남도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 차원의 주기적인 교육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협의체 활성화 정도의 편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도차원의 재정지원 확대

충남도의 경우는 도 차원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재정에 일정 정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체에 관한 사업은 지역사업으로 분류되어 국비보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대부분의 시군 협의체는 예산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소요하고 있어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하거나 자체 사업을 하기에는 재정상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도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도 차원의 재정지원은 현 간사인건비의 1/4 정도가 현실적일 것이다.

(3) 충남복지재단설립을 통한 협의체 컨설팅 기능 강화

타 광역시도처럼 충남도 차원의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컨설팅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충남도 차원의 복지재단은 충남도의 전반적인 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들은 교육이나 자체평가에 있어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복지재단)의 도움을 고대하고 있다. 현재 자체교육의 형태로 각기 다른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복지재단이 설립된다면 컨설팅을 전담하는 연구인력으로 하여금 15개 시군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협의체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도차원의 전달체계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현행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둘 수 있다(제41조 1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명칭의 변경과 함께 사회보장을 강조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보다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1항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 한다는 조항은 지역보장협의체가 도 단위 네트워크 구축으로서 도(道) 차원의 전달체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의 전달체계는 지방정부 중심의 특성화된 전달체계가 아닌 중앙집중형 방식에서 설계되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충분한 공감대가 없고 공공위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다보니 민관협력은 항상 부수적인 사항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분산적인 전달체계가 탄생하게 되었다.

시군 단위의 다양한 복지 공급기관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기구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행복키움지원단이 있으나 광역단위에는 공공과民間을 포괄하는 전달체계가 부재한 현실이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광역단위에서 공공과民間을 아울러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인력보강이 선행되어야 하고 협의체의 위상도 지금보다 강화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이상적인 모델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이상적인 모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 일선 현장에 있어서는 행복키움지원단이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 한 조직이 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나 단위적으로 사회복지를 지역에서 담당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민간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의 거점기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수 사례인 남양주시처럼 지역주민

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수 있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선과도 맥을 같이한다. 성북구처럼 동 단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조직하는 것도 기부자 및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자연스럽게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방안이다.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의체의 상근간사와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가 선결조건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협의체의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복지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렵더라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셋째, 협의체 역량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교육시스템과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체 내(内)의 자체교육이나 보건복지부 차원의 교육은 진행되고 있으나 도 차원의 교육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에 대한 보다 확대된 차원에서의 교육이 필수적이므로 도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주기적인 교육시스템이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문적 인력을 통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체평가는 전문 인력의 부재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복지부 평가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평가라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이들 두 평가는 평가 자체로 끝날 뿐이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결핍되어 있다. 따라서 충남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 등을 피드백하여 협의체의 활동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섯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전달체계 개선의 맥락에서 출범하였다. 뿐만 아니라, 협의체를 전담하는 시·군청 조직도 현재는 행복키움지원단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유관기관 간 원활한 네트워킹 구축을 통해서 지역사회복지자원발굴, 클라이언트의 서비스의 연계·조정,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등과 같은 전달체계 개선에 일조하는 것이다.

〈표 47〉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이상적인 모델

현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협의체의 이상적인 모델
지역 사회복지자원의 부족	→ 민간자원활용을 통한 복지자원발굴
주민참여의 비활성화 및 민간복지조직의 구심점이 없음	→ 주민참여의 제도적 기반마련 및 민간거점기구로 운영체계 개선
협의체 활동내역에 대한 피드백부족	→ 복지재단등을 전문가를 통한 환류기능 강화
외부에 의존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협의체구성원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자체수립
도 차원의 협의체교육이 없음	→ 도차원의 협의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
전달체계 개선효과가 없음	→ 네크워킹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

참고문헌

- 강창현(2001), “노인지역사회보호를 위한 방문(가정)간호서비스 네트워크 탐색”, 「한국정책학회보」 46(3):147-171.
- 김문조(1987), “사회망 분석의 기본원리 및 절차”, 「사회구조와 사회사상」 . 심설당.
- 김인숙 · 신은주 · 김혜선.(1999).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 모델개발”. 「한국가족복지학」 64(2):151-172.
- 김용현,(2010), “네트워크 개념을 통해서 본 프랑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조정 · 연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 37(1):228-240.
- 김준기(1997), 「사회복지네트워크의 분석」 .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준기(2006), 「한국사회복지 네트효과의 구성과 효과성」 ,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경숙(1996).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간 사회복지서비스내 서비스 연결 실태”. 「성곡논집」 .
- 박정호(2004). “우리나라 재가 노인요양서비스 네트워크에 관한 서설적 연구”. 「사회복지리뷰」 . 13(2):153-182.
- 보건복지부(201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 .
- 손능수 외 (2008), 「경상북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방안 연구」 , 경북행복재단 연구보고서.
- 안혜영 · 이용우(201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평가의 현황과 과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조와 기능 그리고 평가」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재완 · 최영.(201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조의 현황과 과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조와 기능 그리고 평가」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은구 외 공저(2003), 「로컬 거버넌스」 . 법문사.
- 이용표(2005), “지역사회네트워크와 지역복지조직의 활동방향”. 「사회복지리뷰」 .
- 유태균 · 김자옥(2001),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간의 네트워크 특성 및 네트워크 상에서의 중심자적 역할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5:123-146.
- 이현주 외(200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사업 분석 및 협의체 모형 개선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호 · 이정석(2008), 「부산의 지역공동체 실현방안」 , 부산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 조명래 외(2011), 「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 , 한울.
- 지은구(2001), 「지역복지론」 . 청록출판사.

- 초의수(2008),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실태와 네트워크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1(4)222-245.
- 최은희(2012), 「충남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행복키움지원단 역할에 대한 의식 조사」, 충청남도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태동원 · 김근식(2010),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보」 14(3) 97-123.
- 홍현미라 외 (2008), 「사회복지네트워크의 이해」, 학현사.
- 홍현미라 외(2010),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 Castelles, Manuel(2004), *The Rise of Network Society*. Blackwell.
- Crozier, Michel et Friedberg, Erhard(1977), *L'acteur et le système*, Seuil.
- Dhume, Fabrice(2001), *Du travail social au travail ensemble*. ASH.
- De Maillard, Jacques(2004), *Reformer l'action publique : La politique de la ville et les banlieues*, L.G.D.J.
- Lemieux, Vincent(1998), *Les coalitions: liens, transactions et contrôles*. PUF.
- March, D. and Rhodes, R.A.W(1992), *Policy Networks in British Government*. Clarendon Press.
- Poutout, Gilles(2005), “Réseau de santé: créer du lien pour donner du sens ”. *Sociologiques pratiques*. PUF.
- Scheweyer, François-Xavier(2005), “Le travail en réseau un consensus ambigu et un manque d'outils”. *Sociologiques pratiques*. PUF.
- 남양주, (2007), U-쾌한 남양주 운영백서.
- (2009), U-쾌한 남양주 운영백서.
- (2010), 제2기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 (2012),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남양주 지역복지 network 자료집.
- (2013), 남양주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위한 향한 우리복지 마을 이야기.
- (2013), 제3기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 금강일보, 2011.11.8. '연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 우수기관 선정'
- 아시아경제, 2011.2.24. '성북구 동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추진'

부 록

부록 1.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방안 설문조사지

부록 2. 조사표

부록 1 -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방안 설문조사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설문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체계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정책연구뿐만 아니라 향후 충남도민·관 협력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네트워킹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된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개인이나 기관·단체의 의견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참여하시는 뜻에서 설문에 충실히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조사나 설문내용에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충남발전연구원

◎ 설문조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담당자 : 충남발전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 김용현
- 전 화 : 840-1236(담당자직통), 840-1239(Fax)
- 주 소 : (우 314-140)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1. 귀하는 시·군의 지역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못 되고 있다
- ② 잘 못 되고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 되고 있다
- ⑤ 매우 잘 되고 있다

2. 귀하는 현재 귀하의 시·군의 지역사회복지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기반 정비
- ② 지역복지재정의 확충
- ③ 지역주민의 관심 및 참여확대
- ④ 사회복지전문인력의 확충
- ⑤ 사회복지기관간 민·관의 협력수준
- ⑥ 복지수요자의 시·군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⑦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수준
- ⑧ 기타 (_____)

3. 귀하는 시·군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교류협력의 정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잘 못 되고 있다
- ② 잘 못 되고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 되고 있다
- ⑤ 매우 잘 되고 있다

4. 만약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간의 교류협력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교류협력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관 및 시설 간 경쟁의식
- ② 기관 및 상이한 사업내용 및 운영여건
- ③ 교류협력에 대한 낮은 기대감
- ④ 일상적 업무의 과중함
- ⑤ 책임있는 중심기관 선정의 어려움
- ⑥ 기타 (_____)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립이 귀하의 복지업무수행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③ 보통이다
- ④ 도움이 된다
- ⑤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6. 귀하는 업무이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도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복지기관 (단체)의 관리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7. 귀하는 복지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다른 복지기관(단체)들과 상당부분 공유하는 편입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8. 귀하는 업무수행과 관련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외부 단체와의 공청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편입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9. 귀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출범이후 지역사회 다른 단체들과 소통 및 연계·조정이 원활해졌다고 평가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0. 귀하는 다른 단체들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응할 용의가 되어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1. 귀하는 업무수행과 관련해 접촉하게 되는 다른 유관기관의 관리자들에 대해서 친밀하게 느끼는 편입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2. 귀하는 업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단체들과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3. 귀하는 운영하는 복지기관(시설)의 전체적인 업무성과에 관련해 다른 단체들과 업무 연계활동은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4. 귀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실정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전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 ② 별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
- ⑤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

15. 귀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간위원 위촉과정에 대해 신뢰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신뢰한다
- ⑤ 매우 신뢰한다

16. 귀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보건, 복지, 시민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한다고 평가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7. 귀하는 시군의 공무원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나 활동에 많이 참석하는 편입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8. 귀하 시군의 대표협의체 활동은 활발한 편입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9. 귀하 시군의 실무협의체 활동은 활발한 편입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0. 귀하 시군의 실무분과는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의결 처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2. 귀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역할에 비해 선발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지 않다
- ② 그렇다

23. 협의체회의 안건은 주로 관에서 준비하며, 관의 의도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24. 귀하의 시군은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해를 위한 교육, 워크숍이 실시 됩니까?

- ① 그렇지 않다
- ② 그렇다

25. 귀하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의 참여는 활발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6. 귀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는 갈등과 충복이 소지가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27. 귀하는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 운영목표와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3층 구조는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지 않다
- ② 그렇다

29. 상근간사를 중심으로 시군청과 분리된 별도의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지 않다
- ② 그렇다

30.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청에 같이 붙어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지 않다
- ② 그렇다

3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근간사의 전문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32. 귀하는 도청 또는 시군청의 예산편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33. 실무분과의 회의참석율을 높이기 위해 회의참석에 대하여 소속기관 평가시 가점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34. 상근간사, 담당공무원, 위원장, 분과장에 대한 도차원의 협의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35. 만약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시군의 인식 및 의지의 부족
- ② 참여하는 민간기관의 인식 및 의지의 부족
- ③ 제도적 기반의 불비
- ④ 인적 역량의 부족
- ⑤ 물적 운영기반의 미흡
- ⑥ 기타 (_____)

36.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다음은 귀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지역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소속
2.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3. 연령	만 ()세
4. 협의체 직위	① 대표협의체 위원 ② 실무협의체 위원 ③ 실무분과 위원 ④ 사무국 인력 ⑤ 비협의체위원
5.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총 근무경력	()년
6. 현 직종 근무경력	()년
7. 학력	① 대졸이하 ② 대졸(전문대포함) ③ 대학원 재학 ④ 대학원 졸 ⑤ 기타 ()
8. 자격증 (대표적인 것하나만)	① 사회복지사 1급 ② 사회복지사 2급 ③ 사회복지사 3급 ④ 간호사 ⑤ 요양보호사 ⑥ 기타()

-끝까지 응답하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 조사표

1. 지역사회복지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 명, %)

구분		시례수	매우 잘못 되고 있다	잘못 되고 있다	보통이다	잘 되고 있다	매우 잘 되고 있다	계
전체		246	1.2	8.1	49.2	35.8	5.7	100.0
지역	도시	69	0.0	1.4	34.8	47.8	15.9	100.0
	농촌	106	2.8	11.3	62.3	21.7	1.9	100.0
	도농	71	0.0	9.9	43.7	45.1	1.4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0.0	0.0	46.7	46.7	6.7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6	0.0	5.6	44.4	44.4	5.6	100.0
	실무분과 위원	136	1.5	7.4	46.3	38.2	6.6	100.0
	사무국 인력	10	0.0	40.0	30.0	30.0	0.0	100.0
	비협의체 위원	18	0.0	5.6	61.1	22.2	11.1	100.0
성별	남자	77	2.6	5.2	42.9	37.7	11.7	100.0
	여자	163	0.6	9.8	50.9	35.6	3.1	100.0
연령대	20대	31	3.2	3.2	58.1	25.8	9.7	100.0
	30대	69	1.4	13.0	42.0	39.1	4.3	100.0
	40대	79	0.0	6.3	51.9	34.2	7.6	100.0
	50대 이상	50	2.0	10.0	36.0	48.0	4.0	100.0
학력	대학이하	12	0.0	8.3	41.7	50.0	0.0	100.0
	대학(전문대포함)	159	0.6	8.8	52.2	32.7	5.7	100.0
	대학원 진학	14	0.0	7.1	28.6	50.0	14.3	100.0
	대학원 졸	54	1.9	5.6	44.4	42.6	5.6	100.0
	기타	4	0.0	25.0	75.0	0.0	0.0	100.0
자격증	없음	43	7.0	9.3	41.9	39.5	2.3	100.0
	사회복지사 1급	68	0.0	4.4	41.2	42.6	11.8	100.0
	사회복지사 2급	111	0.0	10.8	55.9	28.8	4.5	100.0
	간호사	3	0.0	0.0	33.3	66.7	0.0	100.0
	요양보호사	6	0.0	16.7	66.7	16.7	0.0	100.0
	기타	15	0.0	0.0	53.3	46.7	0.0	100.0

2. 지역사회복지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지역 복지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기반 정비	지역 복지 재정의 확충	지역 주민의 관심 및 참여 확대	사회 복지 전문 인력의 확충	사회 복지 기관간 민관의 협력 수준	복지수요자의 시군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지역 사회 복지협 의체의 활동 수준	시군의 자체 사업의 비율	기타	계
전체		246	30.1	15.4	15.9	14.2	16.3	4.5	2.4	0.8	0.4	100.0
지역	도시	69	24.6	24.6	14.5	18.8	13.0	1.4	1.4	1.4	0.0	100.0
	농촌	106	32.1	15.1	13.2	12.3	17.0	7.5	2.8	0.0	0.0	100.0
	도농	71	32.4	7.0	21.1	12.7	18.3	2.8	2.8	1.4	1.4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26.7	20.0	13.3	6.7	6.7	6.7	20.0	0.0	0.0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6	33.3	5.6	13.9	16.7	25.0	0.0	2.8	0.0	2.8	100.0
	실무분과 위원	136	30.9	19.9	15.4	12.5	16.2	3.7	0.7	0.7	0.0	100.0
	사무국 인력	10	30.0	0.0	30.0	0.0	20.0	10.0	10.0	0.0	0.0	100.0
	비협의체 위원	18	5.6	22.2	16.7	27.8	16.7	5.6	0.0	5.6	0.0	100.0
성별	남자	77	28.6	16.9	10.4	18.2	11.7	5.2	6.5	1.3	1.3	100.0
	여자	163	30.7	15.3	17.8	12.3	19.0	3.7	0.6	0.6	0.0	100.0
연령대	20대	31	16.1	19.4	19.4	19.4	22.6	3.2	0.0	0.0	0.0	100.0
	30대	69	27.5	15.9	11.6	11.6	21.7	4.3	2.9	2.9	1.4	100.0
	40대	79	38.0	17.7	11.4	15.2	15.2	1.3	1.3	0.0	0.0	100.0
	50대 이상	50	30.0	12.0	18.0	18.0	10.0	6.0	6.0	0.0	0.0	100.0
학력	대출이하	12	25.0	25.0	25.0	0.0	16.7	8.3	0.0	0.0	0.0	100.0
	대출(전문대출포함)	159	30.2	15.1	15.1	13.8	18.9	4.4	1.9	0.6	0.0	100.0
	대학원 진학	14	50.0	7.1	14.3	14.3	7.1	0.0	7.1	0.0	0.0	100.0
	대학원 졸업	54	22.2	18.5	16.7	16.7	13.0	5.6	3.7	1.9	1.9	100.0
	기타	4	50.0	0.0	0.0	50.0	0.0	0.0	0.0	0.0	0.0	100.0
자격증	없음	43	44.2	7.0	16.3	11.6	7.0	9.3	4.7	0.0	0.0	100.0
	사회복지사 1급	68	26.5	19.1	11.8	19.1	13.2	5.9	2.9	1.5	0.0	100.0
	사회복지사 2급	111	27.0	18.0	19.8	10.8	18.9	2.7	1.8	0.0	0.9	100.0
	간호사	3	33.3	0.0	0.0	33.3	33.3	0.0	0.0	0.0	0.0	100.0
	요양보호사	6	50.0	16.7	0.0	0.0	33.3	0.0	0.0	0.0	0.0	100.0
	기타	15	20.0	6.7	13.3	26.7	26.7	0.0	0.0	6.7	0.0	100.0

3.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교류협력의 정도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구분		시례수	매우 잘 못 되고 있다	잘 못 되고 있다	보통이다	잘 되고 있다	매우 잘 되고 있다	계
전체		246	0.8	10.6	55.7	28.9	4.1	100.0
지역	도시	69	1.4	2.9	50.7	36.2	8.7	100.0
	농촌	106	.9	13.2	62.3	19.8	3.8	100.0
	도농	71	0.0	14.1	50.7	35.2	0.0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0.0	13.3	53.3	33.3	0.0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6	0.0	13.9	36.1	50.0	0.0	100.0
	실무분과 위원	136	.7	8.8	59.6	24.3	6.6	100.0
	사무국 인력	10	0.0	10.0	50.0	40.0	0.0	100.0
	비협의체 위원	18	0.0	16.7	50.0	27.8	5.6	100.0
성별	남자	77	2.6	10.4	48.1	35.1	3.9	100.0
	여자	163	0.0	11.0	58.3	26.4	4.3	100.0
연령대	20대	31	3.2	12.9	54.8	19.4	9.7	100.0
	30대	69	1.4	11.6	56.5	29.0	1.4	100.0
	40대	79	0.0	10.1	50.6	34.2	5.1	100.0
	50대 이상	50	0.0	10.0	52.0	34.0	4.0	100.0
학력	대졸이하	12	0.0	8.3	58.3	33.3	0.0	100.0
	대졸(전문대포함)	159	0.6	10.7	56.6	28.3	3.8	100.0
	대학원 진학	14	0.0	7.1	42.9	42.9	7.1	100.0
	대학원 졸	54	0.0	13.0	53.7	27.8	5.6	100.0
	기타	4	0.0	0.0	75.0	25.0	0.0	100.0
자격증	없음	43	2.3	11.6	44.2	37.2	4.7	100.0
	사회복지사 1급	68	0.0	8.8	54.4	30.9	5.9	100.0
	사회복지사 2급	111	0.9	10.8	61.3	23.4	3.6	100.0
	간호사	3	0.0	0.0	66.7	33.3	0.0	100.0
	요양보호사	6	0.0	16.7	50.0	33.3	0.0	100.0
	기타	15	0.0	13.3	53.3	33.3	0.0	100.0

4.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간의 교류협력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기관 및 시설 간 경쟁의식	기관 및 상이한 사업내용 및 운영여건	교류협력에 대한 낮은 기대감	일상적 업무의 과중화	책임있는 중심기관 선정의 어려움	기타	계
전체		230	12.6	27.4	20.9	29.1	8.3	1.7	100.0
지역	도시	64	4.7	32.8	6.3	50.0	6.3	0.0	100.0
	농촌	100	16.0	23.0	25.0	25.0	8.0	3.0	100.0
	도농	66	15.2	28.8	28.8	15.2	10.6	1.5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4	21.4	14.3	28.6	21.4	7.1	7.1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5	5.7	54.3	17.1	17.1	5.7	0.0	100.0
	실무분과 위원	126	13.5	25.4	19.8	31.0	8.7	1.6	100.0
	사무국 인력	10	40.0	10.0	20.0	30.0	0.0	0.0	100.0
	비협의체 위원	17	5.9	5.9	35.3	47.1	5.9	0.0	100.0
성별	남자	72	13.9	29.2	20.8	26.4	8.3	1.4	100.0
	여자	152	11.8	27.0	21.7	30.3	7.2	2.0	100.0
연령대	20대	29	3.4	17.2	17.2	51.7	6.9	3.4	100.0
	30대	65	10.8	26.2	23.1	30.8	9.2	0.0	100.0
	40대	75	17.3	26.7	18.7	29.3	6.7	1.3	100.0
	50대 이상	47	12.8	36.2	25.5	17.0	6.4	2.1	100.0
학력	대출이하	12	16.7	16.7	33.3	25.0	8.3	0.0	100.0
	대출(전문대포함)	150	13.3	23.3	23.3	30.0	8.7	1.3	100.0
	대학원 진학	11	9.1	36.4	18.2	18.2	18.2	0.0	100.0
	대학원 졸	51	9.8	41.2	13.7	27.5	3.9	3.9	100.0
	기타	4	25.0	25.0	0.0	50.0	0.0	0.0	100.0
자격증	없음	42	19.0	26.2	21.4	23.8	7.1	2.4	100.0
	사회복지사 1급	60	3.3	26.7	18.3	40.0	11.7	0.0	100.0
	사회복지사 2급	106	14.2	28.3	21.7	24.5	8.5	2.8	100.0
	간호사	3	33.3	33.3	0.0	33.3	0.0	0.0	100.0
	요양보호사	6	16.7	33.3	50.0	0.0	0.0	0.0	100.0
	기타	13	15.4	23.1	15.4	46.2	0.0	0.0	100.0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립이 복지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계
전체		244	1.6	8.2	33.2	42.6	14.3	100.0
지역	도시	69	0.0	4.3	20.3	50.7	24.6	100.0
	농촌	104	2.9	10.6	47.1	29.8	9.6	100.0
	도농	71	1.4	8.5	25.4	53.5	11.3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0.0	6.7	40.0	40.0	13.3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6	5.6	8.3	16.7	55.6	13.9	100.0
	실무분과 위원	135	0.0	7.4	30.4	45.2	17.0	100.0
	사무국 인력	10	0.0	0.0	20.0	60.0	20.0	100.0
	비협의체 위원	18	0.0	16.7	50.0	27.8	5.6	100.0
성별	남자	77	2.6	5.2	31.2	44.2	16.9	100.0
	여자	162	1.2	9.9	34.0	41.4	13.6	100.0
연령대	20대	31	3.2	9.7	48.4	22.6	16.1	100.0
	30대	68	2.9	10.3	27.9	48.5	10.3	100.0
	40대	78	1.3	3.8	30.8	46.2	17.9	100.0
	50대 이상	50	0.0	10.0	30.0	46.0	14.0	100.0
학력	대출이하	12	0.0	16.7	16.7	58.3	8.3	100.0
	대출(전문대포함)	158	1.3	8.2	40.5	36.1	13.9	100.0
	대학원 진학	13	0.0	0.0	15.4	69.2	15.4	100.0
	대학원 졸	54	1.9	7.4	20.4	51.9	18.5	100.0
	기타	4	0.0	25.0	25.0	50.0	0.0	100.0
자격증	없음	43	2.3	7.0	27.9	55.8	7.0	100.0
	사회복지사 1급	68	0.0	10.3	20.6	47.1	22.1	100.0
	사회복지사 2급	109	2.8	7.3	43.1	32.1	14.7	100.0
	간호사	3	0.0	0.0	66.7	0.0	33.3	100.0
	요양보호사	6	0.0	16.7	33.3	50.0	0.0	100.0
	기타	15	0.0	6.7	26.7	66.7	0.0	100.0

6. 업무이외 개인적으로 다른 복지기관(단체)의 관리자들을 많이 아는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246	2.0	19.5	41.1	31.3	6.1	100.0
지역	도시	69	4.3	15.9	36.2	36.2	7.2	100.0
	농촌	106	1.9	22.6	38.7	29.2	7.5	100.0
	도농	71	0.0	18.3	49.3	29.6	2.8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0.0	13.3	20.0	66.7	0.0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6	0.0	5.6	50.0	38.9	5.6	100.0
	실무분과 위원	136	2.9	16.9	42.6	30.1	7.4	100.0
	사무국 인력	10	0.0	0.0	30.0	60.0	10.0	100.0
	비협의체 위원	18	5.6	44.4	22.2	16.7	11.1	100.0
성별	남자	77	0.0	16.9	36.4	42.9	3.9	100.0
	여자	163	3.1	20.2	43.6	25.8	7.4	100.0
연령대	20대	31	6.5	29.0	35.5	29.0	0.0	100.0
	30대	69	2.9	24.6	47.8	20.3	4.3	100.0
	40대	79	1.3	15.2	32.9	40.5	10.1	100.0
	50대 이상	50	0.0	12.0	42.0	40.0	6.0	100.0
학력	대졸이하	12	0.0	25.0	58.3	16.7	0.0	100.0
	대졸(전문대포함)	159	3.1	24.5	39.6	29.6	3.1	100.0
	대학원 진학	14	0.0	14.3	42.9	21.4	21.4	100.0
	대학원 졸	54	0.0	3.7	40.7	44.4	11.1	100.0
	기타	4	0.0	25.0	25.0	25.0	25.0	100.0
자격증	없음	43	0.0	18.6	48.8	27.9	4.7	100.0
	사회복지사 1급	68	1.5	17.6	47.1	29.4	4.4	100.0
	사회복지사 2급	111	2.7	19.8	34.2	36.0	7.2	100.0
	간호사	3	0.0	33.3	33.3	33.3	0.0	100.0
	요양보호사	6	0.0	0.0	66.7	33.3	0.0	100.0
	기타	15	6.7	33.3	33.3	13.3	13.3	100.0

7. 복지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다른 복지기관(단체)들과 공유하는 정도

(단위 : 명, %)

구분		시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246	2.8	29.7	39.0	25.2	3.3	100.0
지역	도시	69	4.3	24.6	31.9	34.8	4.3	100.0
	농촌	106	1.9	34.9	36.8	22.6	3.8	100.0
	도농	71	2.8	26.8	49.3	19.7	1.4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0.0	33.3	20.0	46.7	0.0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6	0.0	19.4	50.0	30.6	0.0	100.0
	실무분과 위원	136	4.4	23.5	45.6	22.1	4.4	100.0
	사무국 인력	10	0.0	20.0	40.0	30.0	10.0	100.0
	비협의체 위원	18	0.0	50.0	16.7	27.8	5.6	100.0
성별	남자	77	2.6	32.5	32.5	29.9	2.6	100.0
	여자	163	2.5	28.2	42.3	23.3	3.7	100.0
연령대	20대	31	0.0	45.2	29.0	22.6	3.2	100.0
	30대	69	2.9	31.9	49.3	15.9	0.0	100.0
	40대	79	3.8	25.3	34.2	29.1	7.6	100.0
	50대 이상	50	2.0	18.0	42.0	36.0	2.0	100.0
학력	대출이하	12	0.0	33.3	50.0	16.7	0.0	100.0
	대출(전문대포함)	159	3.1	32.1	36.5	26.4	1.9	100.0
	대학원 진학	14	7.1	21.4	57.1	7.1	7.1	100.0
	대학원 졸	54	0.0	25.9	37.0	29.6	7.4	100.0
	기타	4	0.0	25.0	75.0	0.0	0.0	100.0
자격증	없음	43	2.3	20.9	32.6	37.2	7.0	100.0
	사회복지사 1급	68	0.0	27.9	45.6	23.5	2.9	100.0
	사회복지사 2급	111	2.7	34.2	36.0	24.3	2.7	100.0
	간호사	3	0.0	33.3	66.7	0.0	0.0	100.0
	요양보호사	6	0.0	16.7	66.7	16.7	0.0	100.0
	기타	15	20.0	33.3	33.3	13.3	0.0	100.0

8. 업무수행과 관련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외부 단체와의 공청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245	0.4	12.2	31.8	43.3	12.2	100.0
지역	도시	69	0.0	11.6	26.1	50.7	11.6	100.0
	농촌	105	1.0	16.2	35.2	35.2	12.4	100.0
	도농	71	0.0	7.0	32.4	47.9	12.7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0.0	0.0	20.0	60.0	20.0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6	0.0	0.0	25.0	61.1	13.9	100.0
	실무분과 위원	135	0.0	8.1	35.6	43.0	13.3	100.0
	사무국 인력	10	0.0	0.0	20.0	50.0	30.0	100.0
	비협의체 위원	18	0.0	33.3	44.4	16.7	5.6	100.0
성별	남자	77	0.0	6.5	27.3	50.6	15.6	100.0
	여자	162	0.6	14.2	34.0	40.1	11.1	100.0
연령대	20대	31	3.2	25.8	32.3	38.7	0.0	100.0
	30대	69	0.0	11.6	34.8	42.0	11.6	100.0
	40대	78	0.0	10.3	26.9	47.4	15.4	100.0
	50대 이상	50	0.0	4.0	34.0	48.0	14.0	100.0
학력	대출이하	12	0.0	16.7	41.7	33.3	8.3	100.0
	대출(전문대포함)	158	0.6	15.8	38.0	38.6	7.0	100.0
	대학원 진학	14	0.0	7.1	0.0	64.3	28.6	100.0
	대학원 졸	54	0.0	1.9	18.5	53.7	25.9	100.0
	기타	4	0.0	25.0	25.0	50.0	0.0	100.0
자격증	없음	43	0.0	2.3	37.2	44.2	16.3	100.0
	사회복지사 1급	67	0.0	9.0	26.9	50.7	13.4	100.0
	사회복지사 2급	111	0.9	18.0	34.2	36.0	10.8	100.0
	간호사	3	0.0	0.0	66.7	33.3	0.0	100.0
	요양보호사	6	0.0	33.3	16.7	33.3	16.7	100.0
	기타	15	0.0	6.7	20.0	66.7	6.7	100.0

9.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출범이후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소통 및 연계·조정이 원활해졌는지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246	0.4	11.4	38.2	39.8	10.2	100.0
지역	도시	69	0.0	8.7	23.2	50.7	17.4
	농촌	106	0.0	14.2	50.9	29.2	5.7
	도농	71	1.4	9.9	33.8	45.1	9.9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0.0	6.7	46.7	46.7	0.0
	실무협의체 위원	36	2.8	8.3	13.9	63.9	11.1
	실무분과 위원	136	0.0	10.3	37.5	39.0	13.2
	사무국 인력	10	0.0	10.0	50.0	20.0	20.0
	비협의체 위원	18	0.0	16.7	33.3	44.4	5.6
성별	남자	77	1.3	3.9	36.4	48.1	10.4
	여자	163	0.0	15.3	38.0	36.2	10.4
연령대	20대	31	0.0	12.9	45.2	41.9	0.0
	30대	69	1.4	10.1	44.9	33.3	10.1
	40대	79	0.0	12.7	29.1	38.0	20.3
	50대 이상	50	0.0	12.0	32.0	52.0	4.0
학력	대출이하	12	0.0	16.7	33.3	41.7	8.3
	대출(전문대포함)	159	0.0	12.6	42.8	36.5	8.2
	대학원 진학	14	0.0	0.0	21.4	50.0	28.6
	대학원 졸	54	1.9	9.3	27.8	48.1	13.0
	기타	4	0.0	25.0	50.0	25.0	0.0
자격증	없음	43	0.0	2.3	46.5	44.2	7.0
	사회복지사 1급	68	0.0	11.8	30.9	44.1	13.2
	사회복지사 2급	111	0.9	14.4	39.6	34.2	10.8
	간호사	3	0.0	0.0	66.7	33.3	0.0
	요양보호사	6	0.0	16.7	16.7	66.7	0.0
	기타	15	0.0	13.3	40.0	40.0	6.7

10. 다른 단체들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응할 용의의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246	0.0	0.8	12.2	64.6	22.4	100.0
지역	도시	69	0.0	0.0	7.2	59.4	33.3	100.0
	농촌	106	0.0	1.9	18.9	60.4	18.9	100.0
	도농	71	0.0	0.0	7.0	76.1	16.9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0.0	0.0	0.0	73.3	26.7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6	0.0	0.0	2.8	77.8	19.4	100.0
	실무분과 위원	136	0.0	1.5	14.0	61.8	22.8	100.0
	사무국 인력	10	0.0	0.0	10.0	50.0	40.0	100.0
	비협의체 위원	18	0.0	0.0	16.7	66.7	16.7	100.0
성별	남자	77	0.0	0.0	11.7	62.3	26.0	100.0
	여자	163	0.0	1.2	12.3	65.6	20.9	100.0
연령대	20대	31	0.0	0.0	25.8	67.7	6.5	100.0
	30대	69	0.0	0.0	14.5	60.9	24.6	100.0
	40대	79	0.0	2.5	8.9	59.5	29.1	100.0
	50대 이상	50	0.0	0.0	6.0	76.0	18.0	100.0
학력	대학이하	12	0.0	0.0	25.0	66.7	8.3	100.0
	대학(전문대포함)	159	0.0	1.3	13.2	67.9	17.6	100.0
	대학원 진학	14	0.0	0.0	0.0	57.1	42.9	100.0
	대학원 졸	54	0.0	0.0	9.3	55.6	35.2	100.0
	기타	4	0.0	0.0	0.0	75.0	25.0	100.0
자격증	없음	43	0.0	0.0	11.6	65.1	23.3	100.0
	사회복지사 1급	68	0.0	1.5	11.8	63.2	23.5	100.0
	사회복지사 2급	111	0.0	0.9	14.4	62.2	22.5	100.0
	간호사	3	0.0	0.0	0.0	100.0	0.0	100.0
	요양보호사	6	0.0	0.0	16.7	83.3	0.0	100.0
	기타	15	0.0	0.0	0.0	73.3	26.7	100.0

11. 업무수행과 관련해 접촉하게 되는 다른 유관기관의 관리자들에 대해서 친밀하게 느끼는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246	0.0	8.1	30.5	52.4	8.9	100.0
지역	도시	69	0.0	10.1	31.9	46.4	11.6
	농촌	106	0.0	10.4	31.1	50.9	7.5
	도농	71	0.0	2.8	28.2	60.6	8.5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0.0	0.0	20.0	80.0	0.0
	실무협의체 위원	36	0.0	5.6	30.6	55.6	8.3
	실무분과 위원	136	0.0	7.4	27.2	54.4	11.0
	사무국 인력	10	0.0	0.0	30.0	60.0	10.0
	비협의체 위원	18	0.0	16.7	44.4	33.3	5.6
성별	남자	77	0.0	3.9	24.7	62.3	9.1
	여자	163	0.0	9.8	33.7	47.9	8.6
연령대	20대	31	0.0	19.4	29.0	48.4	3.2
	30대	69	0.0	5.8	46.4	43.5	4.3
	40대	79	0.0	6.3	20.3	59.5	13.9
	50대 이상	50	0.0	8.0	24.0	60.0	8.0
학력	대졸이하	12	0.0	0.0	58.3	41.7	0.0
	대졸(전문대포함)	159	0.0	10.1	31.4	49.7	8.8
	대학원 진학	14	0.0	0.0	21.4	64.3	14.3
	대학원 졸	54	0.0	7.4	20.4	61.1	11.1
	기타	4	0.0	0.0	50.0	50.0	0.0
자격증	없음	43	0.0	0.0	30.2	60.5	9.3
	사회복지사 1급	68	0.0	11.8	25.0	54.4	8.8
	사회복지사 2급	111	0.0	9.0	33.3	47.7	9.9
	간호사	3	0.0	0.0	33.3	66.7	0.0
	요양보호사	6	0.0	0.0	50.0	50.0	0.0
	기타	15	0.0	13.3	26.7	53.3	6.7

12. 업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단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246	0.8	12.2	39.8	43.1	4.1	100.0
지역	도시	69	2.9	11.6	27.5	53.6	4.3	100.0
	농촌	106	0.0	16.0	35.8	42.5	5.7	100.0
	도농	71	0.0	7.0	57.7	33.8	1.4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0.0	0.0	33.3	60.0	6.7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6	0.0	8.3	52.8	38.9	0.0	100.0
	실무분과 위원	136	0.7	8.8	35.3	50.0	5.1	100.0
	사무국 인력	10	0.0	10.0	50.0	20.0	20.0	100.0
	비협의체 위원	18	5.6	33.3	22.2	38.9	0.0	100.0
성별	남자	77	0.0	5.2	36.4	54.5	3.9	100.0
	여자	163	1.2	14.7	41.7	38.0	4.3	100.0
연령대	20대	31	3.2	22.6	38.7	35.5	0.0	100.0
	30대	69	1.4	14.5	43.5	39.1	1.4	100.0
	40대	79	0.0	7.6	38.0	46.8	7.6	100.0
	50대 이상	50	0.0	6.0	38.0	50.0	6.0	100.0
학력	대학이하	12	0.0	8.3	50.0	41.7	0.0	100.0
	대학(전문대포함)	159	1.3	13.8	44.7	38.4	1.9	100.0
	대학원 진학	14	0.0	14.3	35.7	28.6	21.4	100.0
	대학원 졸	54	0.0	5.6	22.2	64.8	7.4	100.0
	기타	4	0.0	25.0	50.0	25.0	0.0	100.0
자격증	없음	43	0.0	2.3	44.2	48.8	4.7	100.0
	사회복지사 1급	68	1.5	13.2	35.3	48.5	1.5	100.0
	사회복지사 2급	111	0.0	14.4	40.5	39.6	5.4	100.0
	간호사	3	0.0	33.3	66.7	0.0	0.0	100.0
	요양보호사	6	0.0	0.0	50.0	50.0	0.0	100.0
	기타	15	6.7	20.0	33.3	33.3	6.7	100.0

13. 운영하는 복지기관(시설)의 전체적인 업무성과에 관련해 다른 단체들과 업무
연계활동은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지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245	9.8	29.8	43.7	15.9	0.8	100.0
지역	도시	69	11.6	33.3	40.6	14.5	0.0
	농촌	105	8.6	24.8	48.6	16.2	1.9
	도농	71	9.9	33.8	39.4	16.9	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4	14.3	14.3	64.3	7.1	0.0
	실무협의체 위원	36	8.3	27.8	47.2	16.7	0.0
	실무분과 위원	136	9.6	36.8	33.8	18.4	1.5
	사무국 인력	10	0.0	20.0	50.0	30.0	0.0
	비협의체 위원	18	0.0	22.2	66.7	11.1	0.0
성별	남자	76	5.3	27.6	47.4	19.7	0.0
	여자	163	12.3	31.3	41.1	14.1	1.2
연령대	20대	31	3.2	25.8	58.1	12.9	0.0
	30대	69	10.1	34.8	42.0	13.0	0.0
	40대	79	8.9	29.1	39.2	20.3	2.5
	50대 이상	49	10.2	26.5	44.9	18.4	0.0
학력	대출이하	12	0.0	16.7	75.0	8.3	0.0
	대출(전문대포함)	159	10.7	28.9	43.4	15.7	1.3
	대학원 진학	14	14.3	42.9	42.9	0.0	0.0
	대학원 졸	53	7.5	35.8	34.0	22.6	0.0
	기타	4	0.0	0.0	75.0	25.0	0.0
자격증	없음	43	7.0	37.2	41.9	11.6	2.3
	사회복지사 1급	67	9.0	40.3	37.3	13.4	0.0
	사회복지사 2급	111	11.7	23.4	46.8	17.1	0.9
	간호사	3	0.0	33.3	33.3	33.3	0.0
	요양보호사	6	16.7	16.7	33.3	33.3	0.0
	기타	15	6.7	13.3	60.0	20.0	0.0

1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실정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별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	계
전체		245	0.0	7.3	38.4	42.0	12.2	100.0
지역	도시	68	0.0	0.0	20.6	51.5	27.9	100.0
	농촌	106	0.0	10.4	57.5	26.4	5.7	100.0
	도농	71	0.0	9.9	26.8	56.3	7.0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0.0	6.7	33.3	53.3	6.7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6	0.0	8.3	30.6	44.4	16.7	100.0
	실무분과 위원	135	0.0	6.7	34.8	41.5	17.0	100.0
	사무국 인력	10	0.0	10.0	40.0	50.0	0.0	100.0
	비협의체 위원	18	0.0	11.1	33.3	55.6	0.0	100.0
성별	남자	77	0.0	6.5	31.2	48.1	14.3	100.0
	여자	162	0.0	8.0	39.5	40.7	11.7	100.0
연령대	20대	31	0.0	3.2	48.4	32.3	16.1	100.0
	30대	69	0.0	13.0	36.2	37.7	13.0	100.0
	40대	79	0.0	6.3	32.9	43.0	17.7	100.0
	50대 이상	49	0.0	6.1	30.6	59.2	4.1	100.0
학력	대출이하	12	0.0	0.0	41.7	58.3	0.0	100.0
	대출(전문대포함)	158	0.0	7.6	43.7	34.8	13.9	100.0
	대학원 진학	14	0.0	0.0	14.3	71.4	14.3	100.0
	대학원 졸	54	0.0	11.1	24.1	53.7	11.1	100.0
	기타	4	0.0	0.0	50.0	50.0	0.0	100.0
자격증	없음	43	0.0	7.0	32.6	48.8	11.6	100.0
	사회복지사 1급	68	0.0	4.4	33.8	42.6	19.1	100.0
	사회복지사 2급	110	0.0	7.3	47.3	35.5	10.0	100.0
	간호사	3	0.0	0.0	33.3	66.7	0.0	100.0
	요양보호사	6	0.0	33.3	16.7	50.0	0.0	100.0
	기타	15	0.0	13.3	20.0	60.0	6.7	100.0

1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간위원 위촉과정에 대해 신뢰의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244	0.0	9.8	35.7	36.9	17.6	100.0
지역	도시	69	0.0	2.9	36.2	34.8	26.1	100.0
	농촌	105	0.0	13.3	46.7	32.4	7.6	100.0
	도농	70	0.0	11.4	18.6	45.7	24.3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0.0	0.0	20.0	53.3	26.7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5	0.0	11.4	25.7	37.1	25.7	100.0
	실무분과 위원	135	0.0	9.6	33.3	39.3	17.8	100.0
	사무국 인력	10	0.0	10.0	20.0	50.0	20.0	100.0
	비협의체 위원	18	0.0	11.1	44.4	33.3	11.1	100.0
성별	남자	77	0.0	6.5	28.6	39.0	26.0	100.0
	여자	161	0.0	11.2	37.9	36.6	14.3	100.0
연령대	20대	30	0.0	3.3	56.7	36.7	3.3	100.0
	30대	69	0.0	11.6	33.3	37.7	17.4	100.0
	40대	78	0.0	9.0	33.3	33.3	24.4	100.0
	50대 이상	50	0.0	12.0	28.0	40.0	20.0	100.0
학력	대졸이하	12	0.0	8.3	41.7	33.3	16.7	100.0
	대졸(전문대포함)	157	0.0	8.9	40.8	35.0	15.3	100.0
	대학원 진학	14	0.0	0.0	28.6	50.0	21.4	100.0
	대학원 졸	54	0.0	11.1	20.4	44.4	24.1	100.0
	기타	4	0.0	50.0	25.0	0.0	25.0	100.0
자격증	없음	43	0.0	11.6	32.6	41.9	14.0	100.0
	사회복지사 1급	68	0.0	5.9	27.9	44.1	22.1	100.0
	사회복지사 2급	109	0.0	12.8	40.4	32.1	14.7	100.0
	간호사	3	0.0	0.0	66.7	33.3	0.0	100.0
	요양보호사	6	0.0	16.7	50.0	33.3	0.0	100.0
	기타	15	0.0	0.0	33.3	26.7	40.0	100.0

1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보건, 복지, 시민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지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244	1.2	13.9	32.8	46.3	5.7	100.0
지역	도시	69	1.4	7.2	24.6	56.5	10.1
	농촌	105	0.0	19.0	46.7	30.5	3.8
	도농	70	2.9	12.9	20.0	60.0	4.3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0.0	0.0	20.0	73.3	6.7
	실무협의체 위원	35	2.9	11.4	17.1	68.6	0.0
	실무분과 위원	136	1.5	12.5	32.4	46.3	7.4
	사무국 인력	10	0.0	10.0	40.0	30.0	20.0
	비협의체 위원	18	0.0	27.8	38.9	27.8	5.6
성별	남자	76	2.6	5.3	31.6	52.6	7.9
	여자	162	0.6	17.9	32.1	44.4	4.9
연령대	20대	29	0.0	10.3	58.6	24.1	6.9
	30대	69	2.9	13.0	26.1	58.0	0.0
	40대	79	1.3	15.2	25.3	49.4	8.9
	50대 이상	50	0.0	16.0	30.0	44.0	10.0
학력	대출이하	12	0.0	16.7	50.0	33.3	0.0
	대출(전문대포함)	158	0.6	15.8	34.8	43.7	5.1
	대학원 진학	14	0.0	0.0	21.4	64.3	14.3
	대학원 졸	54	3.7	5.6	27.8	55.6	7.4
	기타	4	0.0	75.0	0.0	25.0	0.0
자격증	없음	42	0.0	11.9	40.5	40.5	7.1
	사회복지사 1급	68	0.0	5.9	30.9	60.3	2.9
	사회복지사 2급	110	1.8	17.3	32.7	40.0	8.2
	간호사	3	0.0	33.3	33.3	33.3	0.0
	요양보호사	6	0.0	66.7	0.0	33.3	0.0
	기타	15	6.7	6.7	33.3	53.3	0.0

17. 시군의 공무원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나 활동에 많이 참석하는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245	3.7	16.3	32.7	40.0	7.3	100.0
지역	도시	68	2.9	7.4	27.9	48.5	13.2	100.0
	농촌	106	3.8	22.6	38.7	32.1	2.8	100.0
	도농	71	4.2	15.5	28.2	43.7	8.5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0.0	13.3	20.0	53.3	13.3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5	5.7	11.4	20.0	51.4	11.4	100.0
	실무분과 위원	136	2.2	16.9	36.0	38.2	6.6	100.0
	사무국 인력	10	0.0	0.0	20.0	60.0	20.0	100.0
	비협의체 위원	18	5.6	16.7	38.9	38.9	0.0	100.0
성별	남자	77	6.5	6.5	26.0	51.9	9.1	100.0
	여자	162	2.5	19.8	35.2	35.8	6.8	100.0
연령대	20대	31	3.2	16.1	45.2	32.3	3.2	100.0
	30대	69	5.8	13.0	36.2	39.1	5.8	100.0
	40대	78	3.8	17.9	28.2	39.7	10.3	100.0
	50대 이상	50	2.0	12.0	24.0	52.0	10.0	100.0
학력	대출이하	12	8.3	8.3	25.0	58.3	0.0	100.0
	대출(전문대포함)	158	3.2	19.0	36.1	36.7	5.1	100.0
	대학원 진학	14	0.0	7.1	21.4	42.9	28.6	100.0
	대학원 졸	54	5.6	11.1	22.2	50.0	11.1	100.0
	기타	4	0.0	25.0	75.0	0.0	0.0	100.0
자격증	없음	42	2.4	9.5	31.0	47.6	9.5	100.0
	사회복지사 1급	68	0.0	10.3	33.8	48.5	7.4	100.0
	사회복지사 2급	111	5.4	21.6	34.2	32.4	6.3	100.0
	간호사	3	0.0	0.0	66.7	33.3	0.0	100.0
	요양보호사	6	16.7	33.3	16.7	16.7	16.7	100.0
	기타	15	6.7	20.0	20.0	46.7	6.7	100.0

18. 자신이 속한 시군의 대표협의체 활동은 활발한지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244	3.3	18.4	36.5	36.5	5.3	100.0
지역	도시	68	1.5	8.8	17.6	58.8	13.2	100.0
	농촌	105	3.8	21.9	45.7	26.7	1.9	100.0
	도농	71	4.2	22.5	40.8	29.6	2.8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0.0	26.7	26.7	46.7	0.0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6	5.6	19.4	36.1	36.1	2.8	100.0
	실무분과 위원	134	3.7	14.2	35.8	38.8	7.5	100.0
	사무국 인력	10	0.0	50.0	10.0	30.0	10.0	100.0
	비협의체 위원	18	0.0	22.2	33.3	44.4	0.0	100.0
성별	남자	77	5.2	11.7	35.1	41.6	6.5	100.0
	여자	161	2.5	21.7	36.0	34.8	5.0	100.0
연령대	20대	31	3.2	22.6	38.7	32.3	3.2	100.0
	30대	69	5.8	11.6	42.0	37.7	2.9	100.0
	40대	78	2.6	21.8	25.6	39.7	10.3	100.0
	50대 이상	49	2.0	22.4	34.7	36.7	4.1	100.0
학력	대출이하	12	0.0	33.3	41.7	25.0	0.0	100.0
	대출(전문대포함)	158	2.5	18.4	38.6	34.8	5.7	100.0
	대학원 진학	14	0.0	7.1	21.4	64.3	7.1	100.0
	대학원 졸	53	7.5	17.0	35.8	34.0	5.7	100.0
	기타	4	0.0	50.0	0.0	50.0	0.0	100.0
자격증	없음	43	4.7	16.3	32.6	46.5	0.0	100.0
	사회복지사 1급	68	1.5	19.1	41.2	29.4	8.8	100.0
	사회복지사 2급	110	3.6	18.2	36.4	35.5	6.4	100.0
	간호사	3	0.0	0.0	0.0	100.0	0.0	100.0
	요양보호사	5	0.0	20.0	60.0	20.0	0.0	100.0
	기타	15	6.7	26.7	26.7	40.0	0.0	100.0

19. 자신이 속한 시군의 실무협의체 활동은 활발한지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245	1.2	11.8	40.0	38.0	9.0	100.0
지역	도시	69	0.0	5.8	18.8	56.5	18.8	100.0
	농촌	105	1.9	16.2	53.3	23.8	4.8	100.0
	도농	71	1.4	11.3	40.8	40.8	5.6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0.0	6.7	20.0	60.0	13.3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6	2.8	5.6	38.9	47.2	5.6	100.0
	실무분과 위원	135	0.7	10.4	38.5	39.3	11.1	100.0
	사무국 인력	10	0.0	20.0	40.0	30.0	10.0	100.0
	비협의체 위원	18	0.0	11.1	50.0	33.3	5.6	100.0
성별	남자	77	1.3	6.5	29.9	50.6	11.7	100.0
	여자	162	1.2	13.6	44.4	32.7	8.0	100.0
연령대	20대	31	3.2	12.9	45.2	32.3	6.5	100.0
	30대	69	1.4	13.0	37.7	43.5	4.3	100.0
	40대	78	0.0	10.3	43.6	32.1	14.1	100.0
	50대 이상	50	2.0	8.0	32.0	46.0	12.0	100.0
학력	대학이하	12	0.0	0.0	58.3	41.7	0.0	100.0
	대학(전문대포함)	158	0.6	13.9	44.9	33.5	7.0	100.0
	대학원 진학	14	0.0	7.1	28.6	42.9	21.4	100.0
	대학원 졸	54	3.7	9.3	22.2	50.0	14.8	100.0
	기타	4	0.0	25.0	50.0	25.0	0.0	100.0
자격증	없음	43	2.3	7.0	34.9	48.8	7.0	100.0
	사회복지사 1급	68	0.0	8.8	36.8	41.2	13.2	100.0
	사회복지사 2급	110	1.8	13.6	45.5	30.9	8.2	100.0
	간호사	3	0.0	0.0	66.7	33.3	0.0	100.0
	요양보호사	6	0.0	16.7	66.7	0.0	16.7	100.0
	기타	15	0.0	26.7	13.3	60.0	0.0	100.0

20. 자신이 속한 시군의 실무분과의 활성화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246	0.4	8.9	36.2	39.4	15.0	100.0
지역	도시	69	0.0	4.3	24.6	44.9	26.1	100.0
	농촌	106	0.0	9.4	51.9	30.2	8.5	100.0
	도농	71	1.4	12.7	23.9	47.9	14.1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0.0	0.0	20.0	66.7	13.3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6	0.0	8.3	27.8	44.4	19.4	100.0
	실무분과 위원	136	0.7	6.6	35.3	39.0	18.4	100.0
	사무국 인력	10	0.0	20.0	10.0	50.0	20.0	100.0
	비협의체 위원	18	0.0	22.2	44.4	27.8	5.6	100.0
성별	남자	77	0.0	3.9	27.3	53.2	15.6	100.0
	여자	163	0.6	11.7	38.7	33.7	15.3	100.0
연령대	20대	31	0.0	12.9	41.9	35.5	9.7	100.0
	30대	69	0.0	14.5	36.2	37.7	11.6	100.0
	40대	79	0.0	2.5	39.2	36.7	21.5	100.0
	50대 이상	50	2.0	6.0	24.0	50.0	18.0	100.0
학력	대출이하	12	0.0	16.7	25.0	50.0	8.3	100.0
	대출(전문대포함)	159	0.6	8.2	42.1	36.5	12.6	100.0
	대학원 진학	14	0.0	7.1	14.3	50.0	28.6	100.0
	대학원 졸	54	0.0	5.6	24.1	48.1	22.2	100.0
	기타	4	0.0	50.0	50.0	0.0	0.0	100.0
자격증	없음	43	0.0	7.0	27.9	44.2	20.9	100.0
	사회복지사 1급	68	0.0	7.4	32.4	38.2	22.1	100.0
	사회복지사 2급	111	0.9	9.9	42.3	36.9	9.9	100.0
	간호사	3	0.0	0.0	66.7	33.3	0.0	100.0
	요양보호사	6	0.0	16.7	33.3	33.3	16.7	100.0
	기타	15	0.0	13.3	26.7	53.3	6.7	100.0

2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의결 처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245	2.0	17.6	44.5	33.1	2.9	100.0
지역	도시	69	0.0	4.3	37.7	55.1	2.9	100.0
	농촌	105	2.9	26.7	50.5	15.2	4.8	100.0
	도농	71	2.8	16.9	42.3	38.0	0.0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0.0	13.3	33.3	53.3	0.0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6	5.6	13.9	38.9	41.7	0.0	100.0
	실무분과 위원	135	1.5	16.3	42.2	34.8	5.2	100.0
	사무국 인력	10	10.0	20.0	50.0	20.0	0.0	100.0
	비협의체 위원	18	0.0	16.7	66.7	16.7	0.0	100.0
성별	남자	77	2.6	10.4	41.6	42.9	2.6	100.0
	여자	162	1.9	20.4	45.1	29.6	3.1	100.0
연령대	20대	30	0.0	13.3	56.7	26.7	3.3	100.0
	30대	69	1.4	14.5	47.8	33.3	2.9	100.0
	40대	79	2.5	15.2	36.7	40.5	5.1	100.0
	50대 이상	50	2.0	20.0	42.0	36.0	0.0	100.0
학력	대출이하	12	0.0	16.7	66.7	16.7	0.0	100.0
	대출(전문대포함)	158	1.9	20.3	41.1	32.3	4.4	100.0
	대학원 진학	14	0.0	7.1	42.9	50.0	0.0	100.0
	대학원 졸	54	3.7	11.1	48.1	37.0	0.0	100.0
	기타	4	0.0	25.0	50.0	25.0	0.0	100.0
자격증	없음	43	2.3	18.6	48.8	20.9	9.3	100.0
	사회복지사 1급	68	0.0	13.2	42.6	42.6	1.5	100.0
	사회복지사 2급	110	3.6	20.9	42.7	30.9	1.8	100.0
	간호사	3	0.0	0.0	66.7	33.3	0.0	100.0
	요양보호사	6	0.0	33.3	50.0	16.7	0.0	100.0
	기타	15	0.0	6.7	46.7	46.7	0.0	100.0

2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역할에 비해 선발기준이 적절한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계
전체		242	9.5	90.5	100.0
지역	도시	67	13.4	86.6	100.0
	농촌	105	9.5	90.5	100.0
	도농	70	5.7	94.3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0.0	100.0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6	5.6	94.4	100.0
	실무분과 위원	133	8.3	91.7	100.0
	사무국 인력	10	20.0	80.0	100.0
	비협의체 위원	18	11.1	88.9	100.0
성별	남자	77	11.7	88.3	100.0
	여자	159	8.2	91.8	100.0
연령대	20대	31	9.7	90.3	100.0
	30대	67	9.0	91.0	100.0
	40대	79	11.4	88.6	100.0
	50대 이상	48	4.2	95.8	100.0
학력	대출이하	12	16.7	83.3	100.0
	대출(전문대포함)	156	7.7	92.3	100.0
	대학원 진학	14	7.1	92.9	100.0
	대학원 졸	53	9.4	90.6	100.0
	기타	4	25.0	75.0	100.0
자격증	없음	42	14.3	85.7	100.0
	사회복지사 1급	67	4.5	95.5	100.0
	사회복지사 2급	110	10.9	89.1	100.0
	간호사	3	0.0	100.0	100.0
	요양보호사	6	16.7	83.3	100.0
	기타	14	7.1	92.9	100.0

23. 협의체회의 안건은 주로 관에서 준비하며, 관의 의도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정도

(단위 : 명, %)

구분		시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243	3.7	37.0	55.1	4.1	100.0
지역	도시	69	2.9	43.5	44.9	8.7	100.0
	농촌	104	6.7	34.6	55.8	2.9	100.0
	도농	70	0.0	34.3	64.3	1.4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0.0	46.7	53.3	0.0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6	0.0	38.9	52.8	8.3	100.0
	실무분과 위원	133	2.3	40.6	52.6	4.5	100.0
	사무국 인력	10	20.0	40.0	40.0	0.0	100.0
	비협의체 위원	18	5.6	11.1	77.8	5.6	100.0
성별	남자	77	1.3	36.4	57.1	5.2	100.0
	여자	160	5.0	37.5	53.8	3.8	100.0
연령대	20대	30	3.3	23.3	70.0	3.3	100.0
	30대	69	4.3	37.7	55.1	2.9	100.0
	40대	78	2.6	46.2	44.9	6.4	100.0
	50대 이상	50	6.0	34.0	56.0	4.0	100.0
학력	대졸이하	12	0.0	33.3	66.7	0.0	100.0
	대학(전문대포함)	156	3.2	35.9	55.8	5.1	100.0
	대학원 진학	14	7.1	35.7	57.1	0.0	100.0
	대학원 졸	54	3.7	42.6	51.9	1.9	100.0
	기타	4	0.0	25.0	50.0	25.0	100.0
자격증	없음	43	11.6	14.0	69.8	4.7	100.0
	사회복지사 1급	68	0.0	47.1	50.0	2.9	100.0
	사회복지사 2급	108	2.8	38.0	54.6	4.6	100.0
	간호사	3	0.0	0.0	100.0	0.0	100.0
	요양보호사	6	0.0	33.3	66.7	0.0	100.0
	기타	15	6.7	60.0	26.7	6.7	100.0

24. 시군은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해를 위한 교육, 워크숍이 실시되는지 여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계
전체		242	22.7	77.3	100.0
지역	도시	67	14.9	85.1	100.0
	농촌	105	24.8	75.2	100.0
	도농	70	27.1	72.9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20.0	80.0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6	38.9	61.1	100.0
	실무분과 위원	133	17.3	82.7	100.0
	사무국 인력	10	30.0	70.0	100.0
	비협의체 위원	18	38.9	61.1	100.0
성별	남자	75	21.3	78.7	100.0
	여자	161	24.2	75.8	100.0
연령대	20대	29	17.2	82.8	100.0
	30대	69	31.9	68.1	100.0
	40대	78	14.1	85.9	100.0
	50대 이상	49	24.5	75.5	100.0
학력	대졸이하	12	33.3	66.7	100.0
	대졸(전문대포함)	156	22.4	77.6	100.0
	대학원 진학	14	28.6	71.4	100.0
	대학원 졸	53	20.8	79.2	100.0
	기타	4	25.0	75.0	100.0
자격증	없음	43	16.3	83.7	100.0
	사회복지사 1급	68	16.2	83.8	100.0
	사회복지사 2급	108	27.8	72.2	100.0
	간호사	3	0.0	100.0	100.0
	요양보호사	5	60.0	40.0	100.0
	기타	15	26.7	73.3	100.0

25.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의 참여는 활발한 정도

(단위 : 명, %)

구분		시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246	0.8	12.2	40.7	38.6	7.7	100.0
지역	도시	69	0.0	10.1	24.6	49.3	15.9	100.0
	농촌	106	0.0	13.2	55.7	27.4	3.8	100.0
	도농	71	2.8	12.7	33.8	45.1	5.6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0.0	13.3	20.0	66.7	0.0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6	2.8	5.6	30.6	47.2	13.9	100.0
	실무분과 위원	136	0.0	10.3	40.4	42.6	6.6	100.0
	사무국 인력	10	0.0	20.0	40.0	20.0	20.0	100.0
	비협의체 위원	18	0.0	16.7	44.4	27.8	11.1	100.0
성별	남자	77	1.3	7.8	29.9	50.6	10.4	100.0
	여자	163	0.6	14.1	44.8	33.7	6.7	100.0
연령대	20대	31	0.0	9.7	58.1	25.8	6.5	100.0
	30대	69	1.4	18.8	34.8	40.6	4.3	100.0
	40대	79	0.0	6.3	40.5	38.0	15.2	100.0
	50대 이상	50	0.0	12.0	36.0	48.0	4.0	100.0
학력	대출이하	12	0.0	0.0	50.0	50.0	0.0	100.0
	대출(전문대포함)	159	0.0	13.8	42.1	39.0	5.0	100.0
	대학원 진학	14	7.1	21.4	28.6	28.6	14.3	100.0
	대학원 졸	54	1.9	9.3	29.6	42.6	16.7	100.0
	기타	4	0.0	0.0	100.0	0.0	0.0	100.0
자격증	없음	43	0.0	9.3	46.5	39.5	4.7	100.0
	사회복지사 1급	68	0.0	10.3	35.3	39.7	14.7	100.0
	사회복지사 2급	111	1.8	13.5	43.2	36.0	5.4	100.0
	간호사	3	0.0	0.0	66.7	33.3	0.0	100.0
	요양보호사	6	0.0	33.3	0.0	66.7	0.0	100.0
	기타	15	0.0	13.3	40.0	40.0	6.7	100.0

26.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는 갈등과 중복의 소지가 있는지 평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244	7.4	53.7	34.4	4.5	100.0
지역	도시	69	11.6	47.8	37.7	2.9	100.0
	농촌	106	6.6	44.3	41.5	7.5	100.0
	도농	69	4.3	73.9	20.3	1.4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6.7	53.3	33.3	6.7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5	5.7	57.1	34.3	2.9	100.0
	실무분과 위원	135	8.1	56.3	28.9	6.7	100.0
	사무국 인력	10	30.0	30.0	40.0	0.0	100.0
	비협의체 위원	18	5.6	50.0	44.4	0.0	100.0
성별	남자	76	7.9	51.3	35.5	5.3	100.0
	여자	162	7.4	54.9	33.3	4.3	100.0
연령대	20대	31	9.7	41.9	48.4	0.0	100.0
	30대	69	4.3	62.3	27.5	5.8	100.0
	40대	78	7.7	47.4	41.0	3.8	100.0
	50대 이상	49	10.2	59.2	24.5	6.1	100.0
학력	대졸이하	12	8.3	66.7	25.0	0.0	100.0
	대졸(전문대포함)	158	5.1	55.1	35.4	4.4	100.0
	대학원 진학	14	7.1	57.1	28.6	7.1	100.0
	대학원 졸	53	15.1	49.1	30.2	5.7	100.0
	기타	4	0.0	50.0	50.0	0.0	100.0
자격증	없음	43	2.3	51.2	34.9	11.6	100.0
	사회복지사 1급	67	7.5	61.2	29.9	1.5	100.0
	사회복지사 2급	110	10.0	50.9	36.4	2.7	100.0
	간호사	3	0.0	66.7	33.3	0.0	100.0
	요양보호사	6	0.0	66.7	33.3	0.0	100.0
	기타	15	6.7	40.0	40.0	13.3	100.0

27.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 운영목표와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246	0.4	13.8	35.4	46.7	3.7	100.0
지역	도시	69	0.0	5.8	18.8	69.6	5.8
	농촌	106	0.0	19.8	47.2	31.1	1.9
	도농	71	1.4	12.7	33.8	47.9	4.2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0.0	0.0	53.3	46.7	0.0
	실무협의체 위원	36	0.0	22.2	22.2	50.0	5.6
	실무분과 위원	136	0.7	14.7	31.6	49.3	3.7
	사무국 인력	10	0.0	0.0	40.0	50.0	10.0
	비협의체 위원	18	0.0	16.7	33.3	44.4	5.6
성별	남자	77	1.3	6.5	35.1	49.4	7.8
	여자	163	0.0	17.8	35.0	45.4	1.8
연령대	20대	31	0.0	9.7	25.8	61.3	3.2
	30대	69	0.0	26.1	31.9	40.6	1.4
	40대	79	1.3	7.6	40.5	41.8	8.9
	50대 이상	50	0.0	14.0	28.0	58.0	0.0
학력	대졸이하	12	0.0	25.0	25.0	50.0	0.0
	대졸(전문대포함)	159	0.6	13.8	39.0	43.4	3.1
	대학원 진학	14	0.0	14.3	21.4	57.1	7.1
	대학원 졸	54	0.0	9.3	33.3	51.9	5.6
	기타	4	0.0	50.0	0.0	50.0	0.0
자격증	없음	43	0.0	11.6	34.9	48.8	4.7
	사회복지사 1급	68	0.0	7.4	33.8	52.9	5.9
	사회복지사 2급	111	0.9	16.2	37.8	43.2	1.8
	간호사	3	0.0	33.3	33.3	33.3	0.0
	요양보호사	6	0.0	33.3	50.0	16.7	0.0
	기타	15	0.0	20.0	20.0	53.3	6.7

2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3층 구조는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계
전체		242	40.9	59.1	100.0
지역	도시	68	30.9	69.1	100.0
	농촌	105	15.2	84.8	100.0
	도농	70	27.1	72.9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26.7	73.3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6	33.3	66.7	100.0
	실무분과 위원	134	17.2	82.8	100.0
	사무국 인력	10	10.0	90.0	100.0
	비협의체 위원	17	17.6	82.4	100.0
성별	남자	76	51.3	48.7	100.0
	여자	160	36.9	63.1	100.0
연령대	20대	30	26.7	73.3	100.0
	30대	67	43.3	56.7	100.0
	40대	79	40.5	59.5	100.0
	50대 이상	49	55.1	44.9	100.0
학력	대졸이하	12	33.3	66.7	100.0
	대졸(전문대포함)	155	38.7	61.3	100.0
	대학원 진학	14	71.4	28.6	100.0
	대학원 졸	54	42.6	57.4	100.0
	기타	4	0.0	100.0	100.0
자격증	없음	43	46.5	53.5	100.0
	사회복지사 1급	65	55.4	44.6	100.0
	사회복지사 2급	110	29.1	70.9	100.0
	간호사	3	33.3	66.7	100.0
	요양보호사	6	50.0	50.0	100.0
	기타	15	46.7	53.3	100.0

29. 상근간사를 중심으로 시군청과 분리된 별도의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계
전체		243	23.0	77.0	100.0
지역	도시	68	30.9	69.1	100.0
	농촌	105	15.2	84.8	100.0
	도농	70	27.1	72.9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26.7	73.3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6	33.3	66.7	100.0
	실무분과 위원	134	17.2	82.8	100.0
	사무국 인력	10	10.0	90.0	100.0
	비협의체 위원	17	17.6	82.4	100.0
성별	남자	77	26.0	74.0	100.0
	여자	160	20.6	79.4	100.0
연령대	20대	30	40.0	60.0	100.0
	30대	68	17.6	82.4	100.0
	40대	78	12.8	87.2	100.0
	50대 이상	50	34.0	66.0	100.0
학력	대졸이하	12	41.7	58.3	100.0
	대졸(전문대포함)	156	19.9	80.1	100.0
	대학원 진학	14	21.4	78.6	100.0
	대학원 졸	54	27.8	72.2	100.0
	기타	4	25.0	75.0	100.0
자격증	없음	43	23.3	76.7	100.0
	사회복지사 1급	68	25.0	75.0	100.0
	사회복지사 2급	108	21.3	78.7	100.0
	간호사	3	0.0	100.0	100.0
	요양보호사	6	33.3	66.7	100.0
	기타	15	26.7	73.3	100.0

30.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청에 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여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계
전체		244	53.7	46.3	100.0
지역	도시	68	57.4	42.6	100.0
	농촌	106	64.2	35.8	100.0
	도농	70	34.3	65.7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40.0	60.0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6	47.2	52.8	100.0
	실무분과 위원	134	55.2	44.8	100.0
	사무국 인력	10	60.0	40.0	100.0
	비협의체 위원	18	50.0	50.0	100.0
성별	남자	77	46.8	53.2	100.0
	여자	161	55.9	44.1	100.0
연령대	20대	31	51.6	48.4	100.0
	30대	67	53.7	46.3	100.0
	40대	79	53.2	46.8	100.0
	50대 이상	50	54.0	46.0	100.0
학력	대졸이하	12	58.3	41.7	100.0
	대학(전문대포함)	157	52.9	47.1	100.0
	대학원 진학	14	64.3	35.7	100.0
	대학원 졸	54	55.6	44.4	100.0
	기타	4	25.0	75.0	100.0
자격증	없음	43	44.2	55.8	100.0
	사회복지사 1급	67	52.2	47.8	100.0
	사회복지사 2급	111	61.3	38.7	100.0
	간호사	2	0.0	100.0	100.0
	요양보호사	6	33.3	66.7	100.0
	기타	15	46.7	53.3	100.0

3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근간사의 전문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246	0.0	3.7	55.3	41.1	100.0
지역	도시	69	0.0	1.4	60.9	37.7	100.0
	농촌	106	0.0	4.7	50.9	44.3	100.0
	도농	71	0.0	4.2	56.3	39.4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0.0	6.7	60.0	33.3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6	0.0	2.8	52.8	44.4	100.0
	실무분과 위원	136	0.0	1.5	55.9	42.6	100.0
	사무국 인력	10	0.0	0.0	50.0	50.0	100.0
	비협의체 위원	18	0.0	0.0	50.0	50.0	100.0
성별	남자	77	0.0	2.6	58.4	39.0	100.0
	여자	163	0.0	3.7	54.0	42.3	100.0
연령대	20대	31	0.0	9.7	64.5	25.8	100.0
	30대	69	0.0	2.9	60.9	36.2	100.0
	40대	79	0.0	2.5	44.3	53.2	100.0
	50대 이상	50	0.0	4.0	64.0	32.0	100.0
학력	대출이하	12	0.0	0.0	66.7	33.3	100.0
	대출(전문대포함)	159	0.0	4.4	57.2	38.4	100.0
	대학원 진학	14	0.0	0.0	42.9	57.1	100.0
	대학원 졸	54	0.0	3.7	48.1	48.1	100.0
	기타	4	0.0	0.0	50.0	50.0	100.0
자격증	없음	43	0.0	2.3	65.1	32.6	100.0
	사회복지사 1급	68	0.0	0.0	58.8	41.2	100.0
	사회복지사 2급	111	0.0	7.2	47.7	45.0	100.0
	간호사	3	0.0	0.0	66.7	33.3	100.0
	요양보호사	6	0.0	0.0	83.3	16.7	100.0
	기타	15	0.0	0.0	53.3	46.7	100.0

32. 도청 또는 시군청의 예산편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246	0.0	8.9	57.3	33.7	100.0
지역	도시	69	0.0	8.7	52.2	39.1	100.0
	농촌	106	0.0	10.4	61.3	28.3	100.0
	도농	71	0.0	7.0	56.3	36.6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0.0	0.0	53.3	46.7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6	0.0	13.9	44.4	41.7	100.0
	실무분과 위원	136	0.0	5.9	61.8	32.4	100.0
	사무국 인력	10	0.0	10.0	30.0	60.0	100.0
	비협의체 위원	18	0.0	16.7	50.0	33.3	100.0
성별	남자	77	0.0	2.6	54.5	42.9	100.0
	여자	163	0.0	11.7	57.7	30.7	100.0
연령대	20대	31	0.0	16.1	61.3	22.6	100.0
	30대	69	0.0	8.7	55.1	36.2	100.0
	40대	79	0.0	10.1	51.9	38.0	100.0
	50대 이상	50	0.0	4.0	66.0	30.0	100.0
학력	대졸이하	12	0.0	0.0	75.0	25.0	100.0
	대졸(전문대포함)	159	0.0	7.5	62.3	30.2	100.0
	대학원 진학	14	0.0	21.4	21.4	57.1	100.0
	대학원 졸	54	0.0	7.4	48.1	44.4	100.0
	기타	4	0.0	75.0	25.0	0.0	100.0
자격증	없음	43	0.0	7.0	74.4	18.6	100.0
	사회복지사 1급	68	0.0	7.4	47.1	45.6	100.0
	사회복지사 2급	111	0.0	10.8	56.8	32.4	100.0
	간호사	3	0.0	33.3	33.3	33.3	100.0
	요양보호사	6	0.0	0.0	100.0	0.0	100.0
	기타	15	0.0	6.7	46.7	46.7	100.0

33. 실무분과의 회의참석율을 높이기 위해 회의참석에 대하여 소속기관 평가시 가점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245	5.3	25.7	48.2	20.8	100.0
지역	도시	68	11.8	33.8	44.1	10.3	100.0
	농촌	106	3.8	21.7	51.9	22.6	100.0
	도농	71	1.4	23.9	46.5	28.2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6.7	13.3	73.3	6.7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5	5.7	25.7	37.1	31.4	100.0
	실무분과 위원	136	6.6	25.7	46.3	21.3	100.0
	사무국 인력	10	0.0	20.0	20.0	60.0	100.0
	비협의체 위원	18	5.6	11.1	66.7	16.7	100.0
성별	남자	77	10.4	19.5	46.8	23.4	100.0
	여자	162	3.1	28.4	48.8	19.8	100.0
연령대	20대	31	6.5	19.4	64.5	9.7	100.0
	30대	69	5.8	26.1	50.7	17.4	100.0
	40대	78	3.8	29.5	35.9	30.8	100.0
	50대 이상	50	8.0	18.0	56.0	18.0	100.0
학력	대졸이하	12	8.3	50.0	33.3	8.3	100.0
	대졸(전문대포함)	158	3.2	20.9	53.8	22.2	100.0
	대학원 진학	14	7.1	28.6	28.6	35.7	100.0
	대학원 졸	54	11.1	33.3	38.9	16.7	100.0
	기타	4	0.0	50.0	25.0	25.0	100.0
자격증	없음	42	7.1	11.9	54.8	26.2	100.0
	사회복지사 1급	68	10.3	23.5	47.1	19.1	100.0
	사회복지사 2급	111	0.9	31.5	47.7	19.8	100.0
	간호사	3	0.0	33.3	33.3	33.3	100.0
	요양보호사	6	0.0	33.3	50.0	16.7	100.0
	기타	15	13.3	26.7	40.0	20.0	100.0

34. 상근간사, 담당공무원, 위원장, 분과장에 대한 도차원의 협의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245	0.8	10.2	69.8	19.2	100.0
지역	도시	68	1.5	10.3	70.6	17.6	100.0
	농촌	106	0.0	9.4	70.8	19.8	100.0
	도농	71	1.4	11.3	67.6	19.7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5	6.7	6.7	80.0	6.7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6	2.8	13.9	58.3	25.0	100.0
	실무분과 위원	135	0.0	9.6	72.6	17.8	100.0
	사무국 인력	10	0.0	20.0	20.0	60.0	100.0
	비협의체 위원	18	0.0	0.0	88.9	11.1	100.0
성별	남자	77	2.6	6.5	70.1	20.8	100.0
	여자	162	0.0	11.7	70.4	17.9	100.0
연령대	20대	31	0.0	19.4	74.2	6.5	100.0
	30대	69	0.0	4.3	82.6	13.0	100.0
	40대	79	1.3	11.4	62.0	25.3	100.0
	50대 이상	49	2.0	14.3	61.2	22.4	100.0
학력	대졸이하	12	0.0	16.7	58.3	25.0	100.0
	대졸(전문대포함)	159	0.0	8.2	74.8	17.0	100.0
	대학원 진학	14	0.0	21.4	42.9	35.7	100.0
	대학원 졸	53	3.8	9.4	64.2	22.6	100.0
	기타	4	0.0	50.0	50.0	0.0	100.0
자격증	없음	43	0.0	7.0	67.4	25.6	100.0
	사회복지사 1급	68	2.9	14.7	64.7	17.6	100.0
	사회복지사 2급	111	0.0	10.8	70.3	18.9	100.0
	간호사	3	0.0	0.0	100.0	0.0	100.0
	요양보호사	5	0.0	0.0	100.0	0.0	100.0
	기타	15	0.0	0.0	80.0	20.0	100.0

35.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다면 가장 큰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시군의 인식 및 의지의 부족	참여하는 민간기관의 인식 및 의지의 부족	제도적 기반의 불비	인적 역량의 부족	물적 운영기반의 미흡	기타	계
전체		231	26.4	32.9	16.9	9.1	11.7	3.0	100.0
지역	도시	59	20.3	28.8	23.7	10.2	13.6	3.4	100.0
	농촌	105	30.5	33.3	14.3	10.5	10.5	1.0	100.0
	도농	67	25.4	35.8	14.9	6.0	11.9	6.0	100.0
직위	대표협의체 회원	14	35.7	28.6	7.1	0.0	21.4	7.1	100.0
	실무협의체 위원	35	22.9	34.3	20.0	11.4	8.6	2.9	100.0
	실무분과 위원	126	27.8	34.9	16.7	8.7	10.3	1.6	100.0
	사무국 인력	10	40.0	30.0	0.0	10.0	10.0	10.0	100.0
	비협의체 위원	17	17.6	35.3	5.9	17.6	17.6	5.9	100.0
성별	남자	71	28.2	22.5	22.5	11.3	11.3	4.2	100.0
	여자	154	24.7	39.0	13.6	8.4	11.7	2.6	100.0
연령대	20대	28	14.3	35.7	21.4	14.3	10.7	3.6	100.0
	30대	67	23.9	35.8	17.9	9.0	7.5	6.0	100.0
	40대	73	31.5	35.6	16.4	6.8	8.2	1.4	100.0
	50대 이상	46	28.3	32.6	8.7	10.9	17.4	2.2	100.0
학력	대출이하	12	25.0	16.7	25.0	16.7	16.7	0.0	100.0
	대출(전문대포함)	149	26.2	34.9	19.5	7.4	8.7	3.4	100.0
	대학원 진학	14	21.4	42.9	7.1	7.1	21.4	0.0	100.0
	대학원 졸	49	28.6	24.5	12.2	12.2	18.4	4.1	100.0
	기타	4	0.0	100.0	0.0	0.0	0.0	0.0	100.0
자격증	없음	43	34.9	41.9	4.7	14.0	4.7	0.0	100.0
	사회복지사 1급	63	17.5	28.6	23.8	11.1	12.7	6.3	100.0
	사회복지사 2급	104	29.8	31.7	15.4	5.8	15.4	1.9	100.0
	간호사	2	0.0	50.0	50.0	0.0	0.0	0.0	100.0
	요양보호사	5	20.0	20.0	20.0	20.0	0.0	20.0	100.0
	기타	14	21.4	35.7	28.6	7.1	7.1	0.0	100.0

■ 집 필 자 ■

연구 책임 · 김용현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략연구 2014-38 ·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연구

글쓴이·김용현 / 발행자·강현수 / 발행처·충남발전연구원

인쇄·2015년 2월 27일 / 발행·2015년 2월 27일

주소·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14-140)

전화·041-840-1236(행정복지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041-840-1139

ISBN· 978-89-6124-290-5 03350

<http://www.cdi.re.kr>

© 2014,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